

2023년 한일관계사학회·부경역사연구소 공동개최 학술회의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교류와 갈등

- * 일시 : 2023년 8월 5일(토) 13시~18시
- *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컨퍼런스 홀
- * 주최 : 한일관계사학회·부경역사연구소
- * 후원 : 국립해양박물관

한일관계사학회·부경역사연구소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교류와 갈등

일시 : 2023년 8월 5일(토) 13시~18시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컨퍼런스 홀
주최 : 한일관계사학회·부경역사연구소
후원 : 국립해양박물관

◆프로그램◆

차 례		발 표 및 내 용	진 행
개회식 및 제1부 발표 (13:00~ 14:40)	13:00~ 13:30	등록	
	13:30~ 13:40	개회사, 축사 나행주(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양홍숙(부경역사연구소 소장)	개회식 조인희 (한국국학 진흥원)
	13:40~ 14:10	제1발표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대마도 정치·외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자 - 송중호(방송통신대) 토론자 - 한문중(전북대)	제1부 사회 이형주 (국민대)
	14:10~ 14:40	제2발표 16세기 후반~17세기 초 신선군(新選軍)의 설치와 운용 발표자 - 한성일(해군사관학교) 토론자 - 김강식(한국해양대)	
	14:40~ 14:50	휴식	
제2부 발표 (14:50~ 16:20)	14:50~ 15:20	제3발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도쿠가와 막부 발표자 - 이수열(한국해양대) 토론자 - 신동규(동아대)	제2부 사회 양홍숙 (부산대)
	15:20~ 15:50	제4발표 일본 표창 조선인의 송환과 마찰 발표자 - 이훈(한림대) 토론자 - 유채연(전북대)	
	15:50~ 16:20	제5발표 근대의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 비교 발표자 - 서경순(부경대) 토론자 - 현명철(서울대)	
	16:20~ 16:30	휴식 및 장내 정리	
제3부 토론 (16:30~ 18:00)	16:30~ 18:00	종합토론 좌장 : 김동철(부경역사연구소) 코멘테이터: 심민정(부경대)	좌장 : 김동철 (부경역사 연구소)
폐회	18:00	폐회 및 기념촬영	조인희 (학회 총무)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교류와 갈등

■ 목 차

- ◆ 개 회 사회: 조인희(학회 총무, 국학진흥원)
개회사 나행주(한일관계사학회 회장, 건국대)
축 사 양흥숙(부경역사연구소 소장, 부산대)

<제1부 연구 발표> 사회: 이형주(국민대학교)

[제1발표]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대마도 정치·외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 발표: 송종호(방송통신대) 3
토론: 한문종(전북대학교) 22

[제2발표] 16세기 후반~17세기 초 新選軍의 설치와 운용

- 발표: 한성일(해군사관학교) 27
토론: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45

<제2부 연구 발표> 사회: 양흥숙(부산대학교)

[제3발표]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 발표: 이수열(한국해양대) 49
토론: 신동규(동아대학교) 60

[제4발표] 일본 표착 조선인의 마찰과 수습을 통해서 본 조일 교린의 실태

- 발표: 이 훈(한림대학교) 65
토론: 유채연(전북대학교) 81

[제5발표] 근대 성립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비교

- 발표: 서경순 (부경대학교) 85
토론: 현명철 (전 학회 회장) 101

<제3부 종합토론> 좌장: 김동철(부경역사연구소) 103

- ◆ 폐 회 사회: 조인희(학회 총무)

<제1부 연구 발표>

사회: 이형주(국민대학교)

[제1발표]

고려 · 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대마도 정치 · 외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 송종호(방송통신대)

토론: 한문종(전북대학교)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대마도 정치·외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송종호(방송통신대)

- | | |
|---------------------------------|---|
| I. 머리말 | Ⅲ. 통교 공백기의 배경 및 양상 |
| II. 통교 공백기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1. 제1기: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이전 시기 (1369~1375) |
| 1. 통교 공백기의 개념 | 2. 이마가와 료순의 고려·조선 통교에서의 독보적 위상 |
| 2. 통교 공백기 시작(1368년 통교)에 관한 선행연구 | 3. 제2기: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시기 (1376~1395) |
| 3. 통교 공백기의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 | IV. 맺음말 |

I. 머 리 말

대마도는 예로부터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존재였다. 조선 시대에는 조선-일본 간 외교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조선과의 외교·교역을 통한 이익으로 번성하였다. 이러한 조선-대마도 간의 통교 관계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어떠한 상황과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려의 건국 이래 일본과의 관계를 본다면, 일찍이 고려 태조 시기에 고려가 일본 조정에 수호를 요구하는 사신을 보낸 바 있다. 그 이후로 양국 간에 정식 국교가 수립되는 일은 없었지만, 11~13세기까지 상인, 지방관 등의 왕래가 간헐적이거나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12세기 후반 무렵부터 대마도에는 고려에 대한 진봉(進奉) 관계가 성립해 있었다.¹⁾ 고려-대마도 간의 이러한 진봉 관계는 1274년(원종15)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으로 중단되었다. 이후로 다시 한반도와 대마도 간에 장기적인 통교 관계가 재개되는 것은 그로부터 120년 이상이 지난 1398년(태조7) 1월 조선-대마도 간 통교에서였다.

이러한 120년 이상의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 기간 동안, 1368년(공민왕17) 고려 조정과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宗經茂)(『고려사』에서의 송종경(崇宗經)) 간의 통교 관계(이하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 또는 ‘1368년 통교’)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 이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는 그 이후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와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이들 간에는 공통적으로, 대마도로의 쌀 지급이 있었고, 경상도 지역에 투화(投化)한 왜인들의 거주 지역이 생겼으며, 그 시기에 즈음하여 왜구 활동이 크게 쇠퇴하는 현상이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1368년 통교는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원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120년 이상의 통교 공백기 중 뒷부분, 즉 1368년 통교가 단절된 1369년부터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가 성립하기 직전인 1397년(태조6)까지 약 30년간의 기간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1368년 통교 관계와 그 이후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를 이어주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편의상 본 연구 이하 부분에서 ‘통교 공백기’로 지칭하는 기간은 이 1369~1397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처럼 조선-대마도 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 시기에 존재했던 약 30년간의

*본 발표문은 논문의 최종본이 아니며 토론용으로 제한 배포되는 것이므로,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람.

1) 고려 전기 고려-일본 관계에 관하여는,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2010),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181~201쪽; 이영(2011a),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19~91쪽(원저: 李領(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3~83쪽) 등을 참조 하시오.

통교 공백기에 관한 정확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교 공백기에 관해서는 오늘날까지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는 고려말-조선초에 걸친 통교 공백기의 배경과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0년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이 전체 기간을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상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기간 중 규슈 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대마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던 1376년(우왕2)부터 1395년(태조4)까지의 시기를 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 시기는 통교 공백기 전체 기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기간으로서, 통교 공백기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래 제2장에서는 우선 통교 공백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제3장에서는 14세기 후반 규슈에서의 이마가와 료순의 역할 및 그가 대마도에 미친 정치적·외교적 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통교 공백기의 배경 및 양상을 살펴본다.

II. 통교 공백기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 통교 공백기의 개념

14세기 후반 대마도와 고려·조선과의 통교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이한 양상이 보인다.

- ① 1368년(공민왕17) 7월에 제4대²⁾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송종경)의 사자가 고려 조정에 입조했음. 같은해 윤7월에는 고려의 강구사 이하생이 대마도로 파견됨. 같은해 11월 소 츠네시게의 사자가 다시 고려 조정에 입조했고, 이 때 고려 조정은 소 츠네시게에게 쌀 1천 석을 지급함.³⁾
- ② 그 이후 30년간 대마도가 고려·조선 조정에 입조한 기록이 없음. (통교 공백기)
- ③ 이 기간 동안,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은 1378년(우왕4) 이래로, 고려·조선 조정에 빈번히 사자를 보내 입조하면서, 왜구 토벌을 위한 군사 파견, 피로인 송환 등 다양한 형태로 통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⁴⁾ 또한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는 1379년(우왕5) 박거사(朴居士) 등 군사를 고려로 파견해 왜구와 싸우게 함.⁵⁾
- ④ 1392년(태조1) 조선이 건국되자, 그 직후부터 1397년(태조6)까지 규슈 단다이(九州探題)(7회)⁶⁾, 오우치 씨(大内氏)(4회)⁷⁾, 남규슈(南九州)(5회)⁸⁾, 이키(壱岐)(1회)⁹⁾ 등 대마도를 제외한 여타 일본 세력이 수시

2) ‘대마도주’는 일본에서의 공식 직함은 아니었고, 조선 조정에서 대마도의 실질적인 통치자를 편의적으로 부르는 데에서 비롯한 명칭이었다(長 節子(1987), 『中世日朝關係と対馬』, 吉川弘文館, 37쪽 참조). 따라서 누구를 제1대 대마도주로 보는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오사 세츠코의 방식(長 節子(1987), 38쪽 참조)에 따라 사료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소 스케쿠니(宗資国)를 제1대로 보았다.

3)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7월 11일 기묘; 공민왕 17년 윤7월; 공민왕 17년 11월 9일 병오.

4)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4년 6월; 권134, 열전 권47, 우왕 5년 7월; 우왕 8년 윤2월; 권135, 열전 권48, 우왕 9년 9월; 우왕 10년 8월; 권136, 열전 권49, 우왕 12년 7월; 권137, 열전 권50, 창왕 즉위년 7월; 권45, 공양왕 2년 5월 19일 신해; 권46, 공양왕 3년 8월 9일 계해; 11월 6일 무자; 공양왕 4년 6월 10일 경신.

5) 『고려사』 권134, 열전 권47, 우왕 5년 5월; 권114, 열전 권27, 제신, 하을지.

6)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7월 13일 경술; 12월 26일 신묘; 권8, 태조 4년 7월 1일 임진; 권11, 태조 6년 6월 21일 신축; 권12, 태조 6년 7월 16일 을축; 10월 1일 기묘; 12월 29일 정미.

7)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2월 16일 을사; 권9, 태조 5년 3월 29일 병술; 권12,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11월 14일 임술.

8)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0월 19일 정묘; 권7,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 권8, 태조 4년 7월 11일 임인; 7월 16일 정미; 권9, 태조 5월 6월 29일 을묘. 필자는 1392년 10월 19일 조선에 사신을 보낸 “축주태수 장충가(築州太守藏忠佳)”가 사츠마 국의 이치키 다다이에(市来忠家) 또는 오쿠라 다다이에(大蔵忠家)라고 생각한다(그 상세한 논증은 송종호(2019),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 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7~109쪽을 참조하시오. 伊藤幸司(2018), 「南北朝・室町期、島津氏の「明・朝鮮外交」の実態とは?」, 新名一仁 編, 『中世島津氏研究の最前線』, 洋泉社, 104~105쪽도 같은 취지이다. 다만 그는 그 근거를 田村洋幸(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이라고 했지만, 그 책에서 해당 내용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반면 세키 슈이치는 『조선왕조실록』에서의 표현인 ‘축주 태수(筑州太守)’를 직역하여 그를 치쿠젠 국(筑前国)의 인물로 보았으나(関 周一(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36~37쪽 표1 참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쨌든 세

로 조선에 사자를 파견하여 입조함.

- ⑤ 조선-대마도 간에는, 조선 측이 먼저 1397년 2월, 3월, 5월에 통신사 박인귀를 대마도에 파견하였음.¹⁰⁾ 대마도는 1398년(태조7)이 되어서야 비로소 1월, 4월, 5월 등 3회에 걸쳐 잇달아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내 입조함.¹¹⁾ 그로부터 다시 1년 남짓의 공백 기간 후 1399년(정종1) 7월 제7대 대마도주 소 사다시 게(宗貞茂)가 조선 조정에 서계를 보내오고,¹²⁾ 그 이후로 조선-대마도 간의 지속적인 통교 체제가 정착되어 감.

대마도는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일본 세력이었다. 그럼에도 위 ②에서 보듯이, 1368년 이후로 약 30년 동안 고려·조선 조정에 전혀 접촉해 오지 않았다. 대마도의 조선 통교는 1398년에 비로소 시작되기는 하지만, 위 ③ 및 ④에서 보듯이 그 시기는 일본의 여타 세력들보다 늦었다.

본 제2장의 이하 부분에서는, 위 통교 공백기가 시작된 배경, 즉 1368년 통교가 종료된 배경(위 ① 관련) 및 통교 공백기가 30년간 유지된 배경(위 ② 관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통교 공백기 시작(1368년 통교)에 관한 선행연구

가. 일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통교 공백기는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위 ①)가 종료된 1369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통교 공백기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368년 통교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직전인 1366~1367년(공민왕15~16) 고려 조정이 김용·김일을 일본 막부에 파견했던 일,¹³⁾ 1368년 왜인이 투화하여 거제·남해현에 정착했던 일,¹⁴⁾ 그리고 1367년 3월부터 1369년(공민왕18) 11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왜구 침구 기록이 없었던 현상¹⁵⁾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1368년 통교의 전말에 관하여 최초로 서술한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1935)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367년(공민왕16) 2월 고려 사신 김용·김일의 일본 막부 사행에 관하여 서술한 후] 공민왕 17년 즉 덴류지(天龍寺)의 승려 두 사람이 고려에 사자로 온 해 7월에는 대마도 소 츠네시게의 사자도 파견되었고, 다음달 고려로부터 강구사 이하생이 대마도로 파견되었으며, 얼마 안 있어 또 츠네시게의 사자가 고려에 이르러 쌀 1천 석의 사급을 받았다. 대마도와 고려 간의 이 교섭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왜구 금제(禁制)에 관하여 뭔가 협정한 것이 있었던 듯하다. 기록에 보이는 거제·남해 방면의 왜인 투화는 이 기회에 이루어졌던 것 같은 것이다. 혹은 그 결과인지 아닌지(㉔고려에서는 일전에 일본 정부와 교섭한 결과라고 믿고 있었다), ㉕우연히도 그 후 얼마간 왜구 침략이 쇠퇴하여 고려는 소강상태를 맞았다. ㉖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고, 공민왕 20년 전후부터 다시금 예전보다 더욱 격심해졌다.¹⁶⁾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i) 1366~1367년 고려 조정이 김용·김일을 일본 막부에 파견했던 일과 1368년

키 슈이치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사츠마 국의 조선 입조는 여전히 대마도보다 빨랐다.

9)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6월 16일 경인.

10)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2월 27일 경술; 3월 25일 무인; 5월 6일 정사.

11)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1월 1일 기유; 4월 17일 계사; 권14, 태조 7년 5월 25일 신미.

12)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일 기사.

13)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6월; 권41, 공민왕 16년 11월 14일 임진; 공민왕 17년 1월 17일 무자; 공민왕 17년 7월 7일 을해; 『太平記』 권40, 「高麗並に太元の使節至る事」(長谷川 端 校注・訳(1998), 『太平記(四)』, 小学館, 417~420쪽); 『善隣国宝記』 貞治 6年 丁未 (田中健夫 編(1995), 『善隣国宝記・新訂続善隣国宝記』, 集英社, 96~99쪽).

14)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7월 9일 신축.

15) 『고려사』 권41, 공민왕 16년 3월 13일 기축; 공민왕 18년 11월 1일 임진; 이영(2008a),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81쪽 등 참조.

16) 中村栄孝(1965), 『日鮮関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43~145쪽(원저: 中村栄孝(1935), 「室町時代の日鮮関係」 『岩波講座日本歴史』 3). 또한 中村栄孝(1965), 316쪽에도 같은 취지의 서술이 있다.

고려-대마도 통교 간의 시기적 근접성, (ii) 1368년 통교와, 그 해에 왜인이 투화하여 거제·남해현에 정착했던 일 간의 연관성, 그리고 (iii) 1368년 통교 전후 무렵 왜구 침구 기록이 없었던 현상을 모두 포착하고 이를 꼼꼼하게 서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의 성과로서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가 도출되었다는 결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고려사』에, 고려 조정이 1377년(우왕3) 안길상(安吉祥)을 통해 일본에 보낸 문서에서, “병오년(1366)에 만호 김용 등을 파견하여 사정을 알리게 하니, 곧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이 <왜구를> 금한다는 약속을 받아내 조금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¹⁷⁾라고 한 명확한 기록이 있다. 즉 김용의 일본 막부 파견과 왜구 쇠퇴 현상과의 인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당시 사료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고려에서는 일전에 일본 정부와 교섭한 결과라고 믿고 있었다)”(㉠구절)라 하면서 위 사료의 의미를 폄하한다. 그러나 위 사료의 취지를 왜 부인하는지를 뒷받침하는 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당시 왜구 침구가 쇠퇴한 현상이 “우연히도”(㉡구절)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고려의 이 시기 통교 활동의 성과라는 점을 부인한다.

나아가 그는 “그러한 왜구 쇠퇴도 잠깐이었고 1371년 이후로는 왜구 활동이 더욱 격심해졌다.”(㉢구절)라고 함으로써, 1368년 고려-대마도 간 통교 수립의 성과 역시 부정하였다.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견해에 대해서는, ①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의 목적이 막부에 대한 왜구 금압 요구였다는 점,¹⁸⁾ ② 막부의 고려에의 사신 파견과 고려-대마도 간의 통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③ 대마도의 고려 입조는 몽골의 일본 침입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본 막부의 지시 내지 승인 절차가 없었을 리 없다는 점¹⁹⁾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의 결과로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가 성사되었을 개연성, 그리고 그 1368년 통교의 결과로서 이 시기 왜구 활동이 쇠퇴하였으리라는 개연성은 모두 충분히 있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1377년 『고려사』 사료라는 명확한 근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왜구 쇠퇴 현상이 “우연히도” 일어났고, 그러한 통교 수립의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한 나카무라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후 다나가 다케오(田中健夫)(1961)는 “[대마도 측에 쌀 1천석을 수여한] 고려측의 화평 공작이 이때만으로도 중지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듬해부터 왜구는 다시 활동을 개시”했다고 하였다.²⁰⁾ 또한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1967)는 위 1377년 『고려사』 사료를 인용하면서 “이 시기의 평화교섭은 금구에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²¹⁾ 다나가·다무라의 이러한 견해는 1368년 통교와 왜구 활동 쇠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²²⁾

그러나 ‘1368년 통교가 왜구 활동을 축소시켰고, 그 중지로 왜구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식의 단선적 견해는, 일본에 대한 고려의 유화적 조치만이 왜구 활동 감소를 이끌어낸다는 잘못된 결론(이것은 다시 조선초 왜구 감소의 주된 원인을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서 찾는 현재의 통설적 견해²³⁾로 연결된다)으

17)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6월. 「丙午年間, 差萬戶金龍等報事意, 即蒙征夷大將軍禁約, 稍得寧息。」

18) 『고려사』 권41, 공민왕 16년 11월 14일 임진: 田村榮孝(1965), 143쪽; 田中健夫(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26쪽 등 참조.

19) 1367년 2월 김용·김일 일행이 교토를 방문한 사건에 대하여,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몽골·고려 군의 일본 재침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연해 있었다(이영(2007),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 -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26, 133~134쪽 참조). 그러한 분위기에서, 일본 막부의 사전 지시 없이, 대마도주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려 조정과 접촉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1천 석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쌀을 지급받는 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대마도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일본을 침공해 오려는 고려와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막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0) 田中健夫(1961), 26, 27쪽.

21) 田村洋幸(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42~43쪽 참조.

22) 특히 다나가 히데오는 위 본문에서 언급된 1377년 안길상 관련 사료를 언급하면서, “공민왕 17년(1368)이라는 해는 역시 왜구 활동에 하나의 획기를 그은 해였던 것 같다.”고 그 의미를 평가함으로써(田中健夫(1961), 27쪽) 나카무라 히데타카와는 다른 시각을 취했다. 그러나 다나가·다무라 모두 1368년 통교의 배경 전반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23) 이러한 통설적 견해를 비판한 연구로서는, 송종호(2022),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96년(태조 5년) 나가는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기·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51~297쪽; 송종호(2023),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0, 35~78쪽 등을 참조하시오.

로 귀결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1370년대의 왜구 급증 현상은, 당시 새로 부임한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슌이 남조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그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²⁴⁾ 다나카·다무라의 견해는 이렇게 일본 국내 정세를 조망하는 시각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다나카·다무라의 1960년대 연구를 제외하고, 그 이후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1993), 오사 세츠코(長 節子)(2002), 사에키 고지(佐伯弘次)(2010) 등 오늘날까지의 일본 연구자들은 거의 모두 위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²⁵⁾ 게다가 이들의 연구는 1368년 통교 전후로 이루어진 사건들 일부에 대해서는 그 서술까지도 누락함으로써²⁶⁾ 오히려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서술 수준보다도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세 대마도에 관한 전문 연구자인 오사 세츠코(1987), 아라이 가즈노리(荒井和憲)(2007, 2017), 세키 슈이치(関 周一)(2012) 등도 각기 저술한 대마도 전문 서적에서, 대마도가 당사자였던 1368년 통교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²⁷⁾

이렇듯 나카무라 히데타카 이래 오늘날까지 거의 모든 일본 연구자들은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에 관하여, 이는 고려 시대에 있었던 돌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치부해 버린다.²⁸⁾ 이로써 일본 연구자들은 1368년 통교 이후 이어진 ‘통교 공백기’라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놓쳤다. 따라서 한반도와 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큰 애로점이 생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한국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1368년 통교에 관한 한국·일본의 주요 연구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1368년 통교에 관한 한국·일본 주요 연구자들의 견해

		1368년 통교와 왜구의 일시적 쇠퇴 현상 간의 관계	
		부 정	인 정
1367년 일본 사행과 1368년 통교 간의 관계	부 정	제1설 (일본 연구자 대부분, 나종우, 신기석, 진종근 등)	제2설 (田中健夫, 田村洋幸, 손홍렬, 김보한)
	인 정	제3설 (김기섭)	제4설 (이영)

24) 羅鍾宇(1994), 「흥건적과 왜구」, 국사편찬위원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0)』, 405쪽; 金普漢(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一少貳冬資의 피살과 관련해서一」 『日本歴史研究』 13, 75~77쪽; 李領(2006),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党) 一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一」 『日本歴史研究』 24, 111~160쪽; 이영(2012),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181~212쪽 등 참조

25) 예컨대, ① 무라이 쇼스케는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 후 일본 막부에 의하여 “왜구 금압에 상당히 힘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여져, 1368년에는 드물게 고려에 대한 침략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지만,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村井章介(1993),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17~19쪽(이영 역(2003),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6~28쪽) 참조). ② 오사 세츠코는 1368년 통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전후 맥락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長 節子(2002), 「対馬と朝鮮」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5쪽). ③ 사에키 고지는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 사건 및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 사건을 서로 연관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술하고, 왜구 쇠퇴 현상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6) 예컨대, 위 각주 25번에서 보듯이, 무라이 쇼스케는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를, 사에키 고지는 왜구 쇠퇴 현상을, 각기 언급하지 않았다.

27) 長 節子(1987); 荒木和憲(2007),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関 周一(2012), 『対馬と倭寇』, 高志書院; 荒木和憲(2017),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등 참조. 특히 세키 슈이치는 “대마도주 소씨가 조선 통교를 개시했던 것은 1399년 소 사다시게의 때”라고 함으로써(関 周一(2012), 218쪽.), 그 이전인 1398년 나이 소씨 시기에의 조선과의 통교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

28) 다만 사에키 고지는 고려로부터의 쌀 지급 사실을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와의 공통점으로 지적하였다(사에키 고지(佐伯弘次)(2010),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9~30쪽, 34쪽 참조). 이 점은 1368년 통교와 조선-대마도 통교를 연결시킨 의미 있는 지적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후 본격적인 심층 연구로 나아가지 않은 점은 아쉽다.

<표1>에 보듯이, 1368년 통교에 관한 다수의 한국 연구자들, 예컨대 나종우(1980), 신기석(1986), 진종근(1989) 등²⁹⁾도 일본 연구자들의 통설적 견해처럼, 1367년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 1368년 통교, 왜구 쇠퇴 현상 간의 상호연관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제1설). 다만 손흥렬(1978)·김보한(2012)³⁰⁾은 1368년 통교 사건이 그 시기 왜구의 일시적 쇠퇴 현상의 배경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제2설). 그러나 이 분들 역시 1367년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과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김기섭(1997)은 “1366년 당시는 대마도의 경우 북조측에 속하고 있던 시기로서 앞의 김용, 김일의 교섭과 맥을 같이 하면서 대마도와의 교섭이 진행되었다.”³¹⁾고 함으로써, 당시 일본 국내 정세의 맥락에서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과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제3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연관성에 대하여 자세한 논증 과정은 제시하지 않았고, 그 시기 왜구 쇠퇴 현상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영(2011)³²⁾은 1368년 통교의 배경에서부터 종료까지의 전체 과정을 밝히고, 김용·김일의 일본 사행과의 인과관계, 그 시기 왜구 쇠퇴 현상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해명하였다(제4설). 이영의 위 연구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당시 동아시아 3국 간의 국제정세 측면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해명하였다는 점에서 ‘통교 공백기’의 시작 부분에 관한 유일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매우 충실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연구는 당시 왜구의 실체를 규명하는 왜구론에 집중한 것이었다. 따라서 1369년 이후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측면에까지 그의 연구가 확장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조선 시대 조선-대마도 간 통교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

본 연구는 ‘통교 공백기’가 시작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영의 위 연구결과를 기초로 삼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3장 제1절 서술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3. 통교 공백기의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위 ②)의 배경에 관하여 직접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적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일본 연구자 중에서는 없고, 한국에서는 손흥렬(1978)³³⁾과 한문종(1995)³⁴⁾의 견해만이 보인다.

손흥렬은 “유독 대마도만이 사절을 파견치 않은 것은 금구(왜구 금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³⁵⁾ 그가 말한 “금구에 대한 약속”이란,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에서 대마도가 고려로부터 쌀을 수여 받는 대신 왜구 활동을 금지하기로 하는 일종의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³⁶⁾ 그리고 아래 <표2>에 보듯이, 1368년 통교 이후 1370년대 이후로 왜구 활동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금구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의 평가도 맞다.

생각건대, 당시 대마도는 그 주민층은 물론 지배층조차도 왜구의 주체 세력이었다.³⁷⁾ 또한 대마도 이외

29) 羅鐘宇(1980),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 - 倭寇를 中心으로」 『전북사학』 4, 87쪽; 申基碩(1986), 「韓日通交와 對馬島」 『국제정치논총』 26(1), 108~109쪽; 陳鍾根(1989), 「朝鮮朝初期의 對日關係 - 對馬島征伐를 中心으로」 『석당논총』 15, 336~337쪽 등.

30) 孫弘烈(1978),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역사와 담론』 6, 116쪽; 김보한(2012),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대(對)왜인 정책 - 평화와 공존을 위한 조선의 선택-」 『일본연구』 18, 270~271, 273~274쪽 등.

31) 金琪燮(1997),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113~114쪽.

32) 이영(2011b), 「원명(元明)의 교체와 왜구 -공민왕 15년(1366)의 금왜사절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3, 33~71쪽.

33) 孫弘烈(1978), 116쪽.

34) 韓文鍾(1995),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38, 139쪽.

35) 孫弘烈(1978), 116쪽.

36) 中村栄孝(1965), 145쪽; 田中健夫(1961), 27쪽; 田村洋幸(1967), 172쪽; 孫弘烈(1978), 116쪽; 申基碩(1986), 109쪽; 陳鍾根(1989), 337쪽; 韓文鍾(1996),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研究 - 對馬島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쪽; 이영(2008a), 82쪽 등 참조.

37) 이영(2013), 「여말-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61~182쪽 등 참조.

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왜구 활동을 하는 경우, 대마도는 그 지역적 발판 역할도 하였다.³⁸⁾ 즉 대마도는 “금구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표2> 고려말 1368년 통교 이후 연도별 왜구 침구 빈도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0	2	2	4	11	6	13	5	15	32	23	22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4	14	8	13	12	11	0	4	9	5	3	1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대마도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을까? 만약 대마도 지배층에게 일말의 “죄의식”이 있었다면, 그들이 1368년 통교 이후 수십 년 이상 왜구 활동을 이어갔을 리 없다. 오히려 1368년 통교 직후 고려에 투화하여 거제·남해에 거주하던 왜인들이 그 바로 이듬해인 1369년 7월 고려를 배신하고 대마도로 돌아간 점,³⁹⁾ 그 직후 11월에는 그렇게 돌아간 왜인들이 다시 고려로 와서 침구 활동에 나선 점 등⁴⁰⁾으로 볼 때, 대마도 지배층의 “죄의식”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의 적극적인 왜구 활동에 의의만이 읽힐 뿐이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마도의 왜구 활동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고려·조선과의 통교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대마도 지배층이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월하게 획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고려·조선과의 통교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교 공백기를 대마도의 “죄의식”으로 파악한 손흥렬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한문종은 통교 공백기의 배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소 츠네시게의 사인이 처음으로 내조한 공민왕 17년 이후부터 소 사다시게의 사인이 내조한 정종 원년(1399)까지 30여년간 ... 태조 6년(1397)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마도주의 통교는 단절되었다. ㉔그 이유는 고려말의 왜구의 창궐과 관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㉕당시 대마도의 정치적인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시기에 대마도에서는 ㉖도내의 통치권을 둘러싸고 대마도주와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 간의 정권 쟁탈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사 세츠코(長節子)가 제기한 대마도 내 제1·2차 정변을 언급한 후] 이와 같이 대마도주가 도내의 제 세력을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마도주를 비롯한 통교자들이 조선에 도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⁴¹⁾

한문종의 위 견해 중 우선, 통교 공백기를 고려말 왜구 창궐과 연관 지은 점(㉔구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흥렬의 “죄의식” 견해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을 대마도의 정치적 상황에서 구했다는 점(㉕구절)도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마도 내 정권 쟁탈전이 외국과의 통교 관계 수립에 장애가 된다는 그의 논리(㉖구절)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가 언급한 “대마도주와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 간의 정권 쟁탈전”(㉖구절)이란, 오사 세츠코(長節子)(1987)가 제기했던 바와 같이, 제4대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를 배출한 소씨 종가(宗家) 측과, 제5대 소 스미시게(宗澄茂)·제6대 소 요리시게(宗頼茂)를 배출한 소씨 방계인 니이 나카무라 소씨(仁位中村宗氏; 이하 ‘니이 소씨’) 측 간의 대립 상황⁴²⁾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1398년 하반기에 소씨 종가 측인 제7대 소 사다시게가 다시 정권을 탈환한다(제2차 정변).⁴³⁾ 한문종은 이러한 정권 쟁탈전 때문에 조선과의

38) 예컨대 『고려사』 권113, 열전 권26, 제신, 정지 조 참조. 「신우... 13년(1387)에 정지가 글을 올려 ... “... 왜적은 온 나라가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민(叛民)들이 대마도와 이키 섬(一岐島)에 웅거하여 가까운 우리 동쪽 해안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

39)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7월 9일 신축.

40)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11월 1일 임진; 11월 27일 무오.

41) 韓文鍾(1995), 138~139쪽.

42) 長 節子(1987), 44~62쪽 참조.

43) 長 節子(1987), 44~70쪽 참조.

통교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소 사다시게의 집권 후에도, 1401년 겨울부터 1402년 겨울까지 니이 소씨 등 반대파 세력들은 소 요시시게(宗賀茂)의 난(통칭 “가모의 난”),⁴⁴⁾ 소 고로(宗五郎)의 모반 사건⁴⁵⁾ 등의 모반을 연이어 일으킨다. 이렇게 대마도에서의 내부 분쟁 상태는 이어지지만, 바로 이 기간 중인 1402년(태종2) 5월에 소씨 종가 측의 소 사다시게와 그 반대파인 소 고로·소 구로(宗九郎)가 각기 조선에 사자를 보내 입조하고 있다.⁴⁶⁾ 즉 대마도는 정치적 분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각 세력의 외교 노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⁴⁷⁾

즉 당시 대마도 내 각 세력은, 국내 분쟁에서의 우세를 점하기 위하여 고려·조선 조정과 제휴하려는 동기가 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문종의 위 ©구절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⁴⁸⁾

요컨대,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의 통교 공백기에 관한 연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 분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이에 관심을 가졌던 극소수 연구자들 역시 단편적인 추측에 머물렀을 뿐 본격적인 연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 이하 부분에서는 통교 공백기의 발생 배경 및 전개 양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Ⅲ. 통교 공백기의 배경 및 양상

필자는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를 다음과 같이 3개 기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① 제1기(1369~1375):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이전 시기 (대마도의 남조 가담 시기)
- ② 제2기(1376~1395):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시기 (대마도의 북조 가담 시기)
- ③ 제3기(1396~1397): 이마가와 료순 실각 후 규슈 정세 급변 시기

이 중 제1기에 대하여는 이영(2011)의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시기를 간략히 정리하는 데 그친다. 제2기는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이 대마도 정치·외교에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로서, 통교 공백기 전체 기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기이다. 통교 공백기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3기는 이마가와 료순이 실각함으로써 북규슈 및 대마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그에 따라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수립되어 통교 공백기가 종료되는 기간이다. 제3기에 관

44) 長 節子(1987), 71~120쪽 참조. 한국 연구자들은 대개 “宗賀茂”를 “소 가모”라고 읽는 듯하다. 그러나 소씨가 당시 대대로 사용하던 츠지(通字)가 “시게(茂)”라는 점에서, 필자는 “소 요시시게”로 읽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라키 가즈노리도 같은 견해이다(荒木和憲(2017), 46쪽 참조).

45) 『해동제국기』, 「日本國紀」, 「對馬島」, 「卦老郡」(신용호 외 주해(2004), 범우사, 132쪽); 長 節子(1987), 100~103쪽 참조.

46)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5월 26일 무신; 長 節子(1987), 101쪽 참조.

47) 또 다른 예로서, 1370년대에 규슈 남조 정서부 및 막부가 규슈에서 대립하던 중에도, 각기 명과의 통교 관계를 수립·유지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본문 제3장 제2절 가.항을 함께 참조하시오.

48) 또한 한문종은 위 본문 인용문 서두에 있듯이, 통교 공백기의 기간을, 1368년 통교로부터, 제7대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조선에 서계를 보내온 1399년까지의 “30여년간”이라고 보면서 “태조 6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마도주의 통교는 단절되었다.”고 하였다(韓文鍾(1995), 138쪽). 이러한 서술로부터, 한문종은 1397년(태조6) 및 1398년(태조7) 당시 제6대 대마도주 소 요리시게의 조선과의 통교에 대하여는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문종의 이러한 견해는, 소씨 종가 출신 대마도주들(예컨대, 소 사다시게)만을 대마도주로 인식하고, 니이 소씨 출신 대마도주(소 스미시게·소 요리시게)에 대하여는 이들을 대마도주로서 파악하기보다는, 단순히 “대마도주와 대립하고 있던 세력”으로만 평가했던 점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니이 소씨 출신 대마도주들은 1371년 무렵부터 1398년까지 약 30년간 대마도를 통치하였으므로, 이들이 통치하던 시기를 배제한 채 고려·조선-대마도 간 외교 관계를 논의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을 대마도주에 대한 대립 세력 정도로만 인식하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해서는 대마도의 국내 정세, 조선 통교, 왜구 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쟁점들이 많으므로, 이 시기에 관한 검토는 별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제3장에서는 통교 공백기의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제2기에 관한 고찰에 집중하기로 한다.

1. 제1기: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이전 시기 (1369~1375)

통교 공백기 제1기에 관해서는, 이 시기 관련 사료 및 이영(2011)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여, 1368년 고려-대마도 통교의 전개 및 중단 과정에 관한 필자의 이해 및 견해를 간략히 정리한다.

고려가 파견한 사자 김용·김일은 1367년(공민왕16) 초에 일본 교토에 각기 도착하여 막부에 왜구 금압을 요구한다. 막부는 이에 호응하여, 대마도주 소씨(宗氏)의 주군이었던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尙)에게 왜구 금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⁴⁹⁾

당시 대마도는, 쇼니 요리히사의 다이칸(代官)으로서 대마도 슈고다이(守護代) 또는 지토다이(地頭代)로 있던 제4대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가 통치하고 있었다.⁵⁰⁾ 소 츠네시게는 막부 및 쇼니씨(少貳氏)의 지시에 따라⁵¹⁾ 1368년 7월 고려에 사자를 보내어 입조한다.⁵²⁾ 고려도 윤7월 강구사 이하생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다.⁵³⁾ 그 해 11월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가 다시 고려에 사자를 보내 입조하였으므로, 고려 조정은 그에게 쌀 1천 석을 지급하였다.⁵⁴⁾

이러한 1368년 통교 관계는, 고려 조정이 대마도에 대량의 쌀을 지급하는 대신, 대마도는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을 통제한다는 쌍무적 조건에 기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러한 통교 관계 수립의 결과로서, 대마도 왜인들이 고려에 투화하여 경상도 거제·남해에 집단 거주하게 된다.⁵⁶⁾ 통교 관계의 진전에 따라, 1367년 3월부터 1369년(공민왕18) 11월까지 한반도로의 왜구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⁵⁷⁾

그런데, 이영 등의 연구에 의하면, 1368년 8월 13일부터 1369년 4월 6일까지 기간 중 어느 시점엔가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는 막부(북조) 측을 따르던 쇼니 요리히사 대신, 그의 아들이면서 남조 측을 섬기던 쇼니 요리즈미(少貳頼澄)의 진영으로 전향한다.⁵⁸⁾ 필자가 그 기간을 더 좁혀 본다면, ① 1368년 11월에 소 츠네시게가 고려에 사자를 보내왔던 점 및 ② 1369년 1월에 왜구가 중국 산둥 지방에서 침구 활동을 하는 중에도, 그 경유지일 것이 분명한 고려의 남해안 및 서해안에서는 침구 활동이 없었던 점⁵⁹⁾ 등을 고려하여, 1369년 1월 이전까지는 고려-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소 츠네시게는

49) 이영(2011b), 38~47쪽 참조.

50) 山口隼正(1989), 『南北朝期九州守護の研究』, 文献出版, 569~570, 574~577, 581~582쪽 등 참조. 14세기 후반(1351~1375) 쇼니씨의 대마도에서의 지위에 관하여, ① 슈고(守護)·지토(地頭)를 겸했다는 견해(오사 세츠코, 구로다 쇼조(黒田省三)), ② 슈고였다는 견해(야마구치 다카마사, 사토 신이치), ③ 슈고가 아닌 총지토(総地頭)에 불과했다는 견해(아라키 가즈노리)로 나뉘어져 있다(長 節子(1987), 53~58쪽; 山口隼正(1989), 567~584쪽; 佐藤進一(1988), 『室町幕府守護制度の研究(下)』, 東京大学出版会, 311~314쪽; 荒木和憲(2017), 23~39쪽; 松尾大輝(2021), 「南北朝期宗氏による対馬支配と少貳氏」 『古文書研究』 92, 19~20쪽 등 참조). 필자는 ③설에 따라, 이 시기 쇼니씨가 대마도 슈고가 아니었고, 따라서 소씨 역시 슈고다이(守護代)가 아니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학설 대립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슈고 또는 지토였을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는 쪽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각주 104번도 함께 참고하시오.

51) 이영(2011b), 45~47쪽 참조.

52)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7월 11일 기묘; 이영(2011b), 47쪽 참조.

53)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윤7월.

54)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11월 9일 병오.

55) 위 각주 36번 참조.

56)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11월 27일 무오. 「... 이에 앞서 왜인들이 거제도에 거주하면서 영원히 화친관계를 맺고자 하므로 조정에서 그것을 믿고 허락하였었는데, ...」; 中村栄孝(1965), 145쪽; 이영(2011b), 50~54쪽 등 참조.

57) 이영(2011b), 48쪽 등 참조.

58) 이영(2011b), 54쪽 참조. 長 節子(1987), 57쪽; 山口隼正(1989), 581쪽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서술이 보이는데, 그 전향 시기에 관해서 이영이 가장 정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59) 이영(2011b), 63~64쪽 참조.

이 때까지 막부 측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남조로 전향했던 시기는 1369년 1월 이후부터 4월 6일까지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마도가 막부를 등지고 남조로 전향한 배경에는, 당초 막부의 명에 따라 고려와의 통교에 나섰었지만, 실제 내심으로는 고려와의 통교 관계를 조속히 단절하고자 했던 대마도 지배층의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⁶⁰⁾ 대마도의 경제적 이득 측면으로 볼 때, 연간 쌀 1천석 정도의 통교 관계 정도로는 대마도 측에게 왜구 활동을 중지시킬 정도의 경제적 이득은 되지 않는 상태였다.⁶¹⁾ 따라서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는 1369년 초에 남조로 전향했고, 막부가 지시하였던 고려-대마도 통교 관계도 파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거제·남해로 이주했던 투화왜인들도 같은 해 7월 대마도로 돌아갔다.⁶²⁾ 이들은 그 해 11월 아주(충남 아산) 지방 및 영주·온수·예산·면주 지방으로 다시 침구해 옴으로써,⁶³⁾ 왜구들의 한반도 침구는 재개되었다.

즉 대마도의 쇼니씨와 소씨는 (늦어도) 1369년 7월에 고려와의 통교 관계를 파기하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관계가 수립된 지 미처 1년도 되지 않은 때였다. 이렇게 하여 통교 공백기는 1369년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375년까지의 시기는 쇼니씨와 소씨가 남조 측에 가담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이마가와 료순의 고려·조선 통교에서의 독보적 위상

통교 공백기 제2기에 관해서는 제2절과 제3절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본 제2절에서는 1370~1380년대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의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역할을 먼저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조선과의 통교에서 그가 누리던 독보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 고려·조선-대마도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가.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역할

이마가와 료순은 일본 무로마치(室町) 막부에 의하여 1370년 규슈 단다이에 임명되어 1395년 윤7월 교토로 소환될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했다. 그의 재직 기간은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와 대부분 겹치는 만큼, 그가 미친 영향도 상당히 컸다. 우선 이 시기 이마가와 료순의 역할을 당시 일본 국내외 정세의 맥락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 시기 일본에는 막부가 옹립한 천황(북조)과 막부에 반대하는 천황(남조)이 대립하던 남북조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1370년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이미 남조 세력이 쇠퇴한 상태였지만, 유독 규슈에서만은 남조 측 가네요시 친왕(懷良親王)의 정서부(征西府) 세력이 우세하였다.⁶⁴⁾ 이에 이마가와 료순은 규슈 단

60) 이영(2011b), 65~67쪽 참조. 참고로 이영은, ① 1368년 원의 수도 대도(大都)가 함락되고 원이 패주하였다는 점, ② 대마도가 1369년 1월 산동 지방 침구 시에 이 정보를 입수하고, 원이 왜구 활동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침공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부터, 대마도가 원의 침공 위협 없이 왜구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막부의 금왜 압력을 더 이상 수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1368년 통교관계 단절의 주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영의 견해도, 왜구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려 통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는 점에서, 본문에서의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마츠오 다이키는 이 시기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가 남조로 전향한 배경을, 이 무렵 북조 측에 가담하여 있으면서 쇼니씨를 통솔하던 쇼니 요리히사와 그 아들 쇼니 후유스케가 모두 규슈를 떠나 있었던 사실에서 구하고 있다. 즉 그는 “츠네시게의 남조 귀속은, [쇼니] 요리히사·후유스케가 도피해 있었으므로 [소 츠네시게가] 쇼니가(少弐家) 내에서 고립되게 된 점이 원인으로 보이며, 쇼니씨의 히칸(被官)이라는 입장 상 [남조 측인 쇼니] 요리즈미의 휘하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일 것이다.”라고 하였다(松尾大輝(2021), 26~27쪽). 그러나 위 견해는 마츠오 스스로도 “그러나 ... 츠네시게의 대마도 지배에 대한 요리즈미의 영향을 알 수 없다.”(松尾大輝(2021), 27쪽)고 말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위 견해는 당시 고려-대마도 통교 관계 및 대마도에 의한 왜구 활동 간의 연관성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61) 당시 활발한 왜구 활동의 예로서 1360년 윤5월 강화도 침구를 들 수 있다. 이 때 왜구는 1차례 침구만으로도 쌀 4만석을 약탈해 가는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려사』 권39, 공민왕 9년 윤5월 1일 병진 참조), 그에 비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할 고려의 군사력은 아직 미약한 상태였다(이영(2011b), 66~67쪽 참조).

62)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7월 9일 신축.

63)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11월 1일 임진; 11월 27일 무오.

64) 佐藤進一(2005), 『南北朝の動乱』, 中央公論新社(原著 1974), 486쪽 등 참조.

다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공세를 취하여, 1372년 8월에는 정서부의 본거지인 다자이후(大宰府)를 탈환하고 정서부를 히고 국(肥後国; 구마모토 현)으로 몰아낸다.⁶⁵⁾

그런데 그 무렵 정서부의 가네요시 친왕은 명으로부터 “일본국왕”으로 승인되어 있었다.⁶⁶⁾ 막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과의 국교 수립을 시도하였으나, 명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상황이었다.⁶⁷⁾ 막부로서는 명과 정서부가 연합하여 공격해올 것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었다.⁶⁸⁾ 따라서 막부는 시급하게 명으로부터 “일본국왕”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서부를 비롯한 규슈 남조 세력을 신속히 멸망시켜야 했다. 한편 명 조정은 “일본국왕”의 조건으로서 왜구 금압을 제시해 오고 있었다.⁶⁹⁾ 당시 왜구 세력은 규슈 남조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⁷⁰⁾ 규슈 남조 세력의 멸망과 왜구 금압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막부로서는 ‘명과의 국교 수립, 규슈 남조 토벌, 왜구 금압’이라는, 3가지 과제이면서 실제로는 동일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당면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⁷¹⁾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임무를 부여받았던 사람이 바로, 규슈에서의 군사권과 외교권을 부여받았던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이었다.⁷²⁾ 막부로부터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므로, 1370년대 규슈에서 이마가와 료순의 입지는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마가와 료순의 고려와의 통교 독점

1375년(우왕원) 2~3월 무렵 고려 사신 나흥유(羅興儒)가 일본 막부로 와서 왜구 금압을 요구했다.⁷³⁾ 막부 및 료순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요구는 명이 요구하는 “일본국왕”으로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라 생각했을 것이다.⁷⁴⁾ 이에 이마가와 료순은 규슈 지역의 3대 토착 세력 중 하나인 쇼니씨의 가독 쇼니 후유스케(少弐冬資)⁷⁵⁾를 그 해 8월 히고(肥後) 미즈시마(水島; 구마모토 현 기쿠치 시(菊池市) 소재)로 유인하여 살해한다(미즈시마의 변).⁷⁶⁾ 또한 이 시기 제5대 대마도주 소 스미시게는 같은 해인 1375년 12월부터 1376년 10월까지의 기간 중에 북조 측으로 전향하는데,⁷⁷⁾ 이 때 이마가와 료순이 소 스미시게의 북조 전향에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⁸⁾

65) 川添昭二(1988), 『今川了俊』, 吉川弘文館(原著 1964), 85~98쪽 등 참조.

66) 『明太祖實錄』 권90, 洪武 7년 6월 1일 을미; 村井章介(1988), 『アジアの中の中世日本』, 校倉書房, 246~247, 282~283쪽; 川添昭二(1996),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82~84, 160~161쪽 등 참조.

67) 田中健夫(1975), 『中世対外関係史』, 東京大学出版会, 60~61, 63쪽; 村井章介(1988), 263~264쪽; 川添昭二(1996), 162~163쪽 등 참조.

68) 村井章介(1988), 267쪽; 이영(2010b), 「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 『韓日關係史研究』 36, 223~224쪽 등 참조.

69) 村井章介(1988), 247, 267쪽; 村井章介(1993), 15쪽(이영 역(2003), 25~26쪽) 참조.

70) 姜尙雲(1966), 「麗末鮮初의 韓・日關係史論 - 한국과 일본의 今川・大内 兩諸侯와의 關係 -」 『國際法學會論叢』 11(1), 19쪽; 佐藤進一(2005), 496쪽; 川添昭二(1996), 174쪽; 金琪燮(1997), 100~104쪽; 이영(2008a), 93~94쪽 등 참조.

71) 村井章介(1988), 267~268쪽; 川添昭二(1996), 163쪽; 이영(2010b), 199~201, 221~224쪽; 이영(2020a), 「우왕 원년(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 당시의 규슈 정세와 규슈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의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60, 385~386쪽 등 참조. 이러한 무라이 쇼스케(1988) 등의 견해 이전에 그 초기 형태로 사토 신이치(1974)의 유사한 견해도 참고하시오(佐藤進一(2005), 498~499쪽 참조).

72) 이영(2010b), 199~200쪽; 이영(2020a), 365쪽; 이영(2020b), 「고려 우왕 원년(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과 미즈시마의 변(水島の變) - 규슈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 『일본역사연구』 52, 39쪽 등 참조. 이영의 연구 이전에, 가와조에 쇼지(1996)가 이마가와 료순의 외교교섭, 남조토벌, 왜구금압 활동을 결합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川添昭二(1996),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 85~86쪽 참조).

73)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원년 2월.

74) 村井章介(1993), 15~16쪽(이영 역(2003), 26쪽).

75) 당시 제4대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 및 제5대 소 스미시게의 주군이던 쇼니 요리즈미(1375년 미즈시마의 변 이전까지 남조 측)의 형으로서, 북조 측을 따르고 있었다.

76) 川添昭二(1988), 106~114쪽 등 참조.

77) 長 節子(1987), 55쪽, 69쪽 각주 55번 등 참조.

78) 이에 관한 근거 자료로서는, 제7대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1399년(정종원) 조선에 보내온 서계 중 “관(官)이 혹리(酷吏)를 파견해 오로지 탐욕스러운 생각을 제 마음대로 하여 좌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분을 들 수 있다(『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일). 오사 세츠코는 “관”을 이마가와 료순, “혹리”를 니이 소씨 출신의 제5대 및 제6대 대마도주인 소 스미시게·요리시게(頼茂)로 보았다(長 節子(1987), 61쪽 참조). 나아가 오사 세츠코는, 이 시기 소 스미시게의 북조 전향은, 미즈시마의 변 이후 쇼니씨 가독이 된 쇼니 요리즈미(少弐頼澄)가 이마가와 료순 진

쇼니씨는 가마쿠라 시대 이래로,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 지역에서 슈고(守護) 또는 총지토(總地頭)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⁷⁹⁾ 쇼니씨는 당시 왜구 세력의 실체였다고 보인다.⁸⁰⁾ 이마가와 료순이 쇼니씨의 가독을 유인해 살해한 데에는 여러 의도가 있었겠지만,⁸¹⁾ 그 중에서도 료순이 쇼니씨 휘하에 있던 대마도 지배층을 직접 통제하고, 나아가 왜구의 근거지 및 왜구의 중심 세력을 직접 아우른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⁸²⁾

이마가와 료순이 위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 일련의 ‘왜구 금압’ 활동을 시행했던 시기는 고려 사신 나흥유의 일본 방문 기간과 일치한다.⁸³⁾ 그리고 그 직후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 고려 사신들의 일본 방문 및 료순 측의 왜구 금압 조치들이 서로 화답하듯이 이어진다.⁸⁴⁾

즉 나흥유가 고려로 귀국한 후 그 이듬해인 1377년(우왕3) 6월 고려는 안길상을 다시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창궐에 대한 일본 측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⁸⁵⁾ 이에 대하여 이마가와 료순은 즉시 7월⁸⁶⁾에 그 휘하에 있던 신흥(信弘)을 고려로 보내, 왜구들의 정체는 “포도배(逋逃輩; 죄를 짓고 도망친 무리)”라고 해명하면서,⁸⁷⁾ 규슈에서의 남조 정벌 계획 및 그 시기를 미리 알려 왔다.⁸⁸⁾ 고려 조정도 곧바로 그 해 9월에 다시 정몽주를 파견하였다. 고려 조정은 ‘원·명의 공세에 대비한 복변 방어 때문에, 왜구에 대해서는 연해 지방 군관에게 방어를 일임하는 상황’이라고 고려 측의 취약한 방비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면서, 이마가와 료순의 왜구 금압 노력을 당부하였다.⁸⁹⁾ 이렇게 고려 조정과 이마가와 료순이 각자의 내부 사정까지 진솔하게 전달하면서 상호 신뢰감을 공고히 하는 상황에서, 이듬해인 1378년(우왕4) 6월 료순은 다시 신흥 및 군사 69명을 파견하여 고려 군세와 함께 왜구를 토벌하도록 했다.⁹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료순은 고려 조정의 강력한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 이후 료순은 고려 조정으로 피로인을 송환하는 등 고려와의 통교를 독점하게 된다.

료순 이외에 이 시기 고려와 통교하였던 일본 내 세력으로서의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가 유일하다. 그는 1379년(우왕5) 고려에서의 왜적 퇴치를 위하여 고려에 박거사(朴居士) 등 군사 186명을 파견한 바 있다.⁹¹⁾ 그러나 이 시기 오우치 요시히로의 고려 통교는 이마가와 료순의 지시 또는 그와의 상호 협의가

영으로 전향한 것과 관련 없지 않다고 하였다(長 節子(1987), 56쪽 참조). 마츠오 다이키도, 1376년 이후 북조 연호로 바뀐 즈음에 작성된 소 스미시게의 문서들이 미즈시마의 변 이후 북조로 전향한 쇼니 요리즈미의 뜻을 받은 것이라 보았다(松尾大輝(2021), 29쪽 참조). 또한 이영도 이 시기 소 스미시게의 도주 직 취임과 북조 전향은 이마가와 료순이 쇼니 요리즈미를 통하여 성사시킨 것으로 본다(이령(2020b), 50~51쪽 참조).

79) 각주 50번 및 104번을 함께 참고하십시오.

80) 이영(2013) 등 참조.

81) 대표적인 견해로서는 川添昭二(1988), 126쪽 참조. “역대 단다이가 규슈 경영 상의 최대 암(癥)으로 여겼던 쇼니씨 세력을 완전히 봉쇄하게 되어, 단다이 권한을 강화 확대하고, 그 규슈 경영을 일면 유리하게 이끌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82) 長 節子(1987), 60쪽; 이령(2020b), 53~54쪽 등 참조. 오사 세츠코는 위 논문에서 “왜적 금압, 조선과의 통교에 열심인 료순이, 해적의 본거지이고 조선 통교의 관문에 위치하는 대마도 소씨 장악에 성공했던 일은 매우 흥미롭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영은 위 논문에서 이마가와 료순이 고려 사신 나흥유의 왜구 금압 요구에 호응하여, 미즈시마의 변을 통하여 쇼니씨 가독을 제거함으로써 쇼니씨와 소씨 간의 관계를 차단하고 대마도를 자기의 휘하에 두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83) 이령(2020b), 43~52쪽 참조.

84) 1375~1376년 나흥유의 일본 사행 및 1377년 안길상의 일본 사행에 관하여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서는, 그 무렵부터 왜구 활동이 더욱 격렬해졌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이영은 위 본문 이하 부분에서 간략히 서술된 바와 같이, 나흥유 및 안길상의 일본 사행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이영(2017), 「우왕 3년(1377) 정몽주(鄭夢周) 일본 사행(使行)의 시대적 배경」 『일본역사연구』 46, 97~123쪽 등 참조).

85)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6월.

86) 『고려사』에서는 8월이라고 하고 있으나, 『도은집』에서는 7월이라고 쓰고 있다(『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8월; 이승인, 『도은집』 권4 「文」, 「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참조). 이영은 7월에 경상도 도착, 8월에 수도 개경 도착이라고 해석한다(이영(2017), 117쪽).

87)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8월. 이영(2017)은 “포도배”를 규슈 남조 무사들로 보았다(이영(2017), 114쪽). “포도”에 관한 최근 연구로서는, 조혜란(2022),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적 해명에 등장하는 포도(逋逃)와 고려 말 왜구」 『한국중세사연구』 70, 233~263쪽을 참조하십시오.

88) 이승인, 『도은집』 권4 「文」, 「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이영(2017), 115~119쪽; 이영(2020a), 389~390쪽 등 참조.

89)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3년 9월; 이영(2017), 117~120쪽 등 참조.

90)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4년 6월; 7월; 11월.

91) 『고려사』 권134, 열전 권47, 우왕 5년 5월.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⁹²⁾

이렇게 이마가와 료순이 고려와의 통교를 독점한 배경에는 위 가.항에서 언급한 일본 막부의 방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막부로서는 명과의 국교 수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왜구 금압, 즉 규슈 남조 세력 토벌을 완수해야 했다. 또 일본 막부가 왜구 금압(즉 규슈 남조 세력 토벌)에 진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명과 고려에 일관되게 전달하여야 했다. 비록 14세기 말까지 명과의 국교 수립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일단 고려와의 통교 관계가 이마가와 료순을 통하여 복구되어 유지되는 이상, 막부의 그러한 메시지는 료순이라는 하나의 창구로만 전달되어야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⁹³⁾

따라서, 막부는 이마가와 료순에게 고려 통교를 독점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생각한다.⁹⁴⁾ 1370년대 후반에 이미 일본 대부분 지역은 북조, 즉 막부의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료순의 고려 통교 독점에 이의를 제기할 세력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이마가와 료순과 대립하던 잔존 세력들은 따로 고려와의 통교를 시도하였겠지만, 료순 측은 그러한 시도가 적발되는 대로 이를 방해하였다. 그 일례로서는, 1378년 11월 이마가와 료순이 고려로 파견한 신흥이, 왜구 세력으로 보이는 “패가대(覇家臺; 하카타(博多))”로부터 고려로 파견된 사신을 쫓아냈던 일을 들 수 있다.⁹⁵⁾

다. 이마가와 료순의 조선과의 통교 주도

1392년 10월 일본 남조가 북조 측에 흡수됨으로써 남북조 시기가 종식된다(남북조 합일(南北朝合一)). 규슈에서도 그 이전인 1391년 이마가와 료순이 히고(肥後) 야츠시로 성(八代城)의 공략에 성공함으로써 규

92) 가와조에 쇼지는, ① 고려 사신 한국주가 1378년 10월 왜구 금압 요청을 위하여 이마가와 료순을 만났고, 이듬해인 1379년 오우치 요시히로 휘하의 박거사의 군사와 함께 귀국한 점, 그리고 ② 이 박거사 등 일본 병사들이 왜구 토벌전에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취했다(川添昭二(1996), 169쪽). 또한 스다 마키코도 위와 같은 한국주와 오우치씨 간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는 나아가, 1378년 4월 오우치씨가 「高麗渡水手(고려에 건너가는 뱃사람)」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사실은 같은 해 6월·7월에 이마가와 료순이 신흥의 군사 및 사자를 고려에 파견한 일과 관련하여, 오우치씨가 료순의 활동을 지원 내지 협력한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須田牧子(2011),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48~51쪽). 마츠오카 히사토, 하시모토 유 등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표시하였다(橋本 雄(2010), 「対明・対朝鮮貿易と室町幕府一守護体制」,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110쪽; 松岡久人(2013), 『大内義弘』, 戎光祥出版, 125쪽). 필자도 위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른다.

93) 오우치씨가 1379년 이후 1395년 료순의 실각 시까지 고려·조선과의 통교에 나서지 않았던 점도 이로써 해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스다 마키코는 “요시히로와 료순 간에 조선에 대한 통교에서 경합관계가 존재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須田牧子(2011), 55쪽), 이것도 필자의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반면 한윤희는, 이마가와 료순이 규슈 단다이가 있던 하카타(博多)를 통하여 고려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구 지지세력들이 고려에 입조하여 피로인 송환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한윤희(2014),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경제적 수익 목적」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본연구』 36, 410쪽). 필자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로도 보이지만, 한윤희가 고려에 입조하지 못한 세력을 “왜구 지지세력”으로 한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생각건대, 한윤희의 위 설명은 왜구 토벌세력인 동시에 이마가와 료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오우치씨가 고려 조정에 입조하지 못 한 점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94)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는, 1226년(고종13) 고려가 금주(金州; 김해)에의 왜구 침입을 항의하자, 다자이쇼니(大宰少弐) 무토 스케요리(武藤資頼)가 고려 사절의 면전에서 아쿠토(悪徒) 90명을 참수하였고, 가마쿠라 막부는 그러한 고려-다자이후(大宰府) 간의 관계를 묵인하였던 사실이 있다(『百練抄』嘉祿 3年 7月 21日条 참조. 이 사건은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5월 17일 을축 조 기사와 관련 있다. 이령(2020b), 39~40쪽도 같은 취지이다). 무로마치 막부와 이마가와 료순 간의 관계는, 당시 명·고려와 일본 간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묵인 이상의 연계가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95)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4년 11월 참조. 다무라 히로유키는, 이 사료에 언급된 “패가대 왜사(倭使)”가 1377년 4월 무렵 박위가 황산강 전투에서 토벌하여 죽인 “패가대 만호(萬戶)”가 속했던 왜구 세력이 파견했던 것으로 보면서, 이들 “패가대” 왜구 세력을 하카타 주변의 토호층으로 보았다(田村洋幸(1967), 49쪽 참조). 한편 이 영도 이 세력을 하카타 일대에 근거한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패가대 왜사”는 오토모씨(大友氏), 쇼니씨 또는 기쿠치씨(菊池氏)에 속한 사람으로 추측하였고(이영(2010b), 206쪽 각주 77번), “패가대 만호”는 쇼니씨 가독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영(2023), 「우왕 2(1376)년 10월, 왜구 최초의 기병(騎兵) 동원에 관한 고찰 - 임파현 전투(9월)와 행안산 전투(10월)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韓日關係史研究』 80, 25쪽 각주 55번).

필자도 “패가대 만호”의 세력이란, 원래 하카타 또는 그 인근의 다자이후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료순과 대립하였던 왜구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패가대 왜사” 또는 “패가대 만호”를 료순 세력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고려사』는 이마가와 료순을 “패가대”의 “주장(主將)”으로 표현하면서(『고려사』 권117, 열전 권30, 제신, 정몽주), “패가대 만호”와는 구별한다.

슈 남조 세력은 최종적으로 종식되어 있었다.⁹⁶⁾

그러나 남북조 합일 이후 규슈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우선 이마가와 료슌과 규슈 남부(현재의 가고시마 현 및 미야자키 현)의 시마즈씨(島津氏)는 1375년 미즈시마의 변 이후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1394년 2월 이마가와 측이 시마즈씨에 대항하는 규슈 남부 토착 세력(고쿠진(国人))을 지원함으로써 이마가와 료슌과 시마즈씨 간의 분쟁이 재연된다.⁹⁷⁾ 또한 1395년 3월 이전 시점에서 이마가와 료슌은 규슈 동부 분고 국(豊後国; 현재의 오이타 현) 슈고 오토모 치카요(大友親世)에의 대항 세력을 지원하면서 오토모씨와의 전투도 개시된다.⁹⁸⁾

이 시기 규슈 정세의 난맥상은, 시마즈씨 등 규슈 세력들의 조선과의 통교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시마즈씨 일족이 먼저 1392년에 신속하게 조선과의 직접 통교를 개시했고, 1395년(태조4)에도 3차례에 걸쳐 조선 조정에 사자를 보내왔다.⁹⁹⁾

그렇지만 이 시기 막부 최고 권력자인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여전히 규슈에서의 료슌의 활동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⁰⁾ 이마가와 료슌도 막부가 자신에게 부여했던 임무, 즉 ‘왜구 금압’ 활동에 계속 매진하였다. 그는 여전히 왜구 활동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규슈의 북서부 지역, 즉 치쿠젠(筑前; 후쿠오카 현 북서부)·치쿠고(筑後; 후쿠오카 현 남부)·히젠(肥前; 사가 현, 나가사키 현)·히고(肥後; 구마모토 현) 등 4개 구니(国) 및 대마도·이키(壱岐) 등 북서 도서 지역, 그리고 이 곳의 토착세력인 쇼니씨·기쿠치씨·소씨·마츠라당(松浦党) 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¹⁰¹⁾ 이로써 조선 조정 역시 고려 조정과 마찬가지로, 료슌에 대한 강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마가와 료슌이 1395년 윤7월 “교토로 소환”¹⁰²⁾되어 1396년 초 규슈 단다이에서 해임되기까지, 그는 조선 통교에서의 주도권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96) 堀川康史(2016), 1967쪽 등 참조.

97) 堀川康史(2016), 1969~1972쪽 참조.

98) 堀川康史(2016), 1973~1978쪽 참조.

99) 『태조실록』 권2, 태조 1년 10월 19일 정묘; 권7,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 권8, 태조 4년 7월 11일 임인; 7월 16일 정미.

또한 이 시기에 료슌이 지배하던 이키 섬에서도 1393년(태조2) 승려 건철(建哲)이 조선에 와서 피로인 200여명을 송환하였던 바 있다(『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6월 16일 경인). 당시 사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키 섬의 조선 통교가 그 이후 1398년(태조7) 1월까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1393년의 위 사절 파견에 대하여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려울 듯하다. 다만 대규모 피로인 송환이라는 통교 방식은 이마가와 료슌의 전례를 본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이마가와 료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그 명목이 이키 섬의 단독 명목이라는 점에서, 당시 료슌의 규슈에서의 위상이 축소되던 상황을 엿볼 수도 있다.

100) 堀川康史(2016), 1972, 1978쪽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예로부터 통설은 “료슌이 규슈 지역을 그의 분국(分国)으로 삼아 지배하고 조선 통교를 거의 독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국내 정치 및 국제 외교 양 측면에서 이마가와 료슌을 경합적인 존재로 보고 그를 해임했다.”는 견해이다(佐藤進一(2005), 493~494, 498쪽; 山口隼正(1989), 605~606쪽; 村井章介(2010), 『倭寇と「日本国王」』,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15쪽; 松岡久人(2013), 118~119, 125~126쪽 등 참조). 특히 마츠오카 히사토는, 료슌의 외교 독점 행위가 남북조 시기에는 묵인되었지만, “남북조 합체 성립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 점에서 [료슌] 단다이 해임의 이유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松岡久人(2013), 126쪽).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최근 호리카와 야스후미에 의한 유력한 견해에서는, 당시 관련 사료 해석을 통하여,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이마가와 료슌과 시마즈씨·오토모씨 간의 분쟁에서 료슌 측을 꾸준히 지원하였다고 보면서, 료슌의 해임은 그가 규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요시미츠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堀川康史(2016), 1965~1988쪽 참조. 荒木和憲(2021), 4~5쪽도 같은 취지이다).

필자도 요시미츠의 표면적 입장의 측면에서는, 호리카와 야스후미의 사료 해석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료슌에 대한 당시 입장에 관해서는, 표면적으로 표시된 입장과 내심에 가졌던 정치적 의도를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획에 논증하기로 한다.

101) 佐藤進一(1988), 234~238, 241~244, 264~268, 276~279, 308~314쪽 등 참조.

102) 호리카와 야스후미는 이마가와 료슌의 “교토 소환”의 의미에 관하여, 실제로는 오토모 치카요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규슈로부터 교토로 패주해온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堀川康史(2019), 「今川了俊の京都召還」『古文書研究』 87, 94~107쪽 참조).

3. 제2기: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시기 (1376~1395)

가. 고려-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 (1376~1391)

대마도에서는 1370~1371년 무렵부터¹⁰³⁾ 니이 소씨 출신의 소 스미시게가 제5대 도주로 취임해 있었다. 위 제2절 나.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375년 12월부터 1376년 10월까지의 기간에 소 스미시게는 남조에서 북조(막부 측)로 전향하는데, 그의 북조 전향에는 이마가와 료순의 관여가 있었다.¹⁰⁴⁾ 바로 이 시기부터 대마도는 이마가와 료순의 지배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이 시기부터 통교 공백기 제2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대마도 지배층의 상층에는, 예전부터 대마도에 대한 종주권을 갖던 쇼니씨, 그리고 새로이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마가와 료순 등이 모두 존재하는 양속적(兩屬的)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¹⁰⁵⁾ 그러나 쇼니씨는 1375년 미즈시마의 변에서 기존 가독이 피살된 이후 혼란 상태에 있었고, 그 가독을 계승한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도 대마도 통치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했다.¹⁰⁶⁾ 따라서 대마도 소씨는 주로 이마가와 료순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 제2절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마가와 료순은, 일본 여타 세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대마도가 고려와 직접 통교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 틀림없다. 그 대신 료순 스스로 직접 대마도에 관련된 외교적 현안을 고려와 협의하여 처리했다. 이 역시 대마도 현지의 메시지가 아닌, 막부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고려 측에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한 예로서, 1389년(창왕원) 고려 박위의 정벌군이 대마도를 공격했던 때의 상황을 보자.¹⁰⁷⁾ 대마도는 물론, 이마가와 료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료순은 이듬해인 1390년(공양왕2)에 예전과 다름없이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¹⁰⁸⁾ 나아가 1391년(공양왕3)에는 고려 조정에 피로인 68명을 돌려보내면서, “제가 도리어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분한 마음이 있어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어 해적을 붙잡아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대마도·이키 등지에서의 왜구 소탕 실적을 고려 조정에 보고하였다.¹⁰⁹⁾ 즉 이마가와 료순은 1389년 대마도 정벌에 담긴 고려 조정의 왜구 금압 의지를 이해하였고, 그러한 고려 조정의 의지에 적절히 화답하면서 일본 막부의 성심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¹⁰⁾

그와 동시에 대마도에 대해서 료순은, 그들의 왜구 활동을 자제시키는 데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마도를 달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료순은 치쿠젠 국(筑前国 후쿠오카 현)에 있는 사찰 안라쿠지(安樂寺)의 영지에 대한 반제(半濟)¹¹¹⁾ 수익을 대마도주 소 스미시게에게 급여하였다.¹¹²⁾ 이러한

103) 제4대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가 활동한 사료의 종견(終見)에 관하여, 야마가타 다카마사는 1370년 11월의 것(山口集正(1989), 575쪽)이라 하고, 오사 세츠코는 1371년 윤3월의 것(長 節子(1987), 58~59쪽)이라 하였다.

104) 위 각주 78번 참조. 종래 오사 세츠코와 야마구치 다카마사 등의 견해에서는, 대마도주 소 스미시게가 1378년 무렵 대마도 슈고가 되어 쇼니씨로부터 독립하여 이마가와 료순의 영향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長 節子(1987), 60쪽; 山口集正(1989), 584~587쪽; 이령(2020b), 51~52쪽 등 참조). 그러나 사토 신이치, 아라키 가즈노리 등이 제기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① 소 스미시게처럼 슈고다이 등 다이칸(代官)들이 “슈고”를 자칭했던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의 예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슈고”를 칭한 사례만으로는 스미시게가 슈고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 ② 1352년 이래로 쇼니씨가 대마도의 슈고가 된 바 없이 총지토 직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씨가 쇼니씨를 대신하여 슈고가 될 수 없다는 점, ③ 1432년 막부 문서에 쇼니씨-소씨의 주종관계가 언급되어 있는데, 만약 1378년 무렵 소 스미시게가 이미 막부로부터 슈고 직에 임명된 바 있다면, 소씨의 가계(家格)가 그 이후 강등되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소 스미시게는 대마도 슈고가 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佐藤進一(1988), 313~314쪽; 荒木和憲(2017), 26~37쪽; 松尾大輝(2021), 32쪽 등 참조). 필자도 이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

105) 松尾大輝(2021), 31쪽 참조.

106) 松尾大輝(2021), 29쪽.

107) 『고려사』 권137, 열전 권50, 창왕 원년 2월; 권116, 열전 권29, 제신, 박위.

108) 『고려사』 권45, 공양왕 2년 5월 19일 신해.

109) 『고려사』 권46, 공양왕 3년 8월 9일 계해. 한편 무라이 쇼스케는 필자의 견해에서 더 나아가, 1389년 대마도 정벌 시, “이에 대한 막부측의 자세는, ... ‘이마가와 료순에게 명하여 해적선을 금압하고 해적에게 붙잡힌 조선인을 해방시키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다.”라고 함으로써, 막부의 직접적인 조치로 이 시기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村井章介(1993), 15쪽(이영 역(2003), 25쪽)).

110) 이영(2010b), 209~210쪽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111) 일본 남북조 시기에, 군비 조달을 위하여 슈고들이 장원에서 나오는 연공(年貢)의 절반을 군사 세력에 맡기도록

방식을 통하여 료순은, 대마도주 등 대마도 지배층에게 경제적 이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고려-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 동안에, 대마도에 관한 외교적 현안은 이마가와 료순이 직접 고려와 접촉하여 처리하였고, 대마도 소씨는 직접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통교 공백기 제2기는 대마도 지배층의 상층 권력인 이마가와 료순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나. 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 (1392~1395)

1392년 일본에서는 남북조 합일, 한반도에서는 조선 건국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규슈 남부의 시마즈씨, 서일본의 오우치씨 등이 조선 통교에 나서지만, 대마도는 여전히 나서지 않는다. 이마가와 료순의 지배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미치고 있던 규슈의 북서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마도에 대한 그의 통제 의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은 건국 직후부터, 왜구 근거지인 대마도에 대한 재차 정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이마가와 료순은, 그가 스스로 대마도 현지의 왜구를 통제할 것이니 대마도·이키에 대한 정벌을 자제해 달라고 1394년(태조3)¹¹³⁾ 및 1395년(태조4)¹¹⁴⁾ 최소 2차례에 걸쳐 조선 조정에 요청한다. 료순은 조선 조정에 이렇게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려말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마도 현지에 대해서 왜구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¹¹⁵⁾

즉 그는 규슈에서 입지가 축소하는 중에도, 특히 대마도 지역에 대해서는 슈고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마도에 대해서 여전히 조선과의 통교를 금지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 시기 니이소씨 출신의 대마도주들(제5대 소 스미시게 및 제6대 요리시게)은 이마가와 료순의 규슈 단다이 취임 이후 대마도주에 취임하였으므로, 그들의 권력 기반의 원천은 이마가와 료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1392년 남북조 합일 후에도 1395년 이마가와 료순의 실각 시까지, 그는 대마도의 지배층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에 의하여 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마가와 료순의 실각 이후부터는 제3기(1396~1397)에 해당한다. 이마가와 료순이 건재하던 시기에 대마도는 물론, 서일본 전체 지역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던 만큼, 그의 존재가 사라진 후 규슈 상황은 대마도 및 서일본 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급변 상황을 통하여 이윽고 조선과 대마도 간의 통교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회에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했던 제도이다(『角川日本史辞典』).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장원 등의 수익 절반을 슈고 측 세력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12) 松尾大輝(2021), 31~32쪽 참조.

113)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 근래에 본국의 수군 장수들이 여러 번 왜구를 사로잡고 주사(舟師; 수군)를 이끌고 가서 잔당을 쳐서 잡자고 하므로, 조정의 공론이 장차 이를 허락하려던 차에 마침 그대[료순]의 말씀을 보고 중지했으니, ...”

114)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이마가와 료순이 그 서한을 통하여 이키·대마도의 도적에 대하여 언급한 데 이어] 만약에 또 관군의 장수들에게 다른 방도를 내게 한다면 통호(通好)하는 길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 제가 서문 계책이나마 쓰도록 맡겨 두시면, 반드시 <왜구들이> 모두 없어져 두 나라의 정이 마땅히 좋아질 것이니 해아리소서. ...” 참고로 원문에서의 「無難類」는 조선초 사료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7월 1일 기사;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6월 10일 기묘;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9일 무신; 『세종실록』 권73, 세종 18년 윤6월 19일 계미 등). 위 인용문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였다.

115) 이태훈은 “료순이 조선 측의 파병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 [조선]이 침범해 온다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태훈(2021), 「14세기 후반 대일 외교사절로 본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연구』 32, 101쪽). 이태훈의 분석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1389년 박위의 대마도 정벌 시 막부 및 료순의 대응방식, 료순의 고려·조선과의 통교 방침 등 이 시기를 둘러싼 고려-일본 관계 전반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IV. 맺 음 말

이제까지 기존 연구들은 1369년(공민왕18)부터 1397년(태조6)까지 약 30년에 걸쳐 지속된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의 통교 공백기에 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368년(공민왕17) 고려-대마도 통교 관계는 그 이후 조선-대마도 간에 장기간 지속된 통교 관계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사건 사이의 기간을 이어주는 통교 공백기의 배경, 양상 및 종결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그 이후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선행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교 공백기의 배경 및 양상에 관하여 특히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당시 막부로서는 ‘명과의 국교 수립, 규슈 남조 토벌, 왜구 금압’이라는 목표를 성취하여야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슈 현지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이가 이마가와 료순이었다. 실제로 그는 규슈 남조 토벌과 왜구 금압에 진력하였고,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마가와 료순이 막부의 위임을 받아 일본 여타 세력들의 고려 통교를 금지하였던 점,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대마도 역시 고려와의 직접 통교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에 대한 이러한 영향력은 료순이 실각하는 1395년(태조4)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논증하였다. 통교 공백기의 대부분 기간이 이마가와 료순의 활동 기간과 겹친다는 점은 위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종래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 수립 과정에 관한 기존 통설은, 조선 측의 경제적 ‘회유책’에 의하여 일본 내 왜구 세력들이 ‘평화적 통교자’로 변모하는 큰 흐름의 일부로서 파악해 왔다. 즉 정치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 통교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대마도가 고려말 이래 30년 동안 조선과의 통교에 나서지 못한 배경에는 이마가와 료순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 과정에 관한 고찰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요인, 특히 해당 시기 대마도 및 이를 둘러싼 일본의 국내외 정세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마가와 료순이 규슈에서 사라진 1396년 이후부터 1400년 전후 시기까지의 한일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조선-대마도 관계를 비롯해, 막부와 의 관계, 오우치씨와의 관계, 대마도 내 정치정세 급변, 한반도 주변에서의 왜구 활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3국 관계의 제반 쟁점을 명확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 이마가와 료순이 군림하던 시기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선과 대마도 간의 통교 관계에 관한 향후 연구에서도 이러한 정치·외교·경제 등 복합적인 시점에서의 고찰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태종실록』)

이승인, 『도은집』 권4 「文」, 「送鄭達可奉使日本詩序」.

신숙주, 『해동제국기』 (신용호 외 주해(2004), 범우사.)

『明太祖實錄』

『百練抄』 (https://khirin-ld.rekihaku.ac.jp/rdf/nmjh_kaken_medInterNationalExcange/E4809)

『太平記』 (長谷川 端 校注・訳(1998), 『太平記(四)』, 小学館.)

『善隣国宝記』 (田中健夫 編(1995), 『善隣国宝記・新訂続善隣国宝記』, 集英社.)

- 姜尙雲(1966), 「麗末鮮初の 韓・日關係史論 -한국과 일본의 今川・大內 兩諸侯와의 關係-」 『國際法學會論叢』 11(1), 15~53쪽.
- 金琪燮(1997),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85~123쪽.
- 金普漢(2001),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少貳冬資의 皮살과 關係해서-」 『日本歷史研究』 13, 57~77쪽.
- 김보한(2012),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대(對)왜인 정책 -평화와 공존을 위한 조선의 선택-」 『일본연구』 18, 267~284쪽.
- 김보한(2014), 「고려・조선의 對일본 외교와 왜구 - 13~15세기 금구 외교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47, 3~34쪽.
- 羅鍾宇(1980), 「高麗 末期의 麗・日 關係-倭寇를 中心으로」 『전북사학』 4, 49~93쪽.
- 羅鍾宇(1994), 「흥건적과 왜구」, 국사편찬위원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0)』, 383~415쪽.
-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2010),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181~201쪽.
- 孫弘烈(1978), 「麗末・鮮初の 對馬島征伐」 『역사와 담론』 6, 111~140쪽.
- 송종호(2019),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 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종호(2022),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96년(태조 5년) 나간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51~297쪽.
- 송종호(2023),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0, 35~78쪽.
- 사에키 고지(佐伯弘次)(2010),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19~48쪽.
- 申基碩(1986), 「韓日通交와 對馬島」 『국제정치논총』 26(1), 115~119쪽.
- 李領(2006),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党) -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24, 111~160쪽.
- 이영(2007),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왜구 -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26, 95~146쪽.
- 이영(2008a),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59~96쪽.
- 이영(2008b), 「고려 말 왜구와 남조 - 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1, 43~88쪽.
- 이영(2010a), 「오호바루(大保原) 전투(1359년)와 왜구 -공민왕 6-8년(1357-59)년의 왜구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1, 113~146쪽.
- 이영(2010b), 「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6, 175~230쪽.
- 이영(2011a),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원저: 李領(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 이영(2011b), 「원명(元明)의 교체와 왜구 -공민왕 15년(1366)의 금왜사절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3, 33~71쪽.
- 이영(2012),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181~212쪽.
- 이영(2013), 「여말-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61~182쪽.
- 이영(2017), 「우왕 3년(1377) 정몽주(鄭夢周) 일본 사행(使行)의 시대적 배경」 『일본역사연구』 46, 97~123쪽.
- 이영(2020a), 「우왕 원년(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 당시의 규슈 정세와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의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60, 363~398쪽.
- 이영(2020b), 「고려 우왕 원(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과 미즈시마의 변(水島の變) -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 『일본역사연구』 52, 31~56쪽.
- 이영(2023), 「우왕 2(1376)년 10월, 왜구 최초의 기병(騎兵) 동원에 관한 고찰 -임파현 전투(9월)와 행안산 전투(10월)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韓日關係史研究』 80, 3~34쪽.
- 이태훈(2021), 「14세기 후반 대일 외교사절로 본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연구』 32, 77~110쪽.
- 조혜란(2022),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적 해명에 등장하는 포도(逋逃)와 고려 말 왜구」 『한국중세사연구』 70, 233~263쪽.

- 陳鍾根(1989), 「朝鮮朝初期의 對日關係 —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석당논총』 15, 327~357쪽.
- 韓文鍾(1995), 「朝鮮前期 對馬島의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25~172쪽.
- 韓文鍾(1996),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研究 — 對馬島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윤희(2014), 「여말선초 피로인 송환에 관한 한 고찰 —<今川了俊의 송환 배경=‘경제적 수익 목적’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본연구』 36, 397~420쪽.
- 荒川良治(1994), 「今川了俊の失脚とその歴史的條件 —大友親世との關係をめぐって—」 『九州史学』 110, 45~63쪽.
- 荒木和憲(2007),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 荒木和憲(2017), 『對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 荒木和憲(2021), 「室町期北部九州政治史の展開と特質」 『日本史研究』 712, 3~25쪽.
-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2010), 『日本の對外關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 伊藤幸司(2018), 「南北朝・室町期、島津氏の「明・朝鮮外交」の実態とは?」, 新名一仁 編, 『中世島津氏研究の最前線』, 洋泉社, 101~118쪽.
- 長 節子(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 長 節子(2002), 「對馬と朝鮮」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1~23쪽.
- 川添昭二(1988), 『今川了俊』, 吉川弘文館(原著 1964).
- 川添昭二(1996), 『對外關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 佐藤進一(1988), 『室町幕府守護制度の研究(下)』, 東京大学出版会.
- 佐藤進一(2005), 『南北朝の動乱』, 中央公論新社(原著 1974).
- 須田牧子(2011),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 関 周一(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関 周一(2012), 『對馬と倭寇』, 高志書院.
- 田中健夫(1961),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 田中健夫(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 田村洋幸(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 中村栄孝(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 新名一仁(2015), 『室町期島津氏領國の政治構造』, 戎光祥出版.
- 堀川康史(2016), 「今川了俊の探題解任と九州情勢」 『史学雑誌』 125(12), 1965~1988쪽.
- 堀川康史(2019), 「今川了俊の京都召還」 『古文書研究』 87, 94~107쪽.
- 本多美穂(1988), 「室町時代における少貳氏の動向 —貞頼・満貞期—」 『九州史学』 91, 27~41쪽.
- 松尾大輝(2021), 「南北朝期宗氏による對馬支配と少貳氏」 『古文書研究』 92, 19~37쪽.
- 松岡久人(2013), 『大内義弘』, 戎光祥出版.
- 村井章介(1988), 『アジアの中の中世日本』, 校倉書房.
- 村井章介(1993), 『中世倭人伝』, 岩波新書(이영 역(2003),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 山口隼正(1989), 『南北朝期九州守護の研究』, 文献出版.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대마도 정치·외교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 요지

한문종(전북대)

1. 논문의 의의

이 논문은 1369년부터 1397년까지 약 30년간 대마도와 고려·조선 사이에 통교관계가 없었던 시기 소위 ‘통교 공백기’가 나타난 배경과 그 양상을 특히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교 공백기’의 개념을 규정한 후 그 시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그리고 고려·조선과 대마도사이에서 통교 공백기가 나타난 배경을 일본의 국내정세와 연결지어 분석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북조의 막부에게는 ‘명과의 국교 수립, 규슈 남조 토벌, 왜구 금압’이라는 3가지 과제가 있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부는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에게 고려와의 통교를 독점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승인하였다. 그 결과 고려-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에 외교적 현안은 이마가와 료순이 직접 고려와 접촉하여 처리하였고, 대마도 소씨는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이 시기에 대마도의 통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고려 말의 왜구의 활동, 대마도의 고려·조선과의 통교를 일본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고려말 조선초 왜구문제, 대마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한 점은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질문 내용

첫째, 제목과 용어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의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함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논문의 제목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만 보면 고려·조선-대마도사이에는 통교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데, 1369년부터 1397년까지 약 30여년간만 통교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조선을 고려말 조선초 정도로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서론에 나온 것처럼 고려·조선과 대마도간의 통교는 1274년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으로 중단된 이후 1398년 통교가 재개되기까지 120년 이상 통교 공백기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1369년부터 1397년 까지를 ‘통교 공백기’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15쪽 ‘고려-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1376~1391)’라는 소제목에 통교 공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제목(1376~1391)과 제목(1369~1397)에 시기가 다른 ‘통교 공백기’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좋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문의 제목을 수정하면 어떨지?

둘째, 1쪽에서 1368년 대마도주 소 츠네시게(宗經茂)(『고려사』에서 崇宗經)의 통교를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원형이었다’하였는데, 통교 관계의 원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2쪽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1376년(우왕2)부터 1395년(태조4)까지의 시기는 통교 공백기 전체 기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기간으로, ‘통교 공백기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는데’, 통교 공백기의 전형적인 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셋째, 8쪽에서 1369년부터 1397년까지 약 30년간의 통교 공백기를 제1기~제3기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을 나누어서 시기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제1기~제3기를 빼고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이전 시기(1369~1375), 이마가와 료순의 대마도 지배 시기 (1376~1395), 이마가와 료순 실각 후 규슈 정세 급변 시기(1396~1397)로 하는 것이 어떨지?

넷째, 기타 각주의 형식 통일, 오자 탈자의 수정

1) 각주의 표기 통일

각주 3)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7월 11일 기묘→『고려사』 세간 권41, 공민왕 17년 7월 11일 기묘. 또는 『고려사』 권41, 세간 권41, 공민왕 17년 7월 11일 기묘. 로 표기(이하 모든 각주의 형식 통일,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우왕 4년 6월)

2) 오타, 탈자의 수정, 기타

3쪽 1368년 왜인이 투화하여 거제·남해현에 정착했던 일,

11쪽 주72) 이영(2020a), 365쪽; 이령(2020b). 12쪽 주78), 주82), 83) 이령(2020b,

15쪽 대마도·이키 등지에서, 16쪽 대마도·이키에

[제2발표]

16세기 후반~17세기 초 新選軍의 설치와 운용

발표: 한성일(해군사관학교)

토론: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16세기 후반~17세기 초 新選軍의 설치와 운용

한성일(해군사관학교)

목 차

I. 서론

II. 신선군의 용례

1. 임진왜란 직전~임진왜란기
2. 임진왜란 직후~17세기 중반

III. 신선군의 창설

1. 창설 시기
2. 설치 배경

IV. 신선군의 운영

1. 사회적 신분
2. 신선군의 충원

V. 결론

I. 서론

16세기 후반~17세기 초 하삼도 지역의 수군진 병력 중에는 ‘신선(新選)’ 혹은 ‘신선 정별갑(新選 定別甲)’이라는 병종이 종종 등장한다. ‘신선’은 용어의 특성상 때로는 ‘새로 선발한 군사’로 해석되기도 했다.¹⁾ 하지만 16~17세기 문집 및 읍지 등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신선은 별도의 병종이었음이 확실하다.²⁾

조선 후기 군사사 및 재정사 연구에서 신선군이 병종으로 언급되었으며, 조선 전기 및 임진왜란기 수군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수군의 전투원 및 중간 계층의 성격을 가졌음이 간략하게 언급되었다.³⁾ 또한 근래 『조선왕조실록사전』에서 신선군을 병종으로 분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선군의 성립 과정 및 운영,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신선군은 16세기 후반 무예를 익힌 사족 혹은 이에 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정예군으로, 삼남 지역의 방비를 위해 창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선군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

1) 노승석이 번역한 『난중일기』의 경우 1592년 2월 11일 “식후출선상食後出船上 신선점고新選點考”라는 구절을 “식사를 한 뒤에 배 위에 나가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고했다”라고 번역하였다(이순신 저, 노승석 역, 『개정판 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2016년, 71쪽);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1583년 외방 무과 응시자들이 충원되었던 ‘신선 정로위新選定虜衛’를 ‘새로 선정한 정로위’라고 기록하고 있다(『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1618년 ‘전라도병영신선가포全羅道兵營新選價布’라는 구절은 ‘전라도 병영에서 새로 뽑은 인원’들의 가포라고 해석하였다(광해군일기[정초본] 126권, 광해 10년, 4월 17일(병오)) 1627년 영장절목에서는 ‘출신무학신선出身武學新選’은 ‘무학 출신의 새로 뽑은 자’로 번역하였다(『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4월 20일(병진)).

2) 『학주집』 권10, 「논병제」, 외방신선; 『승평지』 권1, 군정; 『일선지』 권1, 군총; 『상산지』 권1, 군병.

3)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공수」 『역사와 세계』 39, 2011;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전라좌수군의 전투구성원과 전투 수행」 『이순신연구논총』, 2014; 송병규, 「제4장 군역운영의 전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69호, 2013.

4)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사전』, “신선”(한국학중앙연구원, 2021.03.04., <http://waks.aks.ac.kr>).

기, 특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16세기 후반~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의 군역제 및 수군을 포함한 지방군 운영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선군은 16세기 전반~중반 사족으로 중심으로 한 충군 정책이 16세기 후반에도 이어짐과 동시에 더욱 체계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⁵⁾ 또한 기존 지방군으로서는 정예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삼남 지역에, 정예 지방군이 창설되었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수군을 포함한 지방군의 운영 형태를 보여준다.⁶⁾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는 신선군이 병종임을 알아본 이후, 신선군의 등장 배경 및 창설 과정, III장에서는 신선군이 실제 전투 병력으로 운용된, 16세기 후반~17세기 신선군의 운영 형태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⁷⁾

II. 신선군의 용례

1. 임진왜란 직전~임진왜란기

신선군은 조선 전기 전형적인 군제를 기록한 『경국대전』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15세기~16세기 중반까지의 기록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⁸⁾ 신선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체로 16세기 후반부터이며,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수군진 및 남부 지역의 방어와 관련된 장계 및 일기, 고문서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1. (1592년 2월 11일) 晴 食後出船上 新選點考.(『李忠武公全書』 5권, 「亂中日記」 1, 2월, 11일(임인)).

1-2.(1592년 4월 30일) 본도의 연해 각 고을과 변성에 입방한 **신선·조방**군 등의 정강한 사졸은 모두 육전에 부방하였고, 변진과 잔보에는 병기를 가진 자가 드물며, 단지 수군과 무장이 되지 못한 무리만을 거느려, 그 세가 심히 약하여 방어할 계책이 없습니다.

本道內地沿海各官及邊城入防如**新選助防軍**等精強士卒 咸赴陸戰 邊鎮殘堡 持兵者鮮少 只率水軍徒手之輩 其勢甚弱 他無捍禦之策(『이충무공전서』 2권, 狀啓 1, 赴援慶尙道狀(2)).⁹⁾

5) 16세기 후반 혹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궁술에 재능이 있는[能射] 사족·상층 양인을 정예군으로 동원된 사실, 대규모 무과를 시행 군사를 모집한 사실, 정예군을 수군 파견한 사실 등을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대규모 전쟁을 예감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한 조선 국가가 단순히 기존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고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125~130쪽. ;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 현실』 87호, 2013, 510~513쪽.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158~159쪽.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역사와 세계』 39, 2011, 148~149쪽.)

6) 16세기 후반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298~299쪽;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 현실』 87호, 2013, 510~513쪽;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118~175쪽 ; 김병륜, 「『절제방략』으로 본 남도제승방략의 주요 특징의 형성과정과 ‘4운체제’」 『역사와 실학』 62, 2017, 127~132쪽.

7) 본 연구의 제목은 신선이 군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신선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자료상에는 『반계수록』을 제외하고서는 신선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신선이라고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선이라는 용어로 줄여 부를 예정이다.

8) 『礪溪隨錄』 21권, <兵制>, 諸色軍士.

9) 이 장계는 『임진장초』에 따르면 1592년 4월 30일에 작성되었다. 이하 『이충무공전서』 수록의 장계의 작성 날짜는 『임진장초』의 작성 일자를 따라 표기하겠다.

1-3. (1592년 5월 10일)보성군수 김득광이 어린 여자 1명을 붙잡았는데 ~ 모월 모일 모처에서 왜 모모인을 만나 일시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중략~ 기장에 거주하는 신선新選 김진명의 솔정으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4월 왜적 등이 부산포에 도박하자, 호수 진명은 군령으로 인하여 소인에게 군장을 지우고 이끌고 부산포로 부방하였습니다.

寶城郡守金得光所擒兒女一人~~중략~~推問~~중략~~汝於某月某日某處逢倭某某人 一時被擄~~중략~~以機張居新選金晉明率丁 日不記去四月 倭賊等釜山浦到泊 戶首晉明因軍令 使小人軍裝負持率赴同鎮(『이충무공전서』 2권, <장계> 1, 「옥포파왜병장玉浦破倭兵狀」).

1-4. 『임진장초』 중 사망자

-接戰時~중략~ 逢箭致死 … 蛇渡一船軍官陳武晟 林弘楠 射夫水軍金億壽 陳彥良 新選許福男 助防田光禮 …(『이충무공전서』 2권, <장계> 1, 「唐浦破倭兵狀」).

-臣所騎船土兵水軍金永見, 鮑作今同, 防踏龜船順天射夫新選朴世奎等 逢箭暫傷(『이충무공전서』 2권, <장계> 1, 「부산파왜병장釜山破倭兵狀」).

-接戰時士卒中~ … 鹿島一船興陽新選朴應龜 … 中丸致死 … 防踏一船 … 同鎮二船格軍正兵蔡洽, 水軍梁世卜, 河丁, 射夫新選金烈 … 鹿島二船軍官成吉伯, 新選金德壽…中丸不至重傷(『이충무공전서』 2권, <장계> 1, 「見乃梁破倭兵狀」).

1-5. (1592년 5월) 道內之賊處處雖方大熾 上去京城之賊 不可不決死追擊 右兵使曹大坤處各鎮浦元軍內 一分乙良守其城 一分乙良新選定別甲 并以兵使領率日行三百 馳及巡邊使所到處 合勢功擊事(『征蠻錄』 3권, 「自雲峯還本道啓(5월 일 순찰사 김수)」).

1-6. 『琴易堂集』 자료

-(1594년) 지금 위로는 명을 받든 경대부에서부터 밑으로는 수령까지 모두 군관을 거느리고 있으며, 전후에서 호위합니다. 그 소위 군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평일 신선 정로위, 별시위, 갑사 중 기사를 익힌 사람으로, 농기구를 든 사람[耒耜之民]들 보다 백배는 정예합니다.

今者 上自卿大夫之奉命 下至守令 皆帶軍官 前後導從 其所謂軍官者 皆平日新選定別甲之習於騎射者 比之耒耜之民 百倍精矣(『琴易堂集』 3권, <서>, 「上洪巡察(甲午)」)¹⁰⁾

-(1597~8년?)평일 소위 정예병[精兵]이라고 부르는 신선 정로위와 같은 자들도 사신, 수령의 군관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꾀하고, 관리에서 면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갑사, 기보병 중 모면하려는 사람들은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而平日所謂精兵者, 如新選定虜衛, 不圖入使臣守令之軍官, 則必圖免於官吏 其餘甲士、騎步、兵之謀免者, 亦不知其幾許(『금역당집』 2권, <소차>, 「六條疏」).¹¹⁾

전라좌수사 이순신 일기인 '1-1'에서는 전쟁 직전인 1592년 2월 전라좌수영에서 신선군이 부방했으며, 이순신의 장계인 '1-4'에서는 1592년 첫해 전라좌수군 소속 수군진인 사도, 녹도, 방답 등에 신선이 부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 초 이순신이 '1-2'에서 연해 지역의 邊城에 배치되었던 대부분의 신성·조방이 육전으로 이속되었다는 보고는, 전쟁 전 전라도 연해 지역의 대부분의 수군진 및 연해 요충지에 신선군이 배치되었음을 시사한다.

1592년 5월 경상도 순찰사 김수의 장계에서는 5월 북상하는 일본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신선 정벌갑'이 소집되었음을 보고하여 경상도 지역에도 신선이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순신의 장계인 '1-3'에서는 전쟁 발발 직후 기장에 거주하던 신선이 수군진인 부산진으로 소집된

10) 『금역당집』의 한글 인용문은 고전종합번역db(<https://db.itkc.or.kr>)의 고전 번역서에 수록된, 장재호의 번역문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11) 행장에서는 1597년에 작성한 팔조소八條疏에 이어, 육조소六條疏를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소들이 상술되고 난 이후에 1598년 이후의 행적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의 경우에는 1597~1598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금역당집琴易堂集』 7권, <부록附錄>, 행장行狀).

사실을 고려한다면, 경상도 지역 역시 수군진 및 연해 요충지에 신선군이 배치되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표 1>. 이순진 장계 사상자 중 신선

소속진	지역-이름
사도진蛇渡	(사부) 신선 허복남
녹도진鹿島	홍양신선 박응구
	신선 김덕수
방답진防踏	射夫 신선 김렬
	순천 射夫 신선 박세

*자료출처: 자료 '1-4'

이 밖에도 16세기 중반~후반 충청도 지역 방어에 대해 기록한 육군사관학교 소장 조선 시대 「군사작전계획서」 역시 수군진 및 연해 군현에 신선군이 배치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¹²⁾ 이를 통해 본다면 신선군은 16세기 후반 삼남 지역 연해 요충지 및 수군진에는 신선군이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들에는 병력 동원 과정에서 신선군이 ‘신선’, ‘신선 정로워’, ‘신선 정별갑’ 등의 명칭으로 단편적으로 등장하며, 병종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간략한 편이다. 다만 ‘1-3~4’에서 新選을 직역명으로 표기하고 있어, 신선이 새롭게 편성한 군사라기보다는 군역 혹은 병종의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1-4’에서 신선의 판옥선 내 보직이 전투원인 射夫인 경우가 많으며, ‘1-2’에서는 조방과 함께 ‘精強士卒’로 표현하고 있다. 임진왜란기 양남 지역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던 배용길은 ‘1-6’에서 신선을 精兵 혹은 ‘기사를 익힌 이[習於騎射者]’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단순히 징발된 병력이 아닌 정예군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임진왜란 직후~17세기 중반

임진왜란 직후~17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연대기, 문집, 읍지 등의 자료에서 신선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빈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2-1. (1600년) 본도의 전선은 타도 보다 배나 많아 ~중략~ 연해 전체 21개 군현 내에서 먼저 출신, 군공, **신선**으로 사부를 삼고, 다음으로 수군, 기보병 공천을 선발하여 격군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本道戰船 數倍他道 ~~通共沿海二十一官內 先抽出身軍功 **新選**以爲射夫 次選水軍騎步兵公賤 以充格軍(『백사집白沙集』 5권, <차자>, 「(경자庚子)이도체찰사재전라도차以都體察使在全羅道筭」).

2-2. (1601년) (영남지역) 臣取見本道都巡察使金信元分軍開單 則左兵營所屬入防 出身 軍功 **新選**定別甲 各番通共五百二十五員名 騎步兵正步[保] 通各番共 有一千三百五十二名 右兵營所屬入防 出身軍功**新選**定別甲, 通共五百二十二員名 騎步兵正保通共一千三百七十名 釜山駐筭左兵營虞候所屬入防 通各番七百七十五名 左舟師所屬戰船十隻內入防 通共四百八十九員名 充格騎步水軍正保及土兵海尺 通共四千九百六十二名 右舟師所屬戰船十四隻內入防 通共五百二十二員名 充格以下 共七千七百三十二名 而**出身新選**定別甲則分爲四番 軍功則分爲十二番 格軍則分爲六番 每一番 率以一朔爲限 分配一年十二朔 騎步水各軍 勿論戶首奉足計名分番(『선조실록』 135권, 선조 34년, 3월 18일(병진)).

12) 「군사작전계획서」(육군박물관, 유물번호 087111/000, 이후 「호서방략」으로 축약).

이 문서는 김병륜에 의해 전반적인 분석이 이뤄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병륜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 문서를 분석하였다(김병륜, 「절제방략과 제승방략」 『학예지』 19, 2012, 123, 132쪽 ; 「131. 수군절목」 『국방일보』, 2010.10.06, <https://kookbang.dema.mil.kr> ; 「132. 호서방략」 『국방일보』, 2010.10.13., <https://kookbang.dema.mil.kr>), 「133. 호서방략 지지편」 『국방일보』, 2010.10.20.(<https://kookbang.dema.mil.kr>).

2-3. 『南坡相國集』 자료

-(1615년) 而兩湖出身則安在其家 獨本道出身年年赴防 勞逸懸殊叱分不喻 統制使既兼三道則統營所管舟師射夫 尤不可專責於此道 自今以後 右道戰船射夫 則以全羅忠清兩道出身新選抄送 左道戰船射夫則本道出身輪回間年抄送 使之番休

(『南坡相國文集』 5권, <書狀>, 「慶尙監司時書狀(을묘乙卯)」).

-何謂射夫鮮少 各船射夫 皆以出身軍功新選定別甲等抄送 而元數不多 一船所定之軍 僅至十五名矣 十五名之軍 分列於左右 疏略太甚(『남파상국문집』 5권, <서장>, 「경상감사시서장(을묘)」).

2-4. (1637년) 但射夫則新選取才之後 仍爲分番於各浦 則甚爲便當云 臣未知朝家規例如何 敢此仰稟 而具宏 時在兵曹 且諳其處事情 使之議處 何如? 上曰, 允(『승정원일기』 61책, 인조 15년, 10월 5일(기해)).

2-5. 신해년(1671년) 병조에서 상정한 절목을 구해서 상고해 보니, 수조시에 격군 및 포수는 모두 미포를 주어 고립하였습니다. 사수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수는 신선으로 충정하였고, 신선은 보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取考辛亥年兵曹詳定節目 則水操時 格軍砲手皆給米布雇立爲白乎矣 射手則不爲舉論爲白有去乙 詰問其由 則射手以新選充定 自有其保是如爲白卧乎所(『범허정집』 5권, 서계, 「湖西巡撫使書啓」).

3-1. 신선 정로위(新選定虜衛)를 설치한 것은 다른 제색군과 잡색군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족士族이나 업무業武로서 군사로 정해지지 않은 자를 충정하여 병영과 수영에 돌아가며 입번하게 하여 수하(手下)의 친병(親兵)을 삼도록 한 것은, 그 의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각도의 주장(主將)들이 문지(門地)를 따지지도 않고 재예(才藝)를 시험해 보지도 않으며 심지어 이미 정군(正軍)에 충정된 자를 공공연히 값을 받고서 올려 차임하니, 신선(新選)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대열에 있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군안(軍案)이 날로 줄어드는 것이 실로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도의 신선을 법전에 의하여 충정하고, 군안에 올려져 이미 군인인 자를 신선에 옮겨 차임하는 일을 일절 금지하여, 혼잡스럽게 되고 정군이 감축되는 폐단을 없게 하소서.

新選定虜衛之設 非他諸色雜軍之比, 必以士族業武不當定軍者充之 輪回入番於兵水營以爲手下之親兵者 其意有在 近來各道主將 不問門地 不較才藝至以已定正軍者 公然受價 任意升差 非但應屬新選者 羞與爲列 軍案之日縮 實由於此 今後各道新選 依法典充定 切勿以案付已定軍役者 移差新選 俾無混雜減縮之弊 答曰 依啓 水軍 定虜衛等事 徐當發落(『광해군일기[중초본]』 36권, 광해 8년, 5월 6일(을해)).

3-2. 외방의 신선은 양역 중 최고로 폐해가 없는 것이다. (신선은) 대개 양반 자제나 무고한 평민으로 (충원하여), (병·수)영에 입번하게 하여 항상 사어를 익히게 하였다. 절도사 역시 감히 천대하지 않아 군포를 거두고 (군역을 면제시키 주는) 일이 없었다. 전쟁 이후에 일이 고식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아져, (신선군의 운영을) 절도사에게 일임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신선 역시 군포를 거두게 되었지만, 단지 원하는 자에게만 바치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후에 점차 이러한 일이 퍼지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입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군포를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양반 자제들은, 대개 이를 부끄럽게 여겨 싫어 피하였으며, 입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전)세미를 병수사에게 획급하였으니, 군포를 거두고 군역을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신선은 예전의 예대로 입번하여 훈련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예하게 훈련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신선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外方新選 良役之最無害者 故平時新選 皆是兩班子枝及無故平民 而入番營下 常以射御爲事 節度使亦不敢賤待 而未嘗有收布之事 亂後政多姑息 一任節度使之所爲 新選亦爲收布 而只

捧於自願者矣 厥後漸至滋蔓 至于今日 則無一人立番者 而沒數收布 故兩班子枝 皆以爲羞厭 避 不願入屬矣 今以稅米 劃給兵水使 而勿許放軍收布 則新選亦依舊例 使之入番訓習 必有精鍊之效 而願屬者多矣(『학주집』 10권, <논병제 구조>, 외방신선).

4-1. 총의위 13인, 군공 121명[세주: 군공을 의용대라고 칭한다], 총찬위 5명, 정로위 88명, 별시위 31명, 갑사 13명[세주: 정로위, 별시위, 갑사를 칭하여 신선이라고 한다].

忠義衛十三人軍功一百二十一名[주: 軍功稱義勇隊], 忠贊衛 五名, 定虜衛 八十八名, 別侍衛 三十一名, 甲士十三名[세주: 定別甲稱新選](『승평지昇平志』 상, 군정軍丁).

4-2. 정로위 3명 솔(정) 6명, 서울 (상변) 별시위 7명 솔(정) 14명, 신선 정(로위)·별(시위) 40명 솔(정) 80명, 갑사 90명 보(인) 360명, 기병 475명 보(인) 1,025명, 보병 775명 보(인) 1,555명.

定虜衛三名 率六名 京別七名 率十四名 新選定別四十名 率八十名 甲士九十名 保三百六十名 騎兵四百七十五名 保一千二十五名 步兵七百七十五名 保一千五百五十五名(『상산지商山誌』 권1, 군병軍兵).

4-3. 평시 군적에 속한 (군사는), 내금위 5명[세주: 현존 없음], 정로위 16명[세주: 현존 없음], 신선 정로위 35명, 현존 9호, 신선 별시위 40호 현존 5호, 서울 (상변) 갑사 50호[주: 현존 없음], 기병 278호, 현존 128호, 보병 324호, 현존 215호, 팽배·대졸 2호[주: 현존 없음]

平時案付 內禁衛 五名[세주: 時無] 定虜衛 十六名[세주: 時無] 新選定虜衛 三十五名 時存九戶 新選別侍衛 四十戶 時 存五戶 京甲士 五十戶[세주: 時無] 騎兵 二百七十八戶 時存一百二十八戶 步兵 三百二十四戶 時存二百十五戶 彭排隊卒 二戶[주: 時無](『일선지一善誌』 권 1, 군총軍摠).

4-4. 騎兵二十六戶 并其保九十四名者 時存只十六名 新選四十戶 並其率八十二名者 時存只十四名 主鎮水軍戶保並四十九名 而見存者五名 各浦水軍戶保並六十三名 而見存者三名 漕軍戶保并四十一名 而見存者七名 兼司僕十人 存者一人 京定戶保并八名 別侍衛戶保並三名 俱無一名之存(『경전선생문집苟全先生文集』 4권, <소疏>, 「봉화진폐소奉化陳弊疏 대헌감류수암 진작代縣監柳修巖祔作」).

‘2-1~6’의 자료에서는 임진왜란 직후~17세 수군진에 신선 혹은 신선 정별갑이 배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자료들 중 대부분이 신선은 수군 내에서 전투원인 射夫의 역할을 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전후 수군 재건을 담당한 삼도도체찰사 이항복이 보고한 ‘2-1’에서는 수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 양인 출신 군인인 정병[騎步兵]과 수군, 공천을 일괄적으로 격군으로 편성하는 반면, 出身과 軍功, 新選은 射夫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수군 및 정병 등 수군진에 편성된 일반 군사들 중 상당수가 사부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17세기 초 실록의 기록인 ‘3-1’와 17세기 중반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추정되는 김홍욱의 『학주집』에 실린 ‘3-2’는 신선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신선이 사족 혹은 이에 준하는 이들로 구성된 부대로, 무예를 익인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예병인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예병으로서의 신선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읍지 및 문집에 등장한 임진왜란 이전~17세기 전까지의 군액 자료는 신선군이 별

개의 병종이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신선의 성립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보여준다. 17세기 전반에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승평지』의 군액에서는, 당시 정로위·별시위·갑사를 신선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려준다(4-1). 이를 통해 본다면, 앞서 등장한 신선 정별갑은, 신선 정로위·별시위·갑사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선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선 정로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지만(1-6), 이 세 신선군을 모두 통틀어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4-1’의 기록은 모든 정로위·별시위·갑사가 신선이라 불리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4-2~4’ 자료는 서울로 상번하는 정로위[京定]나 별시위[京別], 갑사[京甲士]와 신선 정로위, 별시위, 갑사가 별도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선의 액수가 기존 군사들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선은 중앙의 정예군과는 다른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된 병종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Ⅲ. 신선군의 창설

1. 창설 시기

우리는 ‘Ⅱ장’을 통해 16세기 후반~17세기 초 군제 및 전쟁과 관련된 자료에 등장하는 신선新選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새롭게 선발한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선新選 정로위·별시위·갑사’를 의미하는 용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이 기존 정병과는 달리 취재를 통해 선발하는 정예군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신선의 병종으로서의 성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신선의 성립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선 병종으로 설립된 시기는 사료상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기에,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17세기 후반 반계는 훈련도감 및 경포수, 속오군, 어영군 등과 함께 임진왜란 이후에 성립된 신군제로 분류하였다.¹³⁾ 다만 앞의 사료에서 본 바와 같이 신선군은 이미 16세기 후반인 선조대의 기록들에서, 특히 전쟁 전에 이미 등장한 것이 확인되며, 반계와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김홍옥은 신선이 임진왜란 이전에 창설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4-4).

따라서 반계의 이러한 평가는 임진왜란 이후 지방군에서 신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임란 이후에 창설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는 없다. 다만 반계가 신선을 신군제로 분류한 것은 신선군의 창설 시점이 모호하여,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병종의 설치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대기 자료에서 신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1583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1583년 2월 16일) 지난번 병조판서 이이가 ~중략~ 또한 외방에서 무과에 응시한 거자들을 시험이 마치고 신선 정로위로 정하여 요해처에 분방시키려 하였다. 이에 벌열자제들이 괴롭

13) 『礪溪隨錄』 21권, <兵制>, 諸色軍士, “本國兵制 在大典者 是謂舊制 壬辰倭亂以後 有所添設 謂之新制…而新制 則唯存都監 京兵即京砲手 馬隊及束伍軍 公私賤編伍者 外近來雜設 如御營軍精抄軍 新選軍 別砲手 別隊 武學射夫 各廳牙兵 各廳募軍 各廳保奴之類…”.

조선 후기 새로운 병종의 창설에 대해서는 차문섭,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재편과 수도방위」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년 ;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한국사』 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이겸주, 「지방군제의 개편」 『한국사』 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참조.

게 여겨 과거에 응시하기를 기뻐하지 않아 무사의 수가 적어졌기에 이를 혁파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서 동지 신익이 상소하여 상이 편의를 묘당에 논의하도록 하였다.¹⁴⁾

이 시기는 니탕개의 난을 전후한 급박한 시기로, 니탕개의 난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급박하게 군사를 동원하던 시기였다.¹⁵⁾ 병조판서였던 이이는 무과에 응시했던 이들 중 지방[外方]에 거주하는 이들을 ‘신선 정로위’로 충원, 정예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1583년을 전후한 시기 율곡이 ‘신선 정로위’라는 병종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선의 설치 시기는 이보다 더 소급된다. 이는 유희춘이 전라감사로 임명되었던 1571년을 전후한 시기, 전라도 연해 지역 수군진[鎭浦]에는 ‘신·구 정로위·별시위[新舊定別]’가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1571년?) 각 진포에 분방하는 신구 정로위 별시위 및 원방 수·륙군 등을 유향소에서 쓰는 방식으로 법식을 삼아 준방 여부를 상고하고, 또한 모포 모번 모군 원수 기명을 도목진정과 같이 기록하여 3월 이후 준방 공문을 모아 기다릴 것¹⁶⁾

육군사관학교에 소장된 조선시대 고문서로, 「군사작전계획서」 명명된 자료에서는 신선의 설치 시기가 적어도 1555년 이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등장한다. 이 문서는 완결된 문건이 아닌, 낱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6세기 중반~후반 충청도 지역의 군사 방어체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¹⁷⁾

이 문서의 낱장 중 하나는 충청수영의 군비와 함께, 소속된 병종과 정원에 대해 적고 있다.

입방 수군 4번을 통틀어 원액 3,760명 그 중 능사인 600명이고 4번으로 나눈다. 조방군인 정로위 20명 갑사 26명 별시위 2명 (武科)향시 응시명단에 오른 이 127명 모두 179명. 4번으로 나누어 10일마다 교대한다(細注: 지금은 신선 정로위, 별시위 합쳐 110명을 2번으로 나눈다).¹⁸⁾

위 문서의 본문에서는 충청수영 소속 군선으로 판옥선과 맹선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¹⁹⁾ 또한 16세기 전반~중반 수군진 병력으로 무예를 익힌 한량을 동원한 것과 유사하게, 무과응시자들을

14) 先是 兵曹判書李珥建白, 以上番及入防軍士疲弊, 今爲除卜馬, 且外方武科赴舉舉子, 過試從卽定新選定虜衛, 使之分防要害處. 以此閱閱子弟苦之, 不肯赴舉, 武士乏小, 革罷之. 至是, 同知申翌上疏, 上命更議于廟堂(『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본 보고서 중 자료의 국역 인용문은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국역 『조선왕조실록』 페이지(<https://sillok.history.go.kr>)의 본문을 인용, 부정확한 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지면상 앞으로는 별도의 인용표시를 생략하겠다.

15)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신유(11일).

16) 『眉巖日記』 6책, 節目, “各鎭浦分防新舊定別及元防水陸軍等乙 式爲留鄉所所用良 檢督准防與否相考 次以某浦某番某軍元數幾名 是如都目進呈爲旡 三月以後准防公文聚待”.

17) 「군사작전계획서」(육군박물관, 유물번호 087111/000).

이 문서는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자인 김병륜에 의해 전반적인 분석이 이뤄진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병륜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 문서를 분석하였다(김병륜, 「절제방략과 제승방략」 『학예지』 19, 2012, 123, 132쪽, 「131. 수군절목」 『국방일보』, 2010.10.06,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01006/1/ATCE_CTGR_0020050172/view.do; 「132. 호서방략」 『국방일보』, 2010.10.13.,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01013/1/ATCE_CTGR_0020050172/view.do, 「133. 호서방략 지지편」 『국방일보』, 2010.10.20.(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01020/1/ATCE_CTGR_0020050172/view.do).

18) 「군사작전계획서」, “入防水軍通四番元額三千七百六十名 其中能射人六百名分四番 助防軍定虜衛二十四 甲士二十六 別侍衛二 鄉試都目付人 一白二十七 合一白七十九名 以分四番十日相遞〇((細注: 今則新選定虜衛別侍衛并一白十名以分二番))”

19) 김병륜은 위 문서가 기본적으로 16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16세기 중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문서(1588, 1559, 1574년 등)들이 섞여 있기에 시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김병륜, 앞의 논문, 2012, 132쪽).

수군진 병력으로 조방시키고 있다.²⁰⁾ 따라서 위 문서의 본문은 16세기 중반, 특히 판옥선이 건조되기 시작한 1550년대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또한 위의 위 문서에서는 조방군에 대한 기록 뒤에 작은 글씨[細注]는 이후 조방군으로 중앙군인 정로위·별시위·갑사와 무과 응시자들을 활용하던 방식이, 신선 정로위·별시위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알려준다. 물론 이 문서에 나오는 ‘지금[今]’이 언제인지, 그리고 기존 조방군이 신선으로 바뀐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위 문서에 따르면 신선의 성립 시키는 적어도 1550년대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다.

1574년 발급된 내금위 奮順副尉 李繼鄭을 秉節校尉에 임명하는 고신에서는 “기(사)년 ○(월) 받은 사(仕)와 기(사)년 8월 받은 별사를 합쳐 초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¹⁾ 여기에 적힌 메모가 적힌 시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사년인 1569년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 자료에 따르면 신선 정로위의 설치 시기가 1569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1563년을 전후한 시기 왜변에 대응하여 하삼도 지역에서 能射者를 대대적으로 초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앞서 언급한 조방군과 신선을 편성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하삼도 지역의 작전 계획인 「절제방략」에서는 이렇게 초발된 능사자 비상시에 전투에 동원되었지만, 이들을 별도의 병종으로 편성된 것 같지는 않다.²²⁾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자면, 신선은 대체로 1560년대를 전후한 시기 탄생, 16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설치 배경

1) 하삼도 지역의 정예군 설치의 필요성

16세기 후반~17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신선의 특징으로 주목되는 점은, 신선이 조선의 남부 연해지역 지역, 특히 하삼도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된 정예병이라는 점이다.

16세기 후반~임진왜란 시기 신선과 관련된 자료 중 1583년 율곡이 신선 정로위를 확충하려는 사건은, 니탕개의 난이라는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병종이 평안도·함경도와 같은 조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²³⁾

다만 이 기사에 경우 신선의 총정 대상이 외방의 무과 응시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어느 지역에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시기 북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정예병의 징발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병력 중 하삼도 지역의 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²⁴⁾

조선 전기 양계 지역의 경우, 지역 출신 갑사 등의 정예군이 한양으로 번상하지 않고 지역 방위에 동원되고 있었다. 또한 充補甲士와 같이 정원 외로 선발된 정예군 역시 이 지역의 방위에 동원되고 있었으며, 이는 신선과 같이 정원 외 정예군의 설치의 시원이 된 제도로 추정된다.²⁵⁾ 따라서 1583년 신선 정로위를 확충하는 정책은, 적어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치이거나, 혹은 양

20)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36~138, 144~149쪽.

21) 「1574년 이계정 고신」(해남 영산사 소장,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2023.7.14, <http://hnnkostma.org>), “新選定虜衛時己○仕加己八別加并超”.

22) 『備禦考』 6권, 「節制方略」, 「癸亥年五月分付備邊司事目」, “被抄能射壯健人等乙, 常時約束, 聞變赴敵”.

물론 신선군의 편성과 민간 능사자를 유사시를 대비하여 편성하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23)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24)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1일(신유).

25) 『경국대전』 권4, 「병전」, 留防. 김정웅, 『조선초기 지방군 운영 연구』,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176~204쪽.

계 지방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앞서 본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의 자료에서 신선군의 활동 지역은 삼남 지역, 특히 연해 지역의 수군진과 요충지가 중심이었다. 위 사료 외에도 17세기 초 실록 등에서 신선과 관련되어 등장되는 지역은 하삼도 지역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²⁶⁾

이 밖에도 18세기 후반의 기록이지만, 조선 전역의 군역을 망라한 『양역실총』 및 『부역실총』 등의 자료에서 신선이 역명으로 나오는 지역은 양호에 한정된다. 이는 신선이 병종으로 창설되어 운용한 지역이 삼남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²⁷⁾

16세기 중반~후반 삼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선이 설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선의 설치 배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조선의 남부 지역, 특히 하삼도 지역의 방어 상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 전기 법적으로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 즉 양인으로 분류된 이들은 모두 국역-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군역-군역을 수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며, 실제 군사로 복무를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처지 및 무술 실력(武才)에 따라 복무하는 병종 역시 차이가 있었다.²⁸⁾

무술 실력의 여부에 따라 정규군 병종을 구분하자면, 무술 실력을 시험(取才)하여 선발한 정예군(이후로는 취재군사라고 부르겠다)과, 무술 실력에 상관없이 징발된 일반 군사로 구분할 수 있다. 15세기 중반~후반을 기준으로 할 때, 취재 군사로는 임금의 측근에서 호위 임무를 맡는 군사[禁軍]인 내금위·검사복·우림위, 중앙군으로 수도 한양의 방어 임무를 맡은 별시위·감사 등이 있었다.²⁹⁾ 취재를 거치지 않은 일반 군사의 경우 크게, 육군인 正兵과 水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병은 기병으로 편성된 騎正兵, 보병으로 편성된 步正兵으로 나뉘었다.³⁰⁾

조선 전기 군역을 진 정규군의 경우 복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조정은 무예를 지닌 이들의 정예병 입속을 권장하기 위해, 정예병에 입속한 이들에게 일반 군사 보다 더욱 수월하게 관직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³¹⁾

조선 전기 무예를 익힌 이들은 대부분이 무과나 혹은 정예 병종 입속을 통해 무관직·군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다만 무예를 익히기 위해서는 궁시와 환도, 말과 갑옷·투구 등을 자비로 갓춤과 동시에, 오랜 기간 무예를 수련해야 했다. 따라서 당시 무예를 익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가진 사족 혹은 상층 양인의 비중이 높았으며, 정예군에 입속 한 이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³²⁾

정예군은 선발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앙군으로 수도인 한양을 주된 근무지로 하였다. 이들이 비번(下番)으로 고향에 있을 때에는 지역 군진에 소집되어 방어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에 한정된 일이었다.³³⁾

26) 『선조실록』 158권, 선조 36년, 1월 14일(신미) ; 『선조실록』 217권, 선조 40년 10월 7일(병인) ; 『광해군일기(중초본)』 44권, 광해 10년, 4월 17일(병오) ; 『승정원일기』 27책, 인조 7년, 7월 23일(병오).

27) 『양역실총』(규장각, 奎貴 12210). 『관서양역실총關西良役實摠』(규장각, 奎 17262). 『부역실총賦役實總』(규장각, 奎貴 252).

위 자료에서, 하삼도 지역 중 경상도의 경우만이 신선 직역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8) 송양섭, 「국역과 군역의 편성원리」 『한국군사사』 6, 경인문화사, 2012, 434~447쪽 참조.

29) 노영구, 「중앙군의 편성과 운영 방식」 『한국군사사』 6, 경인문화사, 2012, 250~263쪽 참조.

30) 노영구, 「진관체제의 확립과 운용」 『한국군사사』 6, 경인문화사, 2012, 383~386 참조 ; 이민웅, 「수군의 체제 정비와 제도적 발전」 『한국군사사』 6, 경인문화사, 2012, 394~397쪽 참조.

31) 주 27) 참조 ; 『경국대전』 4권, <병전>, 번차도목.

32)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21~127쪽 참조.

33) 김정웅, 앞의 박사학위 논문, 2022, 157쪽.

조선 전기 가장 방어가 긴요했던 평안도·함경도 지역의 경우, 갑사 등 정예병의 한양 상변을 면제하여 지역 방어에 동원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더하여 충보갑사充補甲士라 불리는 정원 외 갑사를 설치, 무재 있는 이들의 입속을 유도하여, 이들을 지역 방어에 동원하였다.³⁴⁾

하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지역에서 상시 방어 업무를 맡던 정규군은, 수군진에 복무하던 수군과 지역 육군진[留防鎭]에 복무하는 유방 정병이 대부분이었다.³⁵⁾

다만 16세기 양인층의 몰락과 분화가 심화되고, 사족 및 상층 양인의 군역 기피가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반 정규군인 정병 및 수군의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천역으로 여겨진 수군의 경우 무재를 익힌 이들의 이탈이 심각했기에 전투력의 약화는 타군보다 더욱 심각했다. 15세기 후반~16세기 왜변이 급증하는 시기 수군 내 전투원인 射官·射夫의 전투력 약화 및 숫자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³⁶⁾

16세기 정병·수군 등 일반군의 전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병종과 인력은, 취재군사와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 무예를 익히던 이들이었다. 16세기 외침이 급증하고 일반 정규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는,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정예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赴防·別赴防·助防이라는 명칭으로 중앙군이 한양에서의 상변을 면제받거나, 혹은 한번 중에 소집되어 변경 지역에 파견되는 일들이 점차 관행이 되었으며, 적의 대규모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중앙군이 편성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³⁷⁾

다만 하삼도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정예군이 한양으로 변상하였으며, 이들이 수도 방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앙군 소속 정예군을 장기간 남부 지역에 파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³⁸⁾

2) 한량과 신선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세기 전반~중반 남부 지역에서는 한가지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소위 한량으로 불리는 무과를 준비하는 상층 양인 혹은 사족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16세기 전반에 걸쳐 정예군을 확보하기 위해 군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 않았던 사족 및 상층 양인을 군사로 충원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한량을 군사로 동원하는 방식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군사로 동원된 한량은 특정 병종에 속하여 군사로 동원된 것이 아닌, 무과 응시인 혹은 한량이라는 명칭을 띠고 군사로 동원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³⁹⁾ 실제로 16세기 전반인 삼포왜란(1510년) 및 달랑왜변(1522), 16세기 중반인 사랑진왜변(1544) 및 을묘왜변(1555) 당시 한량 혹은 무과 응시자들이 병력으로 편성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⁴⁰⁾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6세기 후반~17세기 자료에서 언급되는 신선의 성격이 앞서 정예군으로 충원된 한량 및 무과 응시자들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34) 노영구, 「중앙군의 임무와 기능」 『한국군사사』 6, 경인문화사, 2012, 241~245쪽 참조.

35) 주 34) 참조.

36)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20~138쪽.

37) 김성우, 앞의 책, 2001, 212~215쪽 참조 ;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38~149쪽 참조.

38)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5일(기미)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9일(계해), 12권, 중종 5년 8월 14일(정유).

39) 한량 및 무과 급제자의 군사 동원에 대해서는 한성일, 앞의 논문, 2011년, 142~149쪽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40) 한성일, 앞의 논문, 2011, 146~148쪽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8일(신해), 19권, 명종 10년 10월 21일(임오).

신선군은 무예를 익힌 정예군이었으며, 입속 대상으로는 무과 응시자, 사족이나 상층 양인으로 언급되고 있다.⁴¹⁾ 따라서 신선군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16세기 전반~중반 남부 지역에서 정예병으로 징발된 한량 혹은 무과 응시자들의 배경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 후반 충청수영의 조방군이 중앙군인 정로위·별시위·갑사와 무과 응시자에서 신선 정로위·별시위로 변경된 사례를 고려한다면, 한량·무과 응시자를 군사로 징발하던 관행이 신선의 창설로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⁴²⁾

16세기 후반 조정에서 기존 한량 및 무과 응시자를 신선군으로 편성한 것은, 무재를 지닌 사족 및 상층 양인을 군사로 징발하는 정책을 정비함과 동시에, 군사 동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16세기 전반~중반, 무재 있는 한량 및 무과 응시자는 위기시에 임시적으로 징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군사로 선발된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군역을 수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삼포왜란 이후 한동안 군사로 징발된 한량은 旅外正兵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이후에도 이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⁴³⁾

1544년 판중추부사 송흠은 상소에서 연해 지역에 조방으로 배정된 한량들이 군사 업무[軍旅]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선상에도 익숙하지 않았기에, 군사로 동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이는 당시 군사로 동원된 한량 혹은 무과 응시자들을 군부대로 편성하는 조치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전쟁 이후의 기록이지만, 전쟁 전 신선이 병·수사의 직속 병력으로 병·수영에 입번하여 항상 무예를 익혔다는 평가(3-1~2)는, 기존 한량들이 정규 병력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존 한량을 이용한 임시적인 동원체제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무과 응시자들을 일괄적으로 신선으로 편성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고려한다면, 신선군의 설치에 기존 무재가 있는 사족을 충군하는 정책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⁴⁵⁾

IV. 신선군의 성격과 충원

1. 16세기 후반 신선군의 사회적 신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선 정부가 신선군을 별로 편성한 이유는, 16세기 군역체제가 급격히 해체되는 상황에서, 남부 지역에서 전투에 동원할 수 있는 정예군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조선의 사회 구조 및 군사 구조의 특성상, 정예병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족 혹은 상층 양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궁술 및 기마 궁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값비싼 군장과 말을 구입하고,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장기간 무예 수련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다.⁴⁶⁾

앞서 본 바와 같이 16세기 후반~17세기 초 여러 기록에서는 신선의 입속 대상을 사족 혹은 이

41)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 자료 ‘3-1~2’.

42) 주 18).

43) 『중종실록』 19권, 중종 9년 1월 11일(을해).

44)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8일(갑진).

45)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 『광해군일기(중초본)』 56권, 광해 13년, 6월 23일(계사).

46) 주 36 참조.

에 준하는 이들로 표현했다. 또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신선에 입속했던 이들 중 가문의 내력이 확인되는 이들의 경우, 많은 수가 사족이나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1574년 고신을 통해 1569년 신선 정로위로 활동했음이 밝혀지는 이계정은⁴⁷⁾ 임진왜란 당시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했던 무관으로, 그의 부·조부 역시 현관을 역임한 것이 확인된다.⁴⁸⁾ 또한 임진왜란 영덕 지역에 거주하던 신선으로 확인된 申弘濟는 그의 조부가 울산군수, 증조부가 생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또한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⁴⁹⁾

이 밖에도 1605(선조 38년)에 간행된 『宣武原從功臣錄券』에는 신선新選의 직역을 가진 이들은 약 20명이 발견된다.⁵⁰⁾ 다만 이들 중 가계 및 신분을 알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권응추와 노운발의 경우 문집 등의 자료를 통해 비교적 신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權應鍾는 본관은 安東이며, 자는 汝平, 호는 智山으로 임진왜란 때 종형인 권응수와 함께 종군하였다. 그가 권응수의 친척이며, 호와 자가 있는 것을 보아 사족임을 알 수 있다.⁵¹⁾

盧潤發에 대한 기록은 『호남절의록』에 등장한다. 그의 자는 時華, 본관은 光山이고, 그의 아버지 노대방은 선전관을 지냈다고 기록되었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때 이충무공의 막하에 있었으며, 군공으로 주부 벼슬을 제수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선전관을 역임했으며 諱字가 있는 것을 볼 때, 사족 혹은 이에 준하는 집안임을 알 수 있다.⁵²⁾

<표 2>. 1609년 울산호적대장 신선 직역 가진 이들과 그들의 조상 직역

순번	직역	부	조	증조
1	소모민 신선	정병	유학	정병
2	소모민 신선	정병	?	?
3	소모민 신선	보인	정병	정병
4	소모민 신선	수군	수군	수군
5	소모민 신선	정병	정병	정병
6	소모민 신선	정병	정병	참봉
7	소모민 신선	정병	정병	정병
8	신선 별시위	별시위	어모장군	정로위
9	신선	정병	유학	유학

1606년 『울산부호적대장』의 경우, 호주만을 대상으로 할 때, 울산에 원래 거주하던 2명과, 소모진 소속 소모민 7명을 찾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 직후 신선의 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다만 이들 중 수군과 같이 비교적 낮은 직역을 가진 인물을 조상으로 둔 사람은 4번 단 1명이었지만, 전쟁 이전과 같이 눈에 띄는 사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는 울산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향도 있겠지만, 전쟁 중 잦은 대규모 무과의 시행으로 일반 군역자나 상민이 대거 신선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³⁾

조상의 직역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병이었으며,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儒學이었다.⁵⁴⁾ 이들 중 사족 혹은 상층민과 연결된다고 추정되는 사례는, 조상 중 유학 및 참봉이 있는

47) 「1574년 이계정 고신」.

48) 이계정, 『디지털해남문화대전』(2023.2.26, <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

49) 『영남적고록』 상. 만력 17년. 임진. 4월, 18일; 신홍제, 『디지털영덕문화대전』(2023.7.17, <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

50) 『선무원종공신록권』(규장각, 古 4651-13)

51) 『화산지』 2권, 忠勳(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2-62).

52) 『호남절의록』 3책, 「參佐諸公事實」, 노운발.

53) 『선조실록』 158권, 선조 36년, 1월 14일(신미).

순번 1·6·9, 중앙 정예병종인 별시위·정로위 및 어모장군과 같은 군직이 있는 순번 8이다.

조상이 정병 및 보인으로 이뤄진 순번 3·5·7의 경우에는 이들의 신분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16세기 정병의 경우 신분이 상층 양인 및 사족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들의 신분이 상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⁵⁵⁾

2. 신선군의 총원

1) 신선군의 군액

신선군이 배치될 남부 연해 지역에는 많은 수의 수군진과 요충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 병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신선군은 상당한 숫자를 확보해야 했다.

16세기 후반 삼남 지역에 배정된 신선군의 총 숫자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16세기 중·후반 충청도 지역의 사정을 나타내는 고문서에서는 충청수영에 총 110명이 2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수영에 배정된 병력이 3,000여명이고, 능사인이 6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수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⁵⁶⁾ 다만 수군 정원이 700명인 서천포의 경우에는 신선 정로위와 별시위가 총 310명이 배치되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⁵⁷⁾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경상좌도병수영근무수첩』라 불리는 자료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직전 경상도 지역의 군액이라 추정되는 군액이 기재되어 있다.

一 慶尙道 騎一萬七百四十四 步兵 一萬一千七百六十…
左道元軍 一萬一千五百內 留(防)…
左道分防 五千四百二(十?)
右道移防 三千二百七十九內(지워짐)
上番 二千八百三內(細注: 騎一千四百七(十? 지워짐) 步 一千三百三十二)
上番各色定別甲 五百四十一
左道元助防定別甲 二百二十三
新選二千五十內(細注: 左一千二百十六 右八百三十四⁵⁸⁾)

이 자료에 따르면 경상좌도에 소속된 서울로 상병하는 정로위·별시위·갑사가 총 541명, 좌도 지역에 조방으로 배정된 정로위·별시위·갑사가 총 223명, 신선이 2,050명에 달했다. 이는 좌도 정병의 원액이 1,100여명인 것과 비교할 때에, 1/5에 달하는 숫자였다.

17세기 초 작성되어 전쟁 전 선산부의 군액을 기록한 『일선읍지』의 경우에는, 전쟁 전 서울로 번상하는 정로위 16명과 갑사 50호, 신선 정로위 35명, 신선 별시위 40호로, 신선군의 경우 총 70명에 달했다. 이는 선산부의 정병이 기병과 보병을 합쳐 602명으로, 비교하면 전체의 1/8 가

54) 『광해일년기유물산호적대장』(규장각, 奎 14986)

55) 한성일,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역사와 경계』 111, 2019, 177~178쪽 참조.

56) 주 18).

57) 「군사작전계획서」, 舒川浦 “水軍元額七百名分二番相遞…助防新選定別并三百十名

58) 『경상좌도병수영근무수첩』(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번호: 71-751).

이 자료는 병영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내용(훈련규칙, 군액, 국기일 공신, 공문서 서식, 의전 등)이 적혀있다. 이 책의 이면지는 1600년대 작성된 문서이기에, 이 문서의 작성 연대는 적어도 17세기 초로 추정된다. 다만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의 경우,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는 16세기 사정을 반영하는 병종들을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액 역시 15세기 후반 결정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이 자료의 군액 수치를 전쟁 직전의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량에 달하는 숫자였다(4-3).

위 자료에서 경상도 지역 정병의 원액이 약 2만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상도 전체를 통틀어 적어도 3~4천 가량의 신선군이 정비된 셈이었다. 충청도 및 전라도 지역에도 신선군이 설치된 것을 고려한다면, 전쟁 전 하삼도 지역에는 많게는 1만에 가까운 신선군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2) 신선군의 충원

전쟁 전 경상도의 경우 수군과 육군 및 여타 군사를 합친 군액이 94,000여명에 이르고, 삼도의 군액 총 군액이 약 20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⁵⁹⁾ 전체 군액 중 신선군의 비율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전체 인구 중 사족 혹은 그에 준하는 인구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천에 달하는 신선군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강도 높은 사족 및 유력자에 대한 충군 정책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신선군이 설치 되기 직전이라 추정되는 1560년대, 왜변에 대응하기 위해, 하삼도 등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궁술에 능한[能射者]이를 남김 없이 색출하여 편성하는 조치가 취해졌다.⁶⁰⁾ 당시의 이러한 정책은 ‘새롭게 법령을 세워 궁술을 익힌 이들을 뽑는 조치’라 평가되었다.⁶¹⁾

신선군의 설치에 이러한 무재를 지닌 이들을 편성하는 조치를 한층 더 강화시킨 조치라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588년 병조판서였던 율곡이 외방의 무과 응시자를 신선 정로위로 편성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무과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한 이들 중 역이 없는 이들을 신선 정로위로 일괄 편성한 조치로 추정된다. 이는 ‘무과향시도목’을 통해 일괄적으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였다.⁶²⁾ 율곡의 이러한 정책은 당대 반발로 인해 철회되었지만, 1621년 충청도의 사례를 볼 때 무과에 낙방한 이들을 신선으로 충원하는 조치가 종종 취해진 것으로 추정된다.⁶³⁾

임진왜란 당시 정부가 사족 및 상층 양인의 武學 입속을 권장하기 위해, 이에 입속하는 이들에게는 군보 및 신선의 역을 면제시켜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신선군의 역이 당대 양반 혹은 그에 준하는 이들에게 빈번하게 부과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⁶⁴⁾

다만 16세기 사족 및 이에 준하는 이들의 피역이 극심했으며,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자산을 통해 정부 및 지방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⁶⁵⁾ 따라서 이들은 군사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들의 반발을 약화시킬 유인책을 제시해야 했다.

15세기 양계 지역의 充補甲士·預差甲士 제도를 고려한다면, 신선으로 충정된 이들은 정로위·별시위 등 군직을 얻기 수월한 정예군으로 임명될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보·예차갑사는 방어가 긴요한 양계 지역에 설치된 정원 외의 갑사로, 무재를 가진 이들의 정예병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이들은 기존 갑사 내에 정원이 발생 할 때에 연차

59) 『西厓集』 9권, 書, 「與劉總兵(紕)書」.

60) 『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7월 병술(10일); 『備禦考』 6권, 「節制方略」, 「癸亥年五月分到付備邊司事目」, “能射及壯健人 無遺抄擇 物故老病者 充補其缺 一名是乃 充補不多 一名是乃 隱匿不出 或詐托老病脫漏則 色吏濟州全家 守令重治”.

61) 『泉谷手筆』, 「軍政」, “而今者新立科條 凡可操弓者類抄而勸懲之”.

62)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2월 16일(기해).

63) 『광해군일기[중초본]』 56권, 광해 13년, 6월 23일(계사).

64) 『臚錄類抄』 8권(규장각 소장, 奎15080), 「甲辰四月二十日」, “武學之設初 欲獎勸武才有 如校生之鄉學使之屬名 習業則得免軍保與新選之役 其意實非偶然”.

65) 김성우, 앞의 책, 2001, 123~125쪽.

및 무예 실력에 따라 정규 갑사로 승차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⁶⁶⁾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사정을 반영한다고 추정되는 읍지의 군액에서, 한양으로 번상하는 ‘정로위·별시위·갑사’와 ‘신선 정로위·별시위·갑사’가 별도로 등장하고 있다(4-2~4). 또한 신선군과 충보·예차의 경우와 같이 지역 차원에서 선발된 정원 외 정예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⁶⁷⁾ 신선과 충보갑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⁸⁾

또한 신선군은 정예군이라는 전략적인 필요성과, 신분적인 특징으로 인해 군 복무에 있어, 일반 정규군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김홍욱의 『학주집』에서는 신선으로 충원된 병력들이 군영에 입번하여 무예를 익히는 것이 주업무라고 설명, 잡역에 동원되는 일반 군사들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3-2).

다만 이러한 복무 특성은 신선군이 타군에 비하여 복무가 쉬운 군역[戡役]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후 신선군에게 군포를 거두어 지방재정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와 맞물려, 무예 실력이 없고 신분적으로 비교적 열악한 이들이 다수 신선에 편입되게 되었다.⁶⁹⁾ 이러한 상황은 기존 신선으로 편입된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발, 신선역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선군의 위상은 점차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3-1~2).

V. 결론

15세기 후반~16세기 수군 및 육군에서 무재를 익힌 이들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전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6세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급증함에 따라 연해, 특히 하삼도 지역의 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선군이 탄생하였다.

조선 전기 중앙과 함경도·평안도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정예군이 지방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16세기 전반~중반 남부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중앙군이 별부방의 형식으로 파견되거나, 무예를 익힌 한량 및 무과 응시자들이 임시적으로 병력으로 편성되어 방어에 동원되었다. 신선군은 방어에 임시적으로 동원되던 한량 및 무과응시자들을 정규군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16세기 후반 신선군은 경상도 지역에만 하더라도 수천 가량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군진을 비롯한 연해 요충지에 배치되었으며, 수군진에서는 사부와 같은 주요 전투원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기간 기존 수군이 괴멸되고, 육군 및 연해민으로 수군 병력들이 대거 보충되는 상황에서, 수군의 전투원으로써 신선의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 무예와 군사제도의 특성상 궁술과 같은 익히기 힘든 무예를 익히고, 스스로 값비싼 군장을 갖추 수 있는 계층은 사족 혹은 상층 양인으로 제한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들을 군사로 편성하기 위해 하삼도 지역의 무과 응시자들을 일괄적으로 신선군으로 편성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역에서만 수천에 달하는 신선군이 편성된 것을 고려한다면, 사족 및 무재

66)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5일(무술), 17권, 세조 5년 7월 17일(병신) ; 『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2일(기사).

67) 향후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선이 정로위·별시위·갑사 등으로 직접 승진한 사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68) 다만 신선군의 전체 정원이 중앙 정예군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중앙군 정예군으로 승차할 수 있는 기회와 이들이 복무를 통해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69) 신선군의 선발은 16세기 전반 정원 외[額外] 정로위·별시위의 취재와 같이 각 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병마절도사 및 감사의 재량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윤10월 경진(12일) ; 『목재일기』 5권, 임자(1552년), 10월 계유(24일) ; 『초간일기』, 을축(1589년), 3월 9일).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조선후기 사모속으로 분류되는 이유로 추정된다.

를 익힌 이들에 대한 충군 정책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 사족들은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이미 군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의 저항으로 충군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이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가 좋음과 동시에 복무를 통한 관직 획득에 유리한 중앙 취재군사에 준하는 병종인 신선을 창설하여, 무재를 익힌 사족 혹은 이에 준한 이들을 입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신선군은 중앙군인 정로위·별시위·갑사의 정원 외라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양계지역의 정예병을 늘리기 위해 창설된 충보갑사의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초 수군진 병력의 구성은 일반 양인 및 하층민으로 구성된 수군 및 정병, 공노비 등을 중심으로 한 格軍과, 비교적 중·상층 양인인 출신·군공 및 신선, 혹은 후에는 武學 및 有廳軍士 등으로 구성된 사부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적 구성은 이후 수군진의 병력이 사부와 방군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15세기 수군 내에 비교적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射官과 일반민 혹은 하층민에 가까운 格軍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상과 유사했다. 어찌보면 16세기 후반~17세기의 구조는 궁술을 익힌 상층 계층에게 천역으로 인식되는 수군역을 부과하여 편입시키는 대신, 신선 등의 별도의 직역을 주어 실질적으로 수군으로 활용하는 기만적 측면이 있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사족 혹은 무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군사 기술인 궁술이 수군 조직에 필요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신분 상승이라는 유인으로 육성하는 조선의 국역체제가 존속되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연대기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기 및 장계

『미암일기』, 『난중일기』, 『정만록』, 『영남적고록』 상(성균관대학교 존경각, 稀 B09O-0017 v.1), 『임진장초』, 『계본등록』(규장각, 古4255-17), 『등록유초』(규장각, 奎 15080)

○문집

『금역당집』, 『남파상국문집』, 『반계수록』, 『백사집』, 『이충무공전서』, 『학주집』

○기타사료

『경상좌도병수영근무수첩』(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수장번호 71-751), 「군사작전계획서」(육군박물관, 유물번호 087111/000), 『광해일년기유물산호적대장』(규장각, 奎 14986), 『선무공신록 권』(규장각, 古 4651-13), 『관서양역실총』(규장각, 奎 12210), 『부역실총』(규장각, 奎貴 252), 『양역실총』(규장각, 奎貴 12210), 「이계정 고신(만력 2년 6월 초4일)」(영산사 소장, 호남

권 한국학자료센터, <http://hnkostma.org>)

○읍지

『상산지』(규장각, 古4790-31-v.1-2) , 『승평지』(고려대학교 도서관, 대학원 B10 A92), 『일선지』(규장각: 奎15484-v.1-3)

○논문 및 도서

김성우, 「16 세기 중반 국가의 군역 동원방식과 성주 사족층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집, 2001

_____,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_____, 「임진왜란 시기 관군은 왜 약했는가?」 『역사와 현실』 87호, 2013

김병륜, 「절제방략과 제승방략」 『학예지』 19, 2012,

_____, 「『절제방략』으로 본 남도제승방략의 주요 특징의 형성과정과 ‘4운체제’」 『역사와 실학』 62, 2017

김정웅, 『조선초기 지방군 운영 연구』,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송병규, 「군역운영의 전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69호, 2013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육군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6, 경인문화사, 2012

윤용출, 「임진왜란 시기 군역제의 동요와 개편」 『부대사학』 13, 1989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한성일,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공수」 『역사와 세계』 39, 2011

○인터넷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원db(<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3-CKD-1240001>)

_____, 『디지털해남문화대전』 (<http://haenam.grandculture.net/haenam/toc/GC07300630>)

_____,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http://hnkostma.org>)

16세기 후반~17세기 초 新選軍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토론문

金康植(한국해양대)

이 논문은 조선 중기에 새로운 兵種으로서 나타난 新選軍에 주목하여 그의 설치와 운용을 밝히기 위해 시도된 글이다. 이런 점에서 거의 고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조선 군제사 분야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가 있음을 제기해 준 좋은 사례연구이다. 특히 신선군에 대한 다양한 사료를 발굴하여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논문의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다만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몇 가지 측면을 장에 따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신선군이라는 병종의 규정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2장 신선군의 용례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기적으로 임진왜란 직전~임진왜란기, 임진왜란 직후~17세기 중반으로 구분하여 용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신선군의 창설과 운영에서도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 특히 새로운 병종에 주목한 연구의 경우 무엇보다도 용례를 시기적으로 구별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신선군의 경우 別新選, 新選定虜衛, 新選價布, 新選木, 新選軍錢, 新選番錢 등이다. 아울러 관련 자전을 통해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단국대 한국한자어사전에는 『礪溪隱錄』, 『萬機要覽』 자료 소개). 아울러 2장 부분은 사례를 내용이나 소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사전』에 따르면 “신선은 군대에 편성되지 않은 외방의 士族이나 業武를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親兵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新選定虜衛에서 유래하였다. 하지만 도내의 부유하고 권세 있는 무리가 身役을 면하려고 신선에 들어오고, 병영·수영은 番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布 등을 받음으로써 신선은 재정을 확보하는 군대로 변질되었다. 신선이라는 말은 새로 뽑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선군을 의미하는 신선과 구별이 필요하다. 신선은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신선군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조선 중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조선 후기의 자료를 이용하면 신선군의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더러 있다.

다음으로 신선군의 창설 문제에서는 창설 시기와 설치 배경을 다루고 있다. 신선군은 왜구의 활동이 빈번하던 시기인 156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창설되어 16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시기에 주목하여 설치 배경은 하삼도에 정예군이 필요한 시점에 閑良과 무과 응시자를 정규군으로 선발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크게 본다면 군역제의 폐단으로 制勝方略體制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방어를 위한 군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겨났다는 불가피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즉 신선군의 창설 배경을 조선 중기의 군역자원 조달이라는 점과 연계되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선군의 운영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신선군의 충원을 다루고 있다. 임진왜란 전후에 신선군에 入屬하는 경우는 사족과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이었으며, 신선군은 중앙군인 정로위, 별시위, 갑사의 정원 외라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또 당시 신선군의 군액은 하삼도에 1만 명 정도 추정되며, 신선군은 정예군으로 일반군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軍布를 거두면서 지방재정으로 활용되면서 신분적으로 낮은 자들이 편입되게 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서 당시 신선군의 하삼도 군액이 1만이라면, 다른 병종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신선군은 16세기 후반~17세기의 군사 편성에서 弓術을 익힌 상층 계층에게 賤役으로 인식되는 수군역을 부과하여 편입시키는 대신, 신선 등의 별도의 직역을 주어 실질적으로 수군으로 활용하는 기만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본래 이 연구가 시도하고자 했던 신선군의 창설과 운영을 통해서 신선군의 실상과 변화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게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신선군은 육군과 수군 모두에 있던 병종인가, 군역의 납포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접근이 아쉽다. 아울러 신선군은 지방군의 병종에 射夫가 없는 경우에만 편성되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다.

<제2부 연구 발표>

사회: 양흥숙(부산대학교)

[제3발표]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발표: 이수열(한국해양대)

토론: 신동규(동아대학교)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¹⁾

이수열(한국해양대)

차례

1. 1639년의 에도 성(江戸城)
2. 동아시아해역의 16세기
 - ① 은 시대의 개막
 - ② 해금-조공체제의 재편
3.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 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도쿠가와 막부
 - ② 초기의 히라도 상관
 - ③ 해적에서 상인으로
4. 그 뒤의 이야기

1. 1639년의 에도 성(江戸城)

1639년 4월 20일 도쿠가와 막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인 평정소(評定所)에서 일본의 향후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 측 참가자를 보면 당시 막부 정치를 총괄하던 대로(大老)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이하 각로(閣老)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현지 무역 사정에 밝은 히라도(平戸)의 봉행(奉行)도 배석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쪽에서는 히라도 상관장 프랑수아 카롱(Francois Caron)이 참석했다. 카롱이 참석한 데에는 그가 그해 2월에 막 상관장이 된 이유도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일본에 체재한 경험과 유창한 일본어 능력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양측 사이에는 카롱이 그리거나 준비한 갖가지 세계지도와 해도가 놓여 있었는데, 일본 측 참가자들은 해도의 정확성에 감탄했다. 회의는 주로 사카이가 묻고 카롱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카이는 네덜란드의 일본 내항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방해할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카롱은 네덜란드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스페인을 압도하고 있다며 그 한 예로 네덜란드가 고아를 봉쇄했다고 과장되게 대답했다.

이어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처럼 일본에 생사, 견직물, 약종 등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카롱은 이에 대해 중국과의 교역이 가능해진 네덜란드의 무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포르투갈을 추방하면 중국 선도 지금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사카이는 마지막으로 만약 일본이 직접 배를 파견할 경우 포르투갈이 주인선(朱印船)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카롱은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한 지도와 해도를 사용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타이완 이북의 중국 연안에서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중국 당국이 예전부터 일본인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상륙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선은 중국 연안을 통과해 인도차이나 반도의 각지로

1) 이 글은 휴고 그로티우스 지음, 정문수·이수열 옮김, 『자유해: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선인, 2023)에 해설 논문으로 수록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포르투갈은 자신들이 추방을 당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인선을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이었다. 카롱의 진술을 들은 사카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의 봉사를 받을 수 있는 한 일본선을 국외로 도항시킬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일을 기회를 보아 숙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쇼군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략 두 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를 끝내고 대기실에 머물고 있던 카롱은 15분 뒤 숙소로 돌아가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성을 나왔다.²⁾

평정소의 회의에서 일본 측의 관심은 네덜란드가 과연 포르투갈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점에 집중되었다. 1571년 이래 지속되고 있던 포르투갈의 마카오-나가사키 무역은 일본산 은과 중국 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사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역이었는데, 그것은 당시 동아시아해역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무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무역과 포교를 일체화시킨 포르투갈의 크리스트교 선교 활동은 일본의 통일권력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비쳐졌고, 실제로 도쿠가와 막부는 1637년에 일어난 시마바라(島原)의 난을 안정기에 접어든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기리시탄(切支丹, 吉利支丹) 세력의 반란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비록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당 세력을 일소했다고는 해도 포르투갈의 무역이 히데요시의 비호 아래 시작되었고 또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익 집단이 관여하고 있는 점도 중국 무역 독점을 노리는 도쿠가와 막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이에 막부는 주인선 파견이 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고 국내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대신하는 존재로 네덜란드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다. 1639년의 에도 성의 회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일본의 권력자들 앞에서 행한 일종의 '기업설명회'와 같은 것이었다.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도쿠가와 막부 제3대 쇼군 이에미쓰(家光)는 1639년 7월 5일자 봉서(奉書)를 통해 포르투갈인의 내항 금지, 내항한 외국선의 나가사키 회항, 그리고 연안 경비 체제 구축을 명령했다. 70여 년간 계속된 포르투갈의 마카오-나가사키 무역은 막을 내리고, 나가사키에는 중국선과 네덜란드선만이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 곧이어 네덜란드는 히라도 상관을 철거하고 1641년부터 나가사키에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인공 섬 데지마(出島)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을 뒤를 쫓아 아시아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네덜란드가 일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부터였다. 로테르담의 상사가 파견한 선단 중 하나였던 리프더(Liefde) 호가 분고(豊後, 현재의 오이타 현)에 표착한 것이 1600년, 그 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박 2척이 나가사키에 입항한 후 히라도로 회항해 최종적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주인장(朱印狀)을 받게 되는 것이 1609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무역허가서를 받고서도 네덜란드의 교역 활동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7세기 초 히라도 상관이 무역 거점이라기보다 군사기지로써 의의가 더 컸다는 요인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네덜란드가 일본에 들여올 상품을 구입하는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해상에게 선금을 주고 상품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현지 사정에 어두운 네덜란드인들은 사기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남은 방법은 동아시아해역을 오가는 중국선이나 포르투갈선을 나포하여 그 포획물을 들여오는 것이었는데, 그로 인해 네덜란드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히라도 상관이 무역 기능을 발휘하고 네덜란드인이 '해적'에서 '상인'으로 변하는 데는 1620년대 타이완 상관의 설치가 전기가 되었다.

그랬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도쿠가와 막부의 결단으로 바타비아-타이완-나가사키를 축으로 하는 아시아해역의 교역 라인을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네덜란드에게 포르투갈의 추방은 일본의 자발적인 주인선 무역 철수에 이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소멸을 의미했다. 이제 남은 경쟁자는 중국인 해상뿐이었다. 추방 소식을 전해 듣고 바타비아에서 축하연이 벌어졌다는 후일담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진출의 역사에서 1639년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로티우스가 『자유해』를 출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렇다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교역이 그 뒤 만범순풍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명청교체의 과정 속에서 타이완 상관을 상실했고, 일본 무역도 날이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永積洋子, 『近世初期の外交』, 創文社, 1990, 83-86쪽.

나가사키를 거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무역이 네덜란드 본국의 ‘황금의 17세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관해서는 주경철의 일련의 작품³⁾을 통해 많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소략하게 서술된 경향이 있는 동아시아해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네덜란드가 아시아에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의 동아시아해역 상황을 개관한 뒤, 1639년 바타비아-타이완-나가사키 라인을 구축하기까지의 역사 과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뒤의 전개에 대해 서술한다.

2. 동아시아해역의 16세기⁴⁾

① 은 시대의 개막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했을 무렵 동아시아해역에서는 16세기 이래의 ‘상업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16세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상업-군사집단으로서의 근세 국가는 해역을 주름잡던 해상 세력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동아시아해역은 다시 ‘국가의 바다’로 회귀해갔다.

상업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명조의 해금-조공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조공질서란 문화의 중심인 중국과 문화가 열등한 주변 국가 사이를 상하관계 또는 군신관계에 빚대어 서열화하는 광역 질서로, 중화와 외夷(外夷)를 구별하는 주자학 이념에 근거하고 있었다. 여기에 해금정책을 조합한 해금-조공체제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민간인의 해외 무역(互市)을 금지하고 조공국과 명조와의 국영 무역(貢市)만을 인정하는 외교·경제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그때까지 이동과 통상으로 연결되어 있던 광역적 네트워크로서의 유라시아세계에서 중국 중심의 ‘닫힌 세계’를 분리시키는 중국 역사상 특이한 제도였다. 또 모든 무역을 공시로 한정하는 일은 당시 중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무역 욕구에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해금-조공체제는 시대가 흐를수록 내부적 모순에 의해 점차 붕괴되어 갔는데, 마침 일본열도에서 산출되기 시작한 대량의 은이 여기에 박차를 가했다.

하카타(博多) 상인 가미야 주테이(神屋壽禎)가 이와미(石見) 은 광산을 발견한 것은 1526년의 일이었다. 이후 1533년 조선에서 연은분리법(灰吹法)이 도입되면서 일본의 은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본 은이 관 무역품으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로, 그 양은 1538년 5,040냥, 1542년에는 80,000냥에 이를 정도였다. 그 사이 조선의 은 가격은 8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서울과 각 지역에서는 마치 면포를 사고팔듯 은을 거래했다고 한다. 일본 은의 대량 유입은 밀무역 폭증을 가져왔고, 은 유출 금지를 통해 대명 밀무역 근절을 추구했던 조선의 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⁵⁾ 그때까지 동아시아 바다의 변방에 머물고 있던 소국 일본이 세계 무역의 초점이 된 이유는 오롯이 이 은에 기인하고 있었다.

일본 은은 아시아해역의 물자와 사람의 흐름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동아시아해역에서는 인도, 동남아시아의 물산과 중국산 견직물, 도자기 등이 복건(福建)의 월항(月港)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남북 간 교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간혹 일본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건명선(遣明船)이 있었지만 일본의 주된 무역 루트 또한 한반도를 통한 남북 간 교역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은 남북 간 교역에 더해 동서 간의 흐름을 본격화시켰다. 1540년부터 조선 연안에 출현하기 시작한 황당선(荒唐船)은 그러한 사람과 물자의 동서 간 이동이 낳은 현상 중 하나였다. 당시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이유가 강남

3) 주경철, 『네덜란드: 튜립의 땅, 모든 자유가 당연한 나라』, 산치럼, 2002 ;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등.

4) 이 장은 이수열, 「16세기 동아시아해역의 군수물자 유통: 일본열도와 왜구」,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의 일부를 가져와 수정, 가필한 것이다.

5) 일본 은의 조선 유입에 관해서는 구도영,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혼돈의 동아시아, 예외의 나라 조선의 대명무역』, 태학사, 2018.

(江南)지역의 상품경제 발전, 변경 지대의 ‘상업 붐’ 등으로 인해 중국 국내 은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은 시대의 개막은 지구 뒤편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1566년부터 실용화된 수은 아말감법으로 포토시 은 광의 은 생산량이 급증했다. 스페인이 아시아 무역의 거점으로 마닐라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571년의 일이었다. 그 뒤 은은 마치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근대의 사자(使者)’처럼 세계를 순환하며 각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갔다. 16세기에 들어 다시 창궐한 왜구는 지구적 차원의 은 순환과 일본열도의 은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생겨나 성장해간 밀무역 집단 가운데 하나였다.

1543년 포르투갈 세력이 중국인 밀무역상과 함께 규슈(九州) 남단의 섬 다네가시마(種子島)에 도착해 조총을 전한 것은 비약적인 은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일본열도 서부 지역이 동아시아해역의 주요 무역 거점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규슈 전역에는 중국선, 포르투갈선 등이 본격적으로 입항했고, 쌍서(雙嶼) 함락 뒤 거점을 일본으로 옮긴 중국인 밀무역상에 의해 당인정(唐人町)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후일 일본으로 끌려간 강항(姜沆)이 “당선(唐船)과 유구(琉球)·남만(南灣)·여송(呂宋) 등지의 상선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 히젠(肥前)이나, “저자 거리는 거의 반이 중국 사람들이요, 당선(唐船)·밀선(密船)이 설 새 없이 들락거리며 묵는다”⁶⁾고 묘사한 사쓰마(薩摩)의 풍경은 은으로 들끓는 규슈의 항구와 당인정의 모습을 전해주는 증언이다.

포르투갈 세력이 처음 아시아해역에 진출한 것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15세기 말, 16세기 초였다. 1510년 고아를 점령한 포르투갈은 다음해 말라카를 정복함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의 중국 진출은 둔문(屯門)해전(1521-1522)의 발발로 실패하게 된다. 중국과의 합법 무역이 불가능해진 포르투갈은 그 뒤 중국인 밀무역 세력과 연대하여 쌍서로 진출했다. 복건 출신의 등료(鄧獠)가 포르투갈인을 유인하여 쌍서에 밀무역 시장을 연 것이 1526년, 허(許) 씨 형제가 그들을 말라카에서 불러들여 교역하기 시작한 것이 1540년의 일이었다. 얼마 뒤 일본에 조총을 전하는 포르투갈선에 동승하고, 고토(五島)열도와 히라도에 밀무역 거점을 구축하게 되는 왕직(王直)이 광동(廣東)에서 거선을 만들어 초석, 유황, 생사, 면 등의 금수품을 일본, 시암, 동남아시아 등지에 내다판 것도 1540년의 일이었다.

이처럼 은 시대의 개막은 동아시아해역의 물류와 인류를 크게 바꿔놓았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인 밀무역 상인, 왜구 세력, 포르투갈인 등이 있었다. 황당선 보고에 보이는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기도 하고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한 이상한 복장의 사람”⁷⁾들은 당시 동아시아해역을 오가던 밀무역 선박의 다민족 구성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② 해금-조공체제의 재편

왕직은 16세기 동아시아해역의 상업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유타야, 말라카, 다네가시마, 히라도, 하카타, 광동, 쌍서 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전역에 걸쳐 밀무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거래하는 상품도 향신료, 견직물, 생사, 면, 도자기와 같은 민간 수요품에서 유황, 초석, 철, 납과 같은 군수물자, 그리고 서구식 화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왕직이 밀무역에 가담한지 5,6년 만에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법을 어기고 이루어지는 밀무역은 당시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비즈니스였다. 특히 일본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국(戰國)시대 하 일본에서 군수품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복건이나 절강(浙江)의 중국인들도 이 밀무역에 가담했다. 16세기 왜구가 ‘일본인(眞倭) 3할, 중국인(從倭) 7할’ 혹은 ‘화이동체(華夷同體)’라고 이야기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간인의 해외 무역을 금지하는 명조의 입장에서 보면 밀무역은 국법을 어긴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1548년 명은 당시 동아시아해역 최대의 밀무역 센터로 기능하고 있던 쌍서를 공격했다. 이 작전

6) 이을호, 『국역 간양록』, 한국학술정보, 2015, 87-88쪽.

7)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1544) 7월 5일 임인.

으로 밀무역 세력은 생명을 잃거나 근거지를 옮겨야 했다. 왕직은 일시적으로 명조와 협력하여 쌍서에서 다른 세력을 쫓아내고 해상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지만, 얼마 안 가 명군이 열항(烈港)을 공격함으로써 왕직과 명의 밀월관계는 끝나게 된다. 상황을 피해 고토열도를 거쳐 히라도로 피신한 왕직은 이후 전열을 가다듬어 중국 연안을 공격했다. 가정대왜구(嘉靖大倭寇)의 시작이다.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늘어난 뒤 규슈 지역 일대에 당인정이 만들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쌍서 함락은 여기에 박차를 가해 일본 동부 지역에도 중국인 거류지가 생겨날 정도였다. 당시 일본 전역에 당인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것이 지역 권력의 영역 발전과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왕직이 머물렀던 히라도도 그 중 하나였는데, 당선(唐船, 중국선과 포르투갈선) 입항 후 히라도는 중국과 남만(南蠻,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상품이 넘쳐나고 전국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어 마치 ‘서쪽의 교토’와 같았다고 한다.

시마즈(島津) 씨, 오우치(大内) 씨, 오토모(大友) 씨와 같은 다이묘들도 밀무역 세력을 끌어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인이나 포르투갈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왜구선을 파견하여 획득한 물자를 일본 국내 시장에 내다팔아 이익을 챙겼다. 그 중에서도 중국산 생사와 일본 은의 교환은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역이었다. 또 전쟁 중이던 일본에서는 군수품 수요도 높았다. 서구식 화포, 총탄 제조에 필요한 납, 병사의 옷이나 돛에 사용되는 면포, 그리고 화약의 원료가 되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초석은 매우 고가에 거래되는 상품들이었다. 당시 다이묘들 가운데는 크리스티교에 입신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또한 포르투갈 세력을 유인하여 중국 상품이나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왕직이 히라도에서 왕처럼 생활하며 300명이 탈 수 있는 대선과 2,0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는, 쓰시마(對馬)가 조선에 준 정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영역 발전과 전쟁 수행을 위해 왜구 물자를 필요로 했던 일본의 지역 다이묘들과 쌍서 함락 후 그것을 대체할만한 근거지를 찾던 밀무역 세력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상업의 시대 하에서 기능부전에 빠지게 된 명조의 해금-조공체제는 1557년 포르투갈의 마카오 거주를 허락한 것을 시작으로 서서히 완화되어갔다. 1560년대 말에는 중국인 해상의 동남아시아 도항이 허락되고, 1571년이 되면 몽골과의 조공무역도 재개되었다. 1571년에는 포르투갈의 마카오-나가사키 무역과 스페인의 마닐라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조는 은 공급처를 기존의 일본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서서히 대체해갔다. 홍성화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명은 “관리하기 무척 어려운 일본인(왜구) 세력의 파트너로 역시 귀찮은 존재인 포르투갈을 선택·배치함으로써 해외 교섭으로 인한 모순과 알력을 본토로부터 분리”⁸⁾시킨 것이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국교 없는 교역 관계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를 평정함으로써 통일정권의 무역 독점 정책이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 1588년에 발표된 해적금지령은 그때까지 독자적으로 행동해온 해적들을 수군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중국-규슈-나가사키-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오사카·교토 간의 물자 수송을 안정화하여 통일정권 주도의 물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태어나 전국 내전 속에서 성장해간 16세기 일본열도의 왜구 세력은 해역 질서의 변화와 통일정권의 성립으로 점차 그 존재 기반을 잃어갔다.

16세기 동아시아해역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무역 욕구가 팽배해 있었다. 그 요인으로는 중국 강남 지역의 제조업 발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아시아해역 진출, 세계적 차원의 은 순환(여기에는 중국의 은 수요 확대와 일본의 은 생산량 폭증이 함께 포함된다), 내전 하 일본열도의 중국 상품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직과 같은 해상 세력이 등장했는데, 정성공(鄭成功)은 그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었다.

동아시아해역의 상업의 시대는 명의 쇠락과 여진의 대두,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의 성립, 조선의 지배구조 재편 등으로 종언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간 정권은 16세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국제 상업을 이용해 거대한 부와 권력을 이룬 상업-군사집단으로서의 근세 국가가 바로 그것인데, 청조와 일본의 통일정권은 그 대표적인 세력이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중앙

8) 홍성화, 「16-17세기 포르투갈의 對동아시아 무역의 성쇠: 마카오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05, 2017.

정부는 해금과 쇄국 정책을 통해 다시금 바다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해역은 16세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3.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도쿠가와 막부

네덜란드의 아시아 진출은 유럽에서 포르투갈·스페인과의 대항관계를 그대로 옮겨오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펠리페 2세의 종교 탄압을 계기로 시작된 양 진영의 대립은 1581년 네덜란드 공화국 의회가 스페인 국왕의 폐위를 결의하고 이에 맞서 스페인이 오라녜 공 빌렘 1세를 암살하는 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네덜란드가 정식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였지만, 16세기가 끝나갈 무렵 북부 7개 주의 위트레흐트 동맹을 모태로 하는 네덜란드 공화국은 사실상의 독립국가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부에서는 여전히 스페인-합스부르크가의 지배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대립은 아시아해역에서도 재현되었다.

1595년 코르넬리스 데 호우트만(Cornelis de Houtman)이 이끄는 4척의 선박이 암스테르담을 출발한 것이 네덜란드에 의한 최초의 아시아 항해였다. 이 항해는 오랜 시간과 많은 희생을 수반했지만, 자신감을 얻은 네덜란드는 이후 1602년까지 포르투갈을 능가하는 숫자의 배를 아시아로 보냈다. 직접 배를 파견하기 이전 네덜란드의 아시아 무역은 포르투갈을 통해 입수한 아시아 산물을 되파는 형태였다. 네덜란드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전통적인 발틱 무역이었고, 아시아 무역은 중개무역으로 족했다.⁹⁾ 하지만 1580년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병합함으로써 상황은 변했다.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선의 리스본 기항을 금지하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해역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심은 이러한 유럽의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철저하게 지난 100년 간 지속된 포르투갈의 독점과 무역 거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아시아에 진출했다. 1602년에 설립된 연합동인도회사가 조약 체결, 교전권, 요새 구축과 같은 국가에 준하는 권력을 갖고 출발하게 된 이유도 포르투갈 세력 타파가 당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온 최초의 네덜란드선이 1600년 분고에 표착한 리프더 호였다는 사실은 이미 이야기했다. 이 배는 2년 전 로테르담의 한 상사가 동양무역을 위해 파견한 5척의 선단 가운데 하나로, 마젤란해협과 태평양을 통과하면서 큰 손상을 입은 채 일본에 도착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리프더 호 관계자와 회견을 요구했고, 곧이어 항해장 윌리엄 애덤스(William Adams)와 항해사 얀 요스텐(Jan Joosten)이 오사카로 가서 이에야스와 만났다. 회견에서 이에야스는 내항 이유와 유럽 사정에 관해 질문했고, 양인은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스페인·포르투갈의 대립 등에 관해 진언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에야스의 비호 아래 일본에 남아 외교 및 무역에 관한 조언가로서 활동했다. 얀 요스텐은 주인선 무역에 관여했고, 윌리엄 애덤스는 미우라 안진(三浦按針)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갖고 에도 근처에 영지를 받아 생활했다.

그 뒤 동인도회사 선박이 나가사키에 입항하기까지 네덜란드와 일본의 접촉은 없었다. 그 동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중국 교역을 타진하기 위해 1604년 이후 몇 차례 광주(廣州)를 찾았지만 조공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당시 명조는 새롭게 진출한 유럽 세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시아해역에 모습을 드러낸 지 불과 10년 만에 고아와 말라카를 지배하고 해역의 주인행세를 하던 포르투갈의 영향이 컸다.

명조와 포르투갈의 관계는 둔문해전을 거쳐 1552년 포르투갈의 왕실함대가 광주로 가 주변 상황을 진정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렇다고 포르투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마카오 거주도 잠정적으로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향료제도에 진출하면서 포르투

9) 네덜란드의 상업 활동에서 발틱 무역과 아시아 무역이 갖는 위치에 관해서는 주경철, 『네덜란드』, 224-225쪽 ; 주경철, 『대항해시대』, 87쪽.

갈 못지않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도 차이가 없었다. 네덜란드의 교역 요구를 명조가 거절한 데에는 조공관계의 유무 이전에 유럽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접촉이 없었던 일본과의 교섭은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선 2척이 나가사키에 입항함으로써 재개되었다. 이 배들은 말레이반도 동쪽 해안의 파타니를 출발하여 포르투갈선을 추적해온 것이었다. 그 후 히라도로 회항한 네덜란드인들은 영주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의 알선으로 동진하여 스푸(駿府, 현재의 시즈오카 현)에서 이에야스와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에야스는 네덜란드선이 일본 어디에나 도항할 수 있는 권리와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인장을 교부했다. 최고 권력자의 허가를 받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곧바로 히라도에 상관을 설립하고 약스 스펙스(Jacques Specx)를 상관장에 임명했다.

이에야스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그리고 얼마 뒤 영국 동인도회사가 일본에 상관을 열기로 했을 때, 그 후보지로 에도에서 가까운 우라가(浦賀, 지금의 가나가와 현 요코쓰카 시 주변)를 권유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거리나 제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히라도로 결정되었는데, 이에야스도 그런 이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야스의 우라가에 대한 집착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었다. 1598년 법령을 어기고 포교활동을 계속한 프란시스코 회 선교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에야스는 죽음을 각오한 상대에게 의외로 마닐라의 필리핀장 관에게 루손을 출발해 멕시코로 가는 스페인선의 우라가 기항을 알선해줄 것을 의뢰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리프터 호도 결국 우라가까지 회항한 뒤 배의 수명을 다하고 해체되었다. 스페인의 마닐라무역에 우라가를 개입시키려는 이에야스의 노력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종래의 연구는 이러한 이에야스의 외교를 통상입국 구상에 입각한 경제외교의 문맥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도쿠가와 막부가 처한 국내 정치 상황을 경시한 표면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이에야스가 추구한 최대의 정치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이었다.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승리하여 에도에 막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당 세력은 분열되었을 뿐 온존한 상태였다. 그들은 또 히데요시 이래의 관계를 이용하여 포르투갈의 생사 무역에도 여전히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이때 우라가는 나가사키를 대체하지는 못해도 해외 무역의 서국(西國) 편중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 부상했던 것이다. 생사가 곧 현금이었던 시절, 생사 무역은 영역의 경제적 발전과 군사력 증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도쿠가와 정권의 향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였다.

1603년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자마자 나가사키 봉행을 교체하고 이듬해 포르투갈의 생사 무역에 독점구매(絲割符) 방식을 도입하거나 주인선 제도를 통해 해외 무역 독점을 시도한 것은 모두 히데요시 잔당 세력과 서국 다이묘들의 사적인 무역 활동을 억제하여 그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1600년 전후 이에야스가 네덜란드와 스페인과 접촉하고, 시암, 안남(安南), 캄보디아, 파타니 등에 국서를 보내 주인선 제도 창설을 통고한 데에는, 정권의 대외적 승인과 무역 상대국의 다변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와 막부의 해외 무역 독점을 가져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네덜란드와 도쿠가와 막부의 이해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② 초기의 히라도 상관

정권 기반이 아직 확실히 다져지지 않았던 근세 초기, 무사와 상인의 구분은 없었다. 포르투갈의 생사 교역과 주인선 무역에는 정권과 유착한 상인들은 물론 막부 고관이나 쇼군도 투자(당시의 말로 ‘投銀’ 혹은 ‘拋銀’)하고 있었다. 이에야스와 제2대 쇼군 히데타다(秀忠) 시대의 기록에만 보이는 직명인 買物掛(가이모 노가카리)는 나가사키 봉행이 겸하고 있었는데,¹⁰⁾ 요는 포르투갈이 들여오는 중국 상품을 쇼군이 독점적으로 먼저 구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황제의 생사’(Emperor's silk) 혹은 ‘쇼군의 생사’(公方の生絲)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이유이다. 최고 권력자의 선매 특권과 주인선 제도의 맹아는 히데요시 시대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에야스는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막부 고관들의 투자는 계속되었지만 쇼군이 무역에서 발을 빼고 무사와 상인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은

10) 永積洋子, 『近世初期の外交』, 12쪽.

제3대 쇼군 이에미쓰 시대에 이르러서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무역은 군사력 증강과 정권의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군사적 우위에 섰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다이묘들의 반란에 대비하고 또 교토의 조정과 귀족, 그리고 사사(寺社)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통치자금을 필요로 했다. 막부는 이를 은과 생사 교역을 통해 충당했다. 이에야스가 금으로 환산하여 실로 200만 냥에 달하는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자산가”¹¹⁾였다는 사실은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그러나 진출 초기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도쿠가와 막부의 요구와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당시 히라도 상관이 무역 거점이라기보다 동남아시아해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네덜란드의 군사 행동과 무역 활동을 보조하는 전략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 이는 네덜란드의 아시아 진출이 처음부터 포르투갈 세력을 타파하는 목적을 갖고 출발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상관 설립 초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선의 히라도 입항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종래의 이베리아 세력에 더해 영국 동인도회사와의 충돌도 전개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마닐라를 봉쇄하기 위해 스페인과 교전하고, 향료제도에서 영국 함대와 대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히라도 상관에 기대한 것은 동남아시아해역에 투입할 자본(은)과 전략 물자(조총, 도검, 탄약, 용병)를 조달하는 중개 기지로서의 역할이었다. 여기에는 히라도가 포르투갈선, 중국선, 주인선 등이 모여드는 규슈 서북부에 위치하고, 마카오와 마닐라의 이베리아 세력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점도 작용했다.

초기의 히라도 상관이 무역 이윤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일본에 내다팔 상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네덜란드가 히라도로 들어온 것은 해상에서 나포한 포르투갈선이나 중국선의 약탈품으로, 양도 일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은 동남아시아해역으로 재수출되어 동인도회사의 군사 활동을 위해 전용되었다. 동아시아해역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은, 한마디로 해적 그 자체였다.

네덜란드의 해적 행위는 포르투갈인이나 중국인 해상은 물론 생사 무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던 일본 상인과 막부 고관, 그리고 쇼군의 입장에서조차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는 수차례에 걸친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탈 행위가 끊이지 않자, 1621년 법령을 통해 일본인 용병 및 군수품의 반출 금지와 해적 행위 근절을 통고했다. 막부가 일본인 용병과 군수품의 반출을 금지한 데에는 외국과의 분쟁을 극력 회피하여 정권 안정에 균열을 가져오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동남아시아의 왕권들과는 달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중앙집권을 이룬 막부의 명령 앞에 네덜란드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③ 해적에서 상인으로

동아시아해역에서 이렇다 할 교역 루트를 갖고 있지 못했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일본에 들어올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파타니 상관을 이용했다. 파타니에 온 중국선으로부터 생사를 구입해 여기에 동남아시아산 생사를 섞어 들여오거나, 생사의 양과 품질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주인선의 시암 교역에 편승하여 소목(蘇木), 녹피(鹿皮), 상어가죽, 납 등을 반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라도 상관의 무역은 포르투갈선이나 주인선의 그것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동아시아해역 진출 이후 최대의 과제였던 중국 상품 구입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1622년 12척의 선단을 이끌고 마카오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중국 본토에 거점을 마련하는 데 또다시 실패한 네덜란드는 이번에는 타이완해협의 팽호도(澎湖島)에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이 이를 파괴할 것을 요구했고, 네덜란드는 그곳을 철수해 타이완으로 옮겨갔다. 1624년 네덜란드는 타이완

11) 村上隆, 『金・銀・銅の日本史』, 岩波書店, 2007, 145쪽. 200만 냥은 지금의 가치로 대략 2,000억 엔.

12) 이하, 초기의 히라도 상관에 관해서는 加藤榮一, 『幕藩制國家の形成と外國貿易』, 校倉書房, 1993.

남부에 질란디아(Zeelandia) 성을 만들어 중국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다. 중국 관헌은 타이완에서 이루어지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중국인 사이의 무역을 묵인했다. 히라도 상관이 무역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이때부터의 일로, 생사를 수입하고 은을 수출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타이완에 무역 거점을 마련했다고는 해도 현지 사정에 어둡고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불가능한 네덜란드인들의 무역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그들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해상에게 선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것이 언제나 문제를 야기했다. 납기 지연이나 상품 부족은 물론 그것을 중개하는 사람의 자금 횡령이나 사기 행위도 빈발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본부의 17인회에 제출된 아시아 보고서에 중국인 해상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평가가 난무하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해역에서 네덜란드인들이 처한 곤경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지룡(鄭芝龍)의 대두로 수습되어갔다. 히라도에 거주한 적이 있는 정지룡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타이완 상관의 통역을 거쳐 해상(=해적)이 된 인물로, 중국·일본·네덜란드 모두와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일찍이 중국 연안을 약탈하던 그는 명조의 회유로 일변하여 1628년부터는 관헌의 일원이 되어 주변 해적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그 뒤 정지룡은 하문(廈門, 아모이)과 항주(杭州)를 거점으로 하여 네덜란드에게 중국 상품을 중개하고 직접 일본에 배를 파견했다. 히라도 상관의 무역은 정지룡의 해상 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전개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궤도에 오른 히라도 상관의 무역은 1628년에 일어난 타이완 사건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사건은 나가사키 대관(代官) 스에쓰구 헤이조(末次平藏)가 파견한 주인선에 타이완 상관이 과세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타이완은 네덜란드가 상관을 만들기 이전부터 주인선과 중국선이 만나 교역하던 곳으로, 중국 상품을 입수하기 가장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주인선 가운데 타이완 도항선이 가장 많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타이완 상관이 만들어진 뒤로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선과 주인선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주인선에 대한 과세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완 무역에서 선배 격에 해당하는 주인선 무역가의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 상관의 과세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타이완 사건이 사인 간의 분쟁에 그치지 않고 막부까지 개입하는 대사건으로 발전한 이유는 타이완 상관과 주인선 무역가 간의 갈등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주인선 무역에 막부 고관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27년 바타비아의 인도평의회는 쇼군에게 타이완행 주인장의 발급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타이완 상관의 행정장관 피테르 노위츠(Pieter Nuyts)를 대사로 파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해 타이완을 찾은 주인선에 대해 노위츠는 보복조치를 감행했고, 사태는 폭력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막부는 히라도 상관에 향후 5년 간 무역 활동을 금할 것을 명했다. 타이완 상관의 고압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상승하던 일본 무역은 1632년까지 중단되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5년간의 공백을 거치고 재개된 히라도 상관의 무역은, 그 사이 네덜란드가 막부와 관계 개선을 위해 보인 외교적 노력과,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인해 단연 활기를 띠게 되었다.

먼저 1630년 스에쓰구 헤이조가 사망함으로써 일본에 만연했던 네덜란드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한 바 있는 바타비아 당국은 1632년 사건 당사자인 노위츠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왔다. 이때 바타비아 총독은 히라도 상관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약스스벙스였다. 일본의 정치 문화에 정통한 그는 저자세로 대화에 임해 쇼군의 만족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¹³⁾ 타이완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보인 네덜란드의 태도는 동남아시아에서의 폭력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1633년부터는 히라도 상관장이 매년 에도의 쇼군을 예방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이 관행은 데지마 상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네덜란드 측의 노력보다 더욱 결정적으로 히라도 상관의 활황을 가져온 요인은 일본이 주인선 무역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한 일이었다. 도쿠가와 막부는 주인선 제도를 포르투갈의 생사 무역 독점에 균열을 가져오고, 다이묘들의 사적 무역을 통제하여 그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주인장 발급을 직접 관리하고 주인선의 입출항을 나가사키로 제한하는 정책 등은 모두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막부의

13) 永積昭, 『オランダ東インド會社』, 講談社學術文庫, 2000, 124쪽. 원저는 近藤出版社, 1971.

의도는 그 뒤 관철되어 포르투갈의 생사 무역에 일대 타격을 가져왔고, 주인선 이외의 무역선의 입출항도 히라도와 나가사키로 한정되어갔다.

주인선 무역이 갖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막부는 1633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일련의 쇄국령을 통해 주인선 제도의 폐지는 물론이고 모든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1620년대에 들어 동남아시아해역에서 주인선이 국제적 분쟁에 말려드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주인선을 통해 크리스트 교도나 선교사가 유입되는 사건이 다발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안정과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데 성공한 도쿠가와 막부에게 생사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국제적 분쟁에 휘말려 막부의 권위가 훼손되는 사태나 체제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크리스티교의 잠입을 차단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이 난제에 대한 막부의 최종적인 결론이 네덜란드였다. 그때까지 막부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해왔던 네덜란드는 무역과 포교를 일체화시키지 않는 점에서도 포르투갈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소개한 1639년의 에도 성의 회의는 막부가 해외 무역에서 발을 빼는 최종 국면에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의 결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일본이 주인선 무역에서 철수하고 포르투갈이 추방된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본 무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의 소멸을 의미했다. 이후 주인선의 교역 루트를 그대로 이어받은 네덜란드의 일본 무역은 날로 확대되었다. 히라도 상관의 무역액이 최고를 기록하는 해는 포르투갈 추방이 결정된 다음해인 1640년이였다.¹⁴⁾ 그와 동시에 타이완 상관의 무역액도 1634년에서 1637년 사이에 4배로 늘어났다.¹⁵⁾ 이 과정에서 1637년도 히라도 상관의 무역 이익이 동인도회사 전체의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어서게 되었다.¹⁶⁾ 동아시아해역에서 보인 네덜란드인들의 온순한 상인의 얼굴의 뒷면에는 일본 무역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이 있었다.

4. 그 뒤의 이야기

주인선 무역과 포르투갈의 생사 교역이 중단된 뒤 이제 남은 경쟁자는 중국인 해상뿐이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일본 무역에서 이 최후의 경쟁자마저 축출할 생각이었지만, 중국 본토에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인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겨우 일본행 상품을 입수하던 그들에게 그것은 가능할 리 없는 이야기였다. 오히려 네덜란드의 일본 무역은 정씨 부자(정지룡과 그의 아들 정성공)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수동적인 현실에 처해 있었다.

일본의 쇄국 이후 나가사키 무역을 둘러싼 중국인과 네덜란드인의 경쟁은 16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전자가 압도해갔다. 일본을 오가는 중국선은 정성공이 발행하는 허가증 없이는 운항이 불가능했고, 나가사키의 생사 교역은 정성공의 배가 도착해서야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시작되었다.¹⁷⁾ 일본 무역이 가진 이러한 취약한 구조는 네덜란드가 중국 본토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던 거대한 정치 변화는 네덜란드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다.

명청교체가 네덜란드의 일본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는 정씨 부자, 그중에서도 특히 정성공이 그 과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646년 정지룡이 청에 투항한 이후 독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정성공은 남명(南明) 정권 최대의 세력이 되어 전국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했다. 청군에 대한 공격은 남명 정권 붕괴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 정성공 정권의 재정적 기초는 일본 무역에 있었다. 1640년대 중반을 경계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생사 수입량이 격감하고, 나가사키로 내항하는 정성공의 정크선이 급증하는 것은 당시 그가 전개하고 있던 군사 활동과 연동된 현상이었다.

정성공이 일본 무역을 통해 전시 재정을 충당하면서 그때까지 정씨 부자의 해상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중

14) 岩生成一, 『鎖國』, 中央公論新社, 2005, 458쪽. 원저는 中央公論社, 1974.

15) 永積洋子, 『近世初期の外交』, 169쪽.

16) 하네다 마사시 저, 이수열·구지영 역,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선인, 2012, 129쪽. 원저는 羽田正, 『東インド會社とアジアの海』, 講談社, 2007.

17) 上田信, 『シナ海域蜃氣樓王國の興亡』, 講談社, 2013, 299쪽.

국 상품을 입수하던 타이완 상관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 정성공 정권이 타이완으로 거점을 옮긴 일은 네덜란드의 일본 무역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661년부터 공격을 개시한 정성공은 해상봉쇄와 몇 차례의 전투 끝에 질란디아 성을 점령했고, 다음해 네덜란드는 타이완을 철수했다. 1683년 정성공이 사망한 뒤로도 일정 기간 계속된 정씨 정권이 청에 항복함에 따라 타이완은 청조 관할 하로 들어갔다. 이로써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무역이 이전과 같은 호황기를 다시 맞이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정성공은 16세기 ‘상업의 시대’ 이래 동아시아해역을 주름잡던 해상 세력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었다. 청조는 타이완 정복 이후 다시 해외 무역을 재개했지만 이전처럼 해상 세력을 그 일에 개입시키지는 않았다. 쇄국 이후 해외 무역에서 철수한 도쿠가와 막부도 나가사키나 쓰시마를 통해 이루지는 무역을 직접 관리했다. 일본의 경우는 18세기에 들어 광물 자원의 고갈과 중국 상품의 수입대체화 등으로 인해 해외 무역 자체에서 발을 빼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해역 상황의 변화로 네덜란드가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갔다. 이후 근세 일본에서 네덜란드는 주로 서구 문화의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난학(蘭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문화의 문제로서 존재하던 네덜란드가 다시 정치의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증기선과 함포로 무장한 새로운 모습의 유럽이 동아시아해역에 나타나고 나서부터였다.

「동아시아해역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대한 토론문

신동규(동아대 일본학과)

발표문은 발표자 이수열 선생님께서도 밝혔듯이 휴고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자유해: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선인, 2023)라는 번역서에 수록된 논평입니다. 휴고는 ‘만민법’에 기초해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해양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인물로 원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네덜란드의 동남아시아·동아시아 지역(=동인도 지역)에 대한 자유 항해의 권리와 포르투갈의 동인도 해양 진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VOC)의 성립 직후, VOC의 해양 진출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출판한 책으로서 그만큼 철저하게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만 저술되고 있습니다(영국 관계는 거의 언급이 없고, 특히 네덜란드의 영국에 대한 사략선 행위와 불법, 살해 행위 등은 제외). 그렇기에 이수열 선생님의 논고도 VOC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대외무역과 외교, 국제질서, 네덜란드 상관,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해역사 등을 소재로 그 역사적 의미와 국제관계의 변화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발표는 최근 학계에서 에도시대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약간은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6·17세기의 일본과 서양 관계 및 일본의 대외관계를 상당히 폭 넓은 시야 속에서 파악하고 있어 근대(서양 중심의 근대화)를 연결하는 전근대 일본의 서양 관계를 재고해 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토론자로서 제 개인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근대 일본제국주의의 이미지 관련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근 7·8년 간 전근대 일본의 국제관계를 등한시 하고 있었는데, 서유럽 세계의 동아시아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에도시대 일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편, 이 논고는 에도시대의 전 단계인 16세기의 은광 개발, 서유럽 세계의 동아시아 진출의 배경, 17세기 에도막부의 대외체제를 대변해주는 ‘해금·조공체제’, 1600년 네덜란드선 리흐테호의 표착 이후 일란관계와 히라도 상관에서의 VOC 관계 등 근세 일본 국제관계의 필수 요소들을 유효적절하게 파악하고 있어 특별한 부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선생님의 추가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1937년 10월에 발발한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 포르투갈 단교의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1939년 4월 막부의 논의 내용을 예로 들어 “일본 측의 관심은 네덜란드가 과연 포르투갈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점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며, 이 회의는 “일종의 기업 설명회”였다고 무역적 측면에서 포르투갈의 단교 및 이 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정확한 견해라고 생각되지만, 이와 더불어서 1939년의 포르투갈 단교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예를 들면 이에 대한 막부의 입장과 네덜란드의 입장의 차이점 등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1939년 4월 이전 1638년 5월에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 종결된 직후 5월부터 막부는 상관장에게 포르투갈 단교를 상정해두고 네덜란드에게 포르투갈을 대신해 무역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었습니다(『히라도네덜란드상관일기』). 이에 상관장은 당연히 일본으로의 무역품 공급을 약속했으며, 상관장은 포르투갈의 근거지였던 마닐라에 대한 공략(이른바 ‘마닐라정벌계획’)에 대해서도 확답은 피했지만, 찬동의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막부는 1637년 10월에 발발한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에 네덜란드에 군선 지원을 요청하여 네덜란드가 직접 군선과 무기를 지원하는 등 난 진압에 참가하여 공조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부의 실질적인 의도는 네덜란드의 참전이라는 막부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지, 또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이면서도 그리스도교인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가의 여부, 즉 포르투갈 단교를 염두에 두고 네덜란드를 시험하기 위한 막부의 계략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던 1628년 타

이완 사건으로 인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일본 무역을 어떻게 해서든 재개할 필요가 있었고, 더군다나 네덜란드는 자국의 6배에 달하는 포르투갈의 일본 무역액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상관장이었던 약크 스펙스(작크 스펙스)는 1630년 7월에 타이완 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일본 무역의 추진을 위해 “일본인은 진실로 위대하여 긍지가 높고, 네덜란드인은 卑小하다.”(『히라도 네덜란드상관일기』)고 까지 자신들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즉, 막부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이 그간 행해왔던 선교와 무역 활동의 병행보다는 그리스도교 포교를 배제한 네덜란드에 의한 서구 무역 단일화 창구가 필요했던 동시에 막부의 ‘武威(=쇼군의 권위)’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의 대일본 무역의 대한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포르투갈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신을 낮추면서 일본의 요구(‘난’에의 참전 등)에 부응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과 네덜란드 양국이 상호 최적의 외교 현안을 선택함으로써 일란관계의 고착과 네덜란드라는 대 서양 관계의 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르투갈 단교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내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언급한 포르투갈 단교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의 여부와 함께 향후 막부의 서양 관계가 네덜란드의 단일 창구로 고착되는 되어가는 시점에서의 막부·포르투갈·네덜란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고는 대체적으로 1939년 포르투갈 단교와 1641년 데시마 상관 이전 전후까지 에도막부의 대서유럽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에도막부 초기의 서양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과의 대외관계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17세기에 들어와 영국과의 관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17세기 히라도에서의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은 상호 경쟁 관계였고, 특히 영국은 1613년부터 히라도 상관을 설치해 일본 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623년에 상관을 폐쇄해 버립니다. 영국의 상관 폐쇄는 영국 내부의 문제(중국 무역 중요성의 대두, 영국의 내분 전쟁 등)와 일본 상인과의 문제(일본 상인의 동남아시아 지역 주권선 파견 문제), 네덜란드와의 경쟁 문제(1623년 암본사건[모르카제도 암보이나학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점은 향후 에도막부의 쇄국·해금 체제 정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영국의 상관 폐쇄(=영국의 대일본 무역 철회)를 에도막부 초기의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본고는 주지한 바와 같이 17세기 전반기 에도막부와 네덜란드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VOC의 대일본 무역정책을 그 루트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야 하고, 이점은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1609년 히라도 상관(1641년부터 데지마 상관), 1619년 바타비아 상관, 1624년에 타이완 상관(젤란디아 상관)의 설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타비아-타이완-히라도(후에 데지마)는 일종의 무역 루트인 동시에 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는 이를 기반으로 중국-동남아시아-일본과의 중개 무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타이완의 젤란디아 상관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662년에 정성공 등에 의해 폐쇄됩니다. 이점은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렇다면 타이완 거점이 빠진 네덜란드의 동아시아 무역과 일본 무역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변화를 거론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일본 무역의 변화는 어떠한 점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토론 내용을 세 가지의 문제점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만, 일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궁금증도 포함되어 있어 죄송한 마음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4발표]

일본 표착 조선인의 마찰과 수습을 통해서 본 조일 교린의 실태

발표: 이 훈(한림대학교)

토론: 유채연(전북대학교)

일본 표착 조선인의 마찰과 수습을 통해서 본 조일 교린의 실태

이 훈(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머리말

1. 일본 표착 조선인의 마찰 사례
2. 1717년 조선 표민의 나가사키 직소와 대마번의 대응
3. 1795년 조선 표선의 漕捨 사고와 대마번의 대응

맺음말

- 송환사고와 조일 교린의 실태 -

머리말

조선시대 해안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로.상매.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를 향해하다가 중국.일본.베트남 등지에 표착하였다. 조선인이 가장 많이 표착하였던 곳은 동해 쪽을 바라보는 일본 연안이었으며, 연중 대륙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일본에 표착했다가 송환되어 온 사례는 1,000건을 웃돌며, 사고 당사자인 조선인의 숫자는 1만 명에 가까웠다. 이 숫자는 일본인으로 조선에 표착한 사고의 10배에 달한다. 조선인의 경우 1년 평균 4건에 가까운 표착 사고를 당한 셈으로, 비록 사고이기는 하지만 일본 땅을 밟은 횟수로만 본다면 외교사절인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한 횟수(12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았다. 단적인 예로 임란 이후 조선이 일본측(대마번)에게 발급한 서계(외교문서) 9,400여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2,300여점이 표류민 송환과 관련된 것이다.¹⁾ 이 숫자만 보더라도, 조일 양국관계에 있어서 표류민의 송환이란 통신사외교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경우,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기(1628~1888), 전라도 주민의 일본 표착은 약 360건 정도, 경상도 주민의 경우는 이를 웃돌아 송환 사례가 500건이 넘었으며, 송환된 사람도 4,500명이나 되었다.²⁾ 그리고 1640년대 중반 이후 에도 바쿠후(江戸幕府)의 송환 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조선인들은 일본의 어디에 표착하건 일단 나가사키(長崎)에서 조사를 받은 후 대마번(對馬藩)³⁾의 호송 하에 5개월~1년 만에 조선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1)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9,442점) 가운데, 표류민 송환과 관련된 서계 2,300점이란 '일본 표착 조선인' 및 '조선 표착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된 숫자이다(『대마도종가관계문서 書契目録集』 I V, 1991~1994,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2)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참조.

3) 번정(藩政)기구를 의미할 때는 '대마번'으로, 지역적 공간을 의미할 때는 '대마도'로 쓰기로 한다.

그런데 표착지에서 나가사키로 옮겨져 막부측(長崎奉行所)의 조사를 받은 후라 하더라도 대마번에서 호송 사자가 결정되어 조선인 표류민들을 맞으러 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항해하기 좋은 순풍을 기다리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조선인 표류민들이 표착지에서 나가사키로 이송될 때까지, 그리고 나가사키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는 일본인들과 의사소통 수단의 유무, 체류 중 지급물의 다과, 상대에 대한 정보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일본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며, 외교 문제화된 경우 귀국 후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표류민 송환을 대조선 통교 업무의 하나로 수행해온 대마번의 경우, 표류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신분상으로는 양반도 아닌 ‘천한 것들’이라는 인식, 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울산, 김해 등지) 주민들처럼 일본 표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서는 잦은 표착으로 획득한 일본 정보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조선 표류민의 송환에 대해서는 조일 교린국간의 ‘성신’이라는 외교적 명분, 나아가서는 대마번의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사고 등에 대해서는 이를 조선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가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마번 특유의 교섭술을 발휘하였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사고·마찰에 대한 대마번의 인식 및 수습 행태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2 사례(1717, 1795)를 소개함으로써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표착 조선인의 마찰 사례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표착지 및 나가사키(長崎), 대마번 등, 전반적으로 표류민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요 내지 마찰 등을 한마디로 ‘송환 사고’라 정의할 경우, 일본측 기록에는 ‘不敬·不届·不埒·放肆·放埒·非法·不法·法外·自由’ 등이라는 문언으로 남아 있다.⁴⁾ 이러한 표현은 당시 일본의 송환체제로는 감당하기 힘든 방종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다음의 <표 1>을 보면 1704년(숙종 30) 이후부터 1847년(헌종 13)까지 약 20건이 확인된다.⁵⁾ 그러나 표착지에서의 이러한 소요나 송환과정에서의 마찰·사고가 모두 조일 간의 정식 외교현안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표착 장소와 시기, 송환 사고에 대한 수습 행태가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이들을 일괄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마번의 수습 행태에 따라 조선에서는 소요가 있었던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송환사고 일람

	출신지	일본 내 표착지	사고 원인 (조선인)	사고 원인 (일본측)	대마번의 수습	조선의 조치
1704	나주	肥前	실종			
1705	무안	薩摩	길에서 술주정 및 행패			

4) 근세 일본어에서의 ‘自由’란 통제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 즉 방종한 행위를 일컫는 뜻으로 ‘不敬·不届(후토도키)·不埒(후라치)·放肆·放埒(호라치)·非法·不法·法外’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5) 송환사고에 관한 조선측 자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주로 일본측 자료에 의존하였다. 그 이유로는 대마번이 일본에서 발생한 마찰 내지는 송환 사고가 조일간의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동래부 역관과의 사적 교섭을 통하여 원만히 무마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래부사나 조정에서는 송환사고가 발생했던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소요 사례에 관한 자료는 조선측 기록보다는 자연히 이의 수습에 노력한 대마번측에 많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1717	김해 등지	河馬島	표착지 및 각 浦陳에서의 薄待를 막부(長崎奉行所)에 직소		‘不屈·放肆’ 조선인의 처벌 요구	표류민을 처벌하겠다는 예조참의 답서
1765	영일		표선의 漕捨			
1766	(1순 표류민)	대마도	승선 재촉 표선의 수리 요구		‘不敬’ 양역(兩譯)에게 경고	
1767	경주	대마도	대마번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선		‘不埒’ 조선인 표류민에 대해 송환시 밧줄(繩)로 묶는 조치를 취하고, 해변가 어민을 단속해 주도록 동래부에 경고	동래부사가 밧줄의 사용을 삼가주도록 요청
1770			승선 재촉 표선에 대한 대마번의 해선(解船) 요구를 거부		‘不埒·非法’ 조선인 표류민에게 繩·手錠 사용할 의사를 양역을 통해 동래부에 경고	동래부사의 사과 서한, 표류민을 귀국 후 杖罪에 처함.
1773			귀국 재촉 대마번청에 직소		‘放埒’ 조선인 표류민에게 繩 사용할 의사를 양역을 통해 동래부에 경고	동래부사의 사과 증문
1776	울산	대마도 (唐舟志)	귀국 재촉 대마번청에 직소		‘不埒’ 조선인 표류민에게 繩 사용할 것을 경고, 해변가 어민에 대한 경계령(觸書) 요구	동래부사가 표류민에게 繩 사용을 허락
1779	강화도	대마도 (泉浦)	소요 사태			
1784		長州 (湯玉浦)	난폭행위 무력 충돌 절도		‘放肆’ 조선인 표류민에게 繩 및 탈것(籠) 사용	예조참의 답서
1795	함경도 덕원	長州 (湯玉浦)	의사불통	조선인 표류민을 바다로 내쫓음(漕捨)	조선인 표류민에게 漕捨 사실을 동래부에 보고하지 않도록 당부, 막부에서 九州 및 中國 지방에 구제에 관한 觸書(令) 내림	예조참의의 감사 답서
1802			나가사키(長崎)에 표선의 수리를 요구		‘不埒’ 표선을 해선하여 송환	
1804			조선인 표류민의 亂心			
1806		五島	표류민의 자유행동 및 몸싸움		‘放肆’	
1815	울산	대마도 (귀국 도중)	호송 도중 옥지에 올라가 음주 및 배회		‘放埒’	
1818		筑前	표선의 解船을 나가사키에 오구		‘不埒’	문위역관 일행이 대마번에 사과
1822		長州	나가사키에서 대마번 역인과 충돌		‘放肆’	
1824	울산	石見	시중 배회 무력 충돌 등			
1847		長州			‘亂法’	

* 『分類紀事大綱』 및 선행연구(池內敏, 木部和昭)를 참고하여 작성

2. 1717년 조선 표민의 나가사키 직소(直訴)와 대마번의 대응

위의 <표 1>에 제시된 송환사고 가운데서 대마번의 입장 내지는 수습 행태, 그리고 조선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는 1717년 조선 표류민들이 직접 막부측에 항의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대마번은 이 사건의 조선 전달 과정에서 항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인 표류민들의 식량 부족에 대한 호소보다는 막부 직소라는 절차를 부각시켰는데, 이는 17세기 말 조선의 교섭 태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명 ‘나가사키 직소(長崎直訴)’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河馬島에 표착한 경상도 김해 표류민들이 표착지 및 나가사키에서의 접대가 아주 소홀했음을 진정하는 각서를 대마번 역인(長崎聞役)⁶⁾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부(長崎奉行所)에 직접 제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717년 2월 22일(조선력과 동일) 조선 표민이 ‘大上官(長崎奉行) 앞으로 낸 진정서에 따르면, 김해 표류민 7명을 비롯하여 筑前 및 豊後에 표착한 전라도의 안락현(13명)·고달도(10명)·강진(22명)·장흥(18명)의 표류민 70명이 나가사키 봉행소에 항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정서는「各船漂流等願情」이라는 제목으로 이두가 섞인 한문으로 작성되었는데, 내용은 원래 일본 체류 중 표류민 1명에게 1일 동안 지급해야 할 의복과 곡식은 飯이 3번, 酒가 3번이라야 하는데도, 나가사키에서 지급하는 것은 겨우 米 3습과 滅魚 3首 뿐이므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으며, 표착지 및 나가사키에서 의복을 지급하는 것도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표류민 1명에게 주는 쌀을 1홉(습)만 증가해 주도록 진정한 것이었다.⁷⁾

원래 조선인 표류민은 일본 내의 여러 표착지로부터 나가사키로 호송되어 온 후에는 봉행소에서 표류 경위 및 宗門(キリシタン 여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나가사키에 있는 대마번 사무소(築町の 長崎屋敷, 현재 長崎市 銅座)에 얼마동안 체류하게 되어 있다. 조선인 표류민들이 제출한 각서에는, 막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했던 것은 黒米 7습 5勺(白米 6홉 남짓)과 酒 2습 5勺이라는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의 1/2에도 못미친다는 것이었다.⁸⁾ 이는 대마번도 시인하고 있었다. 대마번의 번유(藩儒)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표류민에 대한 나가사키에서의 지급이 너무나 형편없어 표류민이 식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대마번이(막부에) 내밀히 알렸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직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⁹⁾ 이에 조선인 표류민은 표착지에서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오는 동안은 물론, 나가사키에서 조차 그들에 대한 접응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나가사키 봉행소에 항의했던 것인데, 대마번은 이를 ‘방종한 행동’(不届・放肆)이라 하여 문제삼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대마번은 조선 표민의 직소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조선 표민이 대마번측(長崎聞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 부교쇼(長崎奉行所)에 직접 항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대마번의 입장에서 볼 경우 대조선 통교 창구인 대마번을 건너뛰고 막부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혹시라도 막부가 이 표민 직소건을 곧바로 받아들이, 대마번에는 확인 내지는 문의도 하지 않고 막부 주도 하에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을 경우, 내용에 따라서는 대마번의 통교 업무에 대한 막부의 책임 추궁이 있을 수 있었다. 나아가

6) ‘나가사키 기키야쿠’(長崎聞役)란, 대마번의 나가사키 출장소의 책임자를 의미함.

7) 『分類紀事大綱』 23, 「享保二丁酉年漂民共長崎御奉行所江直訴出候事」의 「丁酉二月貳十二日 願情覺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4508, 이하 ‘국편’으로 약칭함).

8) ‘黒米 7습 5勺’은 ‘백미 6홉’으로 환산하였다.

9) 雨森東五郎의 「覺」(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 No.8760).

대마번의 대조선 통교 업무상 이를 조선에 알릴 경우, 곧바로 조일 간의 외교현안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이에 조선 표민이 나가사키 봉행소에 소장을 제출한 날(1717.2.22), 나가사키의 대마번 역인(長崎聞役) 히라타 고에몬(平田幸右衛門)은 곧바로 구니모토(國元)의 가로(杉村采女·杉村三郎左衛門·大浦忠左衛門·樋口佐左衛門)에게 사건의 정황 보고와 함께,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선에도 알릴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¹⁰⁾ 나가사키 기키야쿠의 보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조선 표민의 직소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일본에 표착하여 나가사키나 표착지에서의 접응 수준을 잘 알고 있는 울산 표민들이 중심이 되어 송환을 대기하고 있던 다른 지역 표민들을 설득하여 모두 49명이 봉행소까지 뛰쳐나간 집단 시위로서, 봉행소에 청원서를 제출한 후 숙소로 돌아갈 때에는 의기양양하여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벌였으나 워낙 숫자가 많아 저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¹¹⁾

이에 대마번은 의견수렴을 위해 번사들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다.

앞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의견에 이어 주목할만한 것은 대마번의 번유(藩儒)인 마츠우라 기에몬(松浦儀右衛門)의 의견이다. 대마번 가로에게 제출한 의견서(覺)에는, 막부에서 표민 송환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직접 취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에도(江戸)의 막부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득함으로써 기왕에 대마번이 독점해오던 표민 호송을 비롯한 통교 절차에 변화가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마츠우라의 논리이다.

a) 조선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조정의 여러 관인을 비롯해 東萊[부사]¹²⁾까지 지금은 일본에 대한 대처가 매우 능란(功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사에 저쪽[조선]에서 권위를 내세워, [사안에 따라] 조정과 동래 간에 대처할 것을 조정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또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혹은 따르고 혹은 따르지 않음으로써, 조종하는 수단을 가지고 취급하여, 결국은 대마번(御國)¹³⁾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도록 하는 계책입니다. 이에 대마번에서도 그 점을 잘 파악하여, 어떤 일이든지 이곳의 대응책을 세워 놓되, 되도록이면 이쪽에서 [먼저] 손을 쓰지 않도록 하고, 저쪽의 변화를 살펴가며, 혹은 따르거나 혹은 멀리하는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막부(公儀)를 뒷 배경으로 삼아, 매사에 그 간극을 잘 살펴가며 응대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커지기 전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막아서, 앞으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조선을 대하는 좋은 대책일 것입니다.

(중략)

b) 또한 조선과의 통교업무는 우리 번[대마번]이 선조 때부터 통교 취급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저쪽 [조선] 관련 일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 번이 아뢰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우리 번이 나가사키(長崎)에 둔 부하[長崎聞役]가 말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인 주제에 봉행소(奉行所)에 직소(直訴)를 하게 된 것은 우선 막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껄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나라의 체면(國體)까지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삼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대마번이 통교 취급업무를 맡고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마번의] 통교 취급 업무를 뛰어넘어 [長崎奉行所에] 직소하게 된 상황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나중에는 우리 번의 [통교 관련] 현안을 우리 번이 조선에 전달할 때에도, 대마번의 주장을 매우 우습게 여겨 허용하기 어렵게 되어서는 반드시 [통교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삼가 생각합니다.

c) 이후 만약에 이번처럼 [나가사키] 봉행소에 직소(直訴)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봉행소에서 대마번

10) 『平田幸右衛門方より來狀之寫·松浦儀右衛門差出候存寄之覺書』(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716).

11) 『平田幸右衛門方より來狀之寫·松浦儀右衛門差出候存寄之覺書』(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716).

12) 인용 사료 가운데, 내용상 발표자의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여 청색으로 표시하였다. 예시: 동래[부사]

13) 번역문 가운데, 인용사료 속의 문언을 그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여 표시하였다. 예시: 대마번(御國)

에 알려진 이후에 직소한 내용을 [막부에] 보고하도록, [막부에서] 봉행소에 지시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관련 일은 [대마번이] 담당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은밀히 청원한다는 취지로 아무쪼록 그렇게 되도록 청원을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¹⁴⁾

a)에는, 조선의 대일본 통교 태도에 대한 대마번의 위기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8세기 초쯤에는 이미 조선의 중앙 조정에서부터 동래부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한 대처가 매우 능란해져서, 소위 ‘통교의 달인’이 되어서 조선이 주도권을 쥐고 사안에 따라 조정과 동래부 간에 대처할 것을 수위 조정해가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대마번이 사안에 따라 막부의 무위(武威)를 뒷 배경으로 삼아 잘 대응해 왔지만, 임란 직후처럼 막부의 무위(武威)를 내세워 위협하거나 밀어부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b)에서 주목할 것은, 조선 표류민들이 대마번을 건너뛰고 나가사키 봉행소에 직접 항의하는 직소(直訴) 행위를 방지할 경우, 대마번이 막부로부터 부여받은 대조선 통교의 명분 상실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통교 재개 이래 대마번주 소(宗)씨 가문이 막부로부터 부여받은 가역(家役)이란, 조선과의 모든 현안을 대마번이라는 창구로 일원화하여 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소위 대조선 통교의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 표류민들의 막부 직소와 같은 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교 절차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고착될 경우 기왕에 획득한 중개자로서 대조선 통교 명분의 상실 내지는 기득권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따라서 c)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미 조선인 표류민들이 막부측(나가사키 봉행소)에 직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봉행소에서 직소 내용을 대마번에 미리 알려주어, 대마번으로 하여금 막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통교 절차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조선 표류민이 직소한 식량 부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그 대신 직소 건으로 인한 대조선 통교에 있어서 대마번의 기득권 손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조선 교섭에서 대마번이 느끼는 이러한 위기의식은 1717년 조선 표민들의 나가사키 직소가 처음은 아니었다. 17세기 말 울릉도쟁계(1693~1699, 일본에서는 ‘竹嶋一件’) 당시에 조선의 교섭 태도 변화와 통교 절차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울릉도쟁계를 둘러싼 조일간의 교섭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7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교섭 결과가 대마번이 처음 조선에 요구했

14) 『平田幸右衛門方より來狀之寫・松浦儀右衛門差出候存寄之覚書』(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716).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朝鮮人儀、朝廷諸役を始東萊ニ至まで、只今ニハ日本向キ様子巧者ニ罷成候ニ付、何事も彼方ニ權威を取、朝廷と東萊との間を以相隔、理不盡ニ推付候様ニいたし、又者其時其事ニより、或は從イ、或ハ不從様ニ仕り、操縦之手段を以取扱イ、畢竟御國より御手を出シ不被得候様ニ致成シ申計策ニ御座候へハ、御國ニも其所を御存被成、何事ニよらず、此方之御處置を御堅メ被置、成たけ之儀ハ隨分此方より手を御出不被成候様ニ被成候而、彼方之變化を御窺、或付キ、或離レ候手段を御用イ、扱 公儀を後口立ニ御取被成、諸事其間を以御あいしらい被遊候而、第一事之未然より其漸微を御防キ被成、後來之弊端出來不仕候様ニ可被遊義、朝鮮御取扱イ之良策ニ而可有御座候。

(중략)

b) 且又朝鮮御用之儀者私先祖より御通交之御取扱被仰付置候故、彼筋之義ハ何事ニよらず、私より申上來り候處ニ、此度之ごとく私長崎表ニ召置候家來申聞セ候處をも承引不仕、下人之分際と仕、御奉行所へ直訴仕候様ニ御座候而ハ、第一、公儀をも憚不奉存候處、不屈至極之儀ニ候故、御國體迄も不嚴重様ニ相見候段、乍恐甚不可然義ニ而、次ニ者私御通交之當役奉畏罷有候詮も無之、ケ様ニ當役を差越、直訴仕候様ニ御座候風義、段々と増長仕候様ニ御座候而ハ、後、者御用筋之義、私より彼國へ申達候節も、私申分を甚輕之、許容も難仕様ニなど罷成候而者、畢竟御用筋之支ニも罷成義と乍恐奉存候。

c) 已來、若も此度之ごとく御奉行所へ直訴仕候義有之節ハ、御奉行所より私へ被申届候已後、直訴之筋御聞届有之候様ニ、御奉行役所へ被仰付被下候様ニ有御座度御儀と奉存候。朝鮮筋之義者御當役之義ニ御座候故、右之趣御内所御願被成候との趣を以何分ニモ可然様ニ御願被仰上度御事と奉存候。

던 것과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¹⁵⁾ 이에 대마번의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대조선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대응책이란 비록 울릉도쟁계로부터 20년이나 지났지만 사건의 전말에 맞는 내용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기록을 작성해 두는 일이었다. 대마번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결과물이 바로『竹嶋紀事』(1726)라는 기록으로, 울릉도쟁계 당시 대마번이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a) 당시 저쪽(조선)의 수단(전략)은 ‘일도이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대마번) 사자의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이 오로지 역관을 꾸짖기만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일을 처리하려는 생각으로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조선인을 둔하고 겁이 많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태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정통하며, 상황에 대한 결단도 빠릅니다. 훗날의 우환을 생각하는 것도 사려 깊다(深謀遠慮)는 것을 ‘죽도일건’의 경과를 통해 대강 알 수 있을 것입니다.¹⁶⁾

b)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건대, ‘죽도일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부의 명령을 말씀으로 삼아 교섭에 임하였다. 처음에는 일본의 죽도라고 하여 저 나라의 배가 오는것을 금지했다가, 결국에는 저 나라(조선)에서는 가깝고 우리나라(일본)에서는 멀다고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또한 저 나라 사람들이 겸손하고 순한 말로 이것에 대응했을 때는 ‘울릉(鬱陵)’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저 나라 사람들이 강하고 위협적인 말로 이것을 거절할 때는 감히 그 잃는 바를 말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결국에는 (일본이 조선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했다(侵涉犯越)’는 명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쪽의 입장을) 스스로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①그 땅을 우리 소유로 하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가는 진정 성신의 도리를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¹⁷⁾

a)에서 주목할 것은, 울릉도쟁계 당시 조선의 교섭태도 변화를 지적한 부분으로 과거와 달리 사안에 따라 강약 조절은 물론, 결단의 속도 조절도 가능한, 소위 ‘능란해진’ 조선의 교섭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b)에서도 조선측 외교문서인 서계에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못박게 되어 당초 대마번이 의도했던 바를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를 조선의 능란해진 대일본 교섭 태도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 또 b)-①을 보면, 만약 조선의 이러한 교섭태도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대마번이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밀어부침으로써 당시 조일관계에서 추구하던 외교이념 내지는 명분인 ‘성신’이 훼손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그간 대조선 업무를 독점해오던 대마번으로서는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심각성을 번에 호소하고 있다.

물론 위의 a)와 b)는『竹嶋紀事』(1726)의 편자(고시 츠네에몬, 越常右衛門)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竹嶋紀事』의 편찬 당시 이 기록물의 감수 및 서문을 작성한 사람은, 앞서 1717년의 나가사키 직소 사건에 대해 대마번에 의견서(覺)를 제출했던 번사(藩儒) 마츠우라 기에몬(松浦儀右衛門)으로, 그 역시 과거와 달리 능란해진 조선의 교섭 태도를 번(藩)의 가로들에게 호소했던 것으로 볼 때, 17세기 말~18세기 초의 대마번사들 간에 조선의 교섭태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울릉도쟁계를 겪으면서 대마번이 조선의 강경해진 교섭태도를 위기로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인식으로 그치지는 않았다. 울릉도쟁계 당시 대마번을 곤혹

15) 울릉도쟁계 교섭 당시, 대마번은 조선측 서계에 울릉도를 ‘日本竹嶋’로 명문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조선의 강경대응으로 결국은 ‘朝鮮鬱陵島’로 기재되게 된 것을 일컫는다.

16) 『竹嶋紀事』 권1, 1694년(갑술, 元祿 7) 8월 9일 綱. 서문은 마츠우라 기에몬(松浦儀右衛門) 작성.

17) 『竹嶋紀事』 권5, 후기(1726, 享保 11) 11월, 발문은 편자인 고시 츠네에몬(越常右衛門) 작성.

스럽게 했던 사안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안용복의 2차 일본 도해(1696)가 통교 절차라는 면에서 대마번을 위태롭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돗토리번(鳥取藩) 기록에 따르면, 1696년 6월 안용복의 2차 일본 도해시, 돗토리번의 조사과정에서 안용복은 도해 목적을 일본에 직접 소송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에 돗토리번(에도번저의 聞役, 吉田平馬)도 안용복의 2차 도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막부 로쥬(大久保加賀守)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송 내용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때 대마번이 우려했던 것은, 돗토리번이 안용복 일행의 소송 문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이를 곧바로 막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이것은 바로 대마번을 제치고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직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대마번의 입장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그동안 독점해왔던 대조선 통교 절차와 루트에 모종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마번(宗刑部大輔, 宗義眞)은 돗토리번의 소장 접수를 막기 위해, 1696년 7월 조선국과의 통교는 대마번 이외에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막부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막부 로쥬(阿部豊後守, 大久保加賀守)에게 구상서를 올려 호소하였다. 그 결과, 돗토리번의 보고 직후(5월)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로 보내려 했던 것과는 달리, 8월에는 조선인을 바로 돌려보내도록 하라는 막부 봉서가 발급됨에 따라 안용복을 나가사키로 보내지 않고 돗토리에서 곧바로 강원도 양양으로 귀국시켰던 것이다.¹⁸⁾ 막부의 이 조치로 대마번은 대조선통교 독점이라는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다.

1717년 조선 표민의 나가사키 직소 사건은 17세기 말 울릉도쟁계가 마무리된 지 2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지만, 통교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안용복의 돗토리번 직소를 연상시키는 사건이기도 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나가사키 직소 사건의 수습과 직접 관련된 대마번 가로들이나 해결 방안을 제안한 번사들은 그들 자신이 바로 울릉도쟁계 교섭 당시의 당사자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나가사키 직소 사건’ 당시 번사들에게 의견을 구했던 구니모토(國元) 가로 4명 가운데 2명이 울릉도쟁계 당시 대막부 교섭 및 번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다. 구니모토 가로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는 울릉도쟁계 당시 조선에 사자로 파견되어 조선의 교섭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한편, 대응책으로 왜관측에 안용복의 도해 이전 조선인의 울릉도(竹嶋) 도해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우라 츠자에몬(大浦忠左衛門)은 번의 지시에 따라 1696년 안용복의 제2차 도일 때부터 1699년 울릉도쟁계 교섭의 마무리 단계까지 대막부 교섭에 임했던 에도 가로(江戸家老)였다. 특히 안용복 일행의 오키(隱岐) 도착(5월) 사실이 돗토리 번청의 조사(6.2)와 에도번저(江戸藩邸)를 거쳐 막부 로쥬(大久保加賀守)에 보고(6.13)되었다는 사실이 대마번에 전달(6.23)된 이후, 로쥬(阿部豊後守, 大久保加賀守)를 상대로 대막부 교섭에 힘썼던 인물이다. 오우라 츠자에몬(大浦忠左衛門)이 안용복의 2차 도해와 관련하여 막부에 호소했던 내용이란, 주로 통교절차의 훼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대마번의 은퇴번주인 宗義眞(宗刑部大輔)의 뜻을 반영한 것이지만, 소송 내용을 불문하고 막부가 돗토리번을 통한 안용복의 직소(直訴)를 들어줄 경우 대마번이 중개하는 대조선통교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니, 이나바(因幡)에서 곧바로 귀국을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¹⁹⁾ 통교절차라는 점에서 직소의 방치가 대마번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오우라는 막부 설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사하였다. 즉 안용복의 직소 내용을 막부가 받아들일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막부가 조선에 회답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막부의 입장만 곤란해 질 수도 있음을 들어, 안용복 일행의 소송 내용에

18) 『御用人日記』元祿 9年(1696) 6월 22일 및 8월 6일(日本鳥取縣立博物館).

19) 『因幡國江朝鮮人致渡海候付豊後守様へ御伺被成候次第并御返答之趣其外始終之覺書』宗次郎内 大浦忠左衛門의 覺(1696.7.24.)(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645).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미천한 어민의 직소란 막부를 업신여기는 무례한 처사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²⁰⁾

조선인 표류민의 나가사키 직소가 발생한 1717년이라면, 안용복의 직소(1696)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대마번의 당사자들 가운데는 울릉도쟁계 교섭 당시, 조선의 강경해진, 또는 능란해진 태도 변화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던 경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시기였다. 만약 조선인 표류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막부에 직소하게 된 이유를 그대로 조선에 전달할 경우, 울릉도쟁계 이후 강경해진(또는 능란해진) 조선의 교섭 태도 변화로 볼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올지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은 조선 표류민 박대에 대해 조선 정부가 격노(激怒)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본측이 조선 연해 주민의 단속을 요청한다 해도 신칙(申飭)을 내려줄 리가 없으며, 오히려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이 박대를 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에 대마번으로서는 식량 부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직소 자체를 ‘방종한 행동’(不届·放肆)이라 하여 문제삼았던 것이다.²¹⁾ 한편 표류민 송환 업무의 실무자라 할 수 있는 대마번 역인(長崎番役, 平田幸右衛門)은 조선 표민들의 직소와 같은 방종한 행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조선인들이 일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나가사키 직소의 경우 경상도 울산 주민이 주도했는데, 울산은 일본 표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가사키에서의 표류민 접응 수준이 조상 대대로 소문으로 전해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주변 지역의 표착민들을 선동하여 방종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²²⁾ 마츠우라 기에몬은 신분상으로 양반도 아닌 천한 하인(下々) 주제에 막부를 어렵게 여기지 않은 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는데,²³⁾ 이렇게 소송 내용보다는 직소라는 절차 자체를 부각시킨 것은 안용복 2차 도일 당시 대마번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대조선 대응 논리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717년(숙종 43)의 나가사키 직소 사건에 대해 대마번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대마번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어떠했을까? 대마번으로서는 우선 막부가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 전에 대마번의 입장을 미리 정리한 다음, 표류민 취급 및 조선에 대해 취해야 할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일본의 표류민에 대한 접응 부족이 교린·성신의 길에 어긋남을 시인하면서도, 표류민의 직소는 분수를 모르는 행위이므로 죄를 엄히 따져야 할 것이지만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으므로 질책 수준에서 해결하도록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²⁴⁾ 나아가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해줄 경우 조선에서 받는 접대와 예물 등도 대마번으로서는 상당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조선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직소 절차에 한해 문제삼을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²⁵⁾ 대마번도 기본적으로는 이 선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먼저 조선 표류민에 대해서는 6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은 각서를 내려, 표류민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였다. 대마번은 표류민들이 대마번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막부에 진정하고 있는데, 이는 막부를 두려워하지 않은데 잘못이 있으며, 나가사키 체류시에 市中(‘町内’)을 마음대로 배회한 점을 잘못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의 표류민 접응에는 定式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마번을 통해서 요구할 것을 주지시키고, 나가사키에서 대마도까지 호송하는 동

20) 『因幡國江朝鮮人致渡海候付豊後守様へ御伺被成候次第并御返答之趣其外始終之覺書』宗次郎内 大浦忠左衛門의 覺(1696.7. 24)(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645).

21) 覺(발급자 미상)(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 No.5010).

22) 『平田幸右衛門方より來狀之寫·松浦儀右衛門差出候存寄之覺書』(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716).

23) 『平田幸右衛門方より來狀之寫·松浦儀右衛門差出候存寄之覺書』(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716).

24) 雨森東五郎의 「覺」(6월 2일)(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 No.8760).

25) 覺(발급자 미상)(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 No.5010).

안 대마번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점을 표류민의 잘못으로 지적하였다.²⁶⁾

이에 대마번은 대마번사(松浦儀右衛門)의 의견에 따라 막부의 지시가 별도로 떨어지기 전에 조 기 수습 쪽으로 방향을 정한 한편, 1717년 6월에는 표류민들의 직소가 잘못되었음을 양역(兩譯, 訓導 및 別差)을 통해 예조가 아닌 동래부사에게 주지시키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 지 않도록 동래부로 하여금 해변가의 어민을 대상으로 분부(觸書)를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²⁷⁾ 이어서 8월에는 예조 및 동래부 앞으로 서계를 보내 왔다.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義方 奉書

朝鮮國禮曹大人 閣下

剝棗伏惟興居珍相, 膽依曷極, 玆稟貴國慶尙道漂民一船七名, 全羅道漂民三船四十五名, 向在長崎放肆, 行徑聞之驚駭, 顧蠢氓所爲, 未必深究, 雖然交隣之誼以無弊爲要, 因悉事由于萊府, 曲加聽察, 務申嚴飭, 則至幸馳呈²⁸⁾ 札用係, 此意萬祈體諒, 肅此不備.

享保二年丁酉八月日²⁸⁾

위는 대마번 사자(淺井喜內)가 예조참의 앞으로 가져온 대마번주의 서계이다. 상대가 예조참의 인 만큼, 경상도 표민을 중심으로 한 조선 표민 52명이 나가사키 봉행소에 직소한 것을 ‘徑聞’으로 표현하는 등, 함축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식량부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미천한 백성(蠢氓)의 ‘방종한 행위’(放肆)였음을 지적한 한편, 조일 양국의 교린 유지를 위해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서계의 말미에도 있듯이 자세한 요구사항은 동래부사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표착지에서의 접응 규정은 정해진 규칙이 없어 표착지에서 임의로 지급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그럼에도 표민들이 난출하여 봉행소에 식량 부족을 ‘고소’함으로써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연해 지방에 엄칙을 세워주도록, 그리고 이를 조정에 계문(啓聞, 전달)해서 선처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왔다.²⁹⁾

요컨대, 최종적으로 1717년 직소 사건의 대조선 통보 시 대마번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조선인 표류민들이 제기한 식량 부족에 대한 진위 여부가 아니라, 대마번을 통하지 않고 막부에 직접 고소했다는 항의 절차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그리하여 대마번은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자로 하여금 동래부가 중앙에 계문할 때까지 왜관에 체류할 것을 명하였다.³⁰⁾

26) 『分類紀事大綱』 23, 「享保二丁酉年漂民共長崎御奉行所江直訴ニ出候事」 6월 22일 申諭覺書.

조선과 일본은 曆法체계가 달랐으므로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다. 조선력과 일본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양국의 날짜를 명기하되, 같은 경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용 사료의 날짜를 인용하였다. 曆의 대조는 『三正綜覽』(舊日本內務省地理局, 1932)을 참고하였다.

27) 『分類紀事大綱』 23, 7월 20일.

28) 『兩國往復書牘』57「告漂民在長崎放肆之書」(日本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29) 『兩國往復書牘』57「告漂民在長崎放肆之書」의 副書(日本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대마번이 조선인 표류민의 직소를 제멋대로의 방종한 행동으로 간주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막번제 하의 표류민 송환 방침에 비추어 볼 때, 표착지 영주는 개인적으로 인도적 배려에서 표류민에게 의복과 식량을 지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표류민에 대한 지급 규정이 막부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류민들이 부족함을 호소한다 해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표류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가사키에 있는 대마번주 소(宗)씨의 가신(長崎聞役)을 통해 나가사키 봉행(막부)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조선 표류민은 대마번측(長崎聞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朝鮮方 毎日記 享保 2년(1717) 8월 16일(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1168).

30) 『分類紀事大綱』 23, 8월 16일.

『漂人領來差倭膳錄』권5, 347~356쪽.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우선 동래부의 양역(훈도·별차)이 9월 7일 대마번주 서계의 사본을 동래 부사에게 보인 후 원본의 접수 여부를 통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마번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결국 원본을 접수한 후 9월 16일에는 조정에 보고(啓聞)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표민의 직소 사건을 둘러싼 조선 정부의 논의는『왕조실록』이나『비변사등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표류민의 처벌은 결정되었다.³¹⁾ 그리하여 10월에는 조선측 답서의 사본이 왜관에 전달되었는데, 동향사(東向寺)³²⁾가 음미한 결과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마번에 접수되었다.³³⁾

이때 예조참의 명의로 작성된 조선측 답서는 다음과 같았다.

朝鮮國禮曹參議沈 宅賢 奉復

日本國對馬州太守拾遺平公 閣下

槎便帶械，就悉動止，珍毖傾慰倍品，第我國漂氓作拏於貴邦長崎公廨，有此專价相報聞來，極可驚駭，即令該道另加懲治，亦當更飭沿海列邑，俾絕後弊矣，統希盛亮，肅此不備。

丁酉年九月 日

禮曹參議沈 宅賢³⁴⁾

예조참의(沈宅賢) 명의의 답서에는, 조선 표민의 나가사키 봉행소(長崎公廨) 직소에 대한 사과의 뜻을 대마번에 정식으로 전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변가의 어민에게 경계를 내리겠으며, 소요를 일으킨 표류민은 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대마번은 표착지에서의 식량 부족에 대해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그들의 고난을 덜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에도,³⁵⁾ 접응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선인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다. 그 대신 항의 절차에 대한 잘못에 초점을 맞춰 조선에 사실을 왜곡 전달하는 한편, 왜관 관수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는 조선에 대해 서계에 기재된 ‘표류민 처벌’ 및 ‘해변 어민에 대한 경계령 발동’이라는 대마번의 요구가 대마번 스스로의 것이라는 것을 조선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까지 한 바 있다.³⁶⁾ 이는 대마번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막부의 의사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도리어 조선인 표류민들이 귀국한 후 조정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마디로, 1717년 나가사키 직소 사건의 경우, 조선인 표류민들의 막부에 대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의 2차 일본 도해(1696) 당시 ‘막부 직소의 사전 차단’이라는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막부의 조치 이전에 대마번이 선제적으로 ‘통교 절차 훼손’ 부각이라는 대조선 및 대막부 교섭술을 발휘한 결과, 조선인 표류민의 직소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되었다. 그 결과 막부 차원에서의 식량 부족 등, 표류민 접응에 관한 어떠한 해명이나 개선책도 없었다. 그 대신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조선 표민의 직소에 대한 조선측의 사과를 예조참의의 정식 외교문서(서계)로

31) 예조참의(沈宅賢) 서계(국편 소장 서계, No.3204).

『邊例集要』 권3, 漂人, 174~175쪽.

『漂人領來差倭謄錄』 권5, 347~356쪽.

32) 東向寺는 왜관 내의 書僧으로 조선과 대마번간에 왕래하는 문서를 검열하였다.

33) 『分類紀事大綱』 23, 「享保二丁酉年漂民共長崎御奉行所江直訴ニ出候事」 9월7일·9월16일·10월 15일.

34) 예조참의(沈宅賢) 서계(국편 소장 서계, No.3204), 『同文彙考』 권3, 漂風 3, 2354~2355쪽.

35) 雨森東五郎의 「覺」.

36) 「畢竟彼國と御和交被取結、今に至御誠信之驗著相見候者、漂民を御丁寧ニ被仰付、速ニ被送返候處に而、百年以來無何事相濟來候儀に候」(池内敏, 「天明四年長州惡黨漂民一件」(『日本歴史』 545, 1993, 69쪽)에도 있듯이, 대마번은 표류민 송환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조일관계가 순탄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불상사로 인해 표류민의 송환이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 같다.

받아냄으로써, 대마번으로서는 이 직소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대조선 통교 독점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선 표민의 직소는 1802년에도, 1818년에도 더 있었으나, 조일간의 현안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먼저, 1802(순조 2)년에는 자료 부족으로 출신지 및 표착지를 알 수는 없으나, 조선인 표류민의 배를 대마번이 해선(解船)하여 송환한 적이 있었다. 표선이 매우 낡았기 때문에 조선인 표류민들은 직접 나가사키 봉행소(막부)에 표선의 수리를 요구하였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가사키에서는 표선의 수리를 거절하였다. 대마번은 조선인 표류민의 요구 자체를 방종(不埒)한 것으로 취급했지만, 호송 도중 조선 표민에게 ‘繩’을 사용했다든가라는 사항은 보이지 않으며, 표선은 대마번이 대신 고쳐서 대마도까지 오게 되었다. 이후 조선인 표류민은 자신의 표선으로 귀국할 것을 대마번에 청원하였으나, 배가 워낙 낡아서 결국은 표류민의 안전 송환을 위해 대마도에 이르러 해선(解船)하여 귀국시켰다.³⁷⁾

다음으로 1818(순조 18)년에는 1817년 치쿠젠(筑前州) 大島에 표착한 함경도 洪原人과 전라도의 승려 27명이 나가사키로 회송되어 왔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배의 解船을 나가사키의 대마번 사무소에 요구하였다.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대마번이 거절했는데도, 표류민들은 듣지 않고 몇 사람이 직접 나가사키 봉행소로 가서 진정(直訴)한 소동이 있었다. 대마번은 당시 대마도를 방문 중이던 조선의 도해역관 일행에게 사이한(裁判) 명의를 각서를 보내 이를 알리는 한편, 6월 11일에는 왜관 관수(平田帶刀)에게 ‘不埒’의 세목을 써 보냈다. 조선인 표류민이 나가사키 소재 대마번 사무소의 배 및 番所의 시설에 손상을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곳 役人으로부터 받은 약을 의사의 눈앞에다 던져 버리고 표류민 숙소를 나와 상자 등의 물건을 팔고 돌아다니며 싸움을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³⁸⁾

1817년 함경도 덕원인의 나가사키 직소에 대한 수습에서도 대마번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조선인 표류민이 왜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대마번을 무시한 채 막부에 직접 항의한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선과 막부 양쪽의 문책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1717(숙종 43)년 나가사키 직소 이후 대마번이 취해 온 일관된 해결방법이라 하겠다. 1802년 및 1817년의 송환 마찰에 대해 조선측의 항의나 유감이 반영된 서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송환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조선측 서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대마번의 표류민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1795년 조선 표선의 漕捨 사고와 대마번의 대응

1795(정조 19)년에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측 사료에 의하면 조선의 표선이 포구에 닿기도 전에 ‘바다로 쫓아내 버린’(漕捨) 사건이었다.³⁹⁾ 일단 조선인의 표착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마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인데다 표선을 바다로 내쫓아 버린 일은 초유의 사태인지라 대마번으로서는 일본 내에서의 이러한 상황을 조선에 어떻게 알릴지가 고민거리였다고 할 수 있다.

37) 『分類紀事大綱』 11, 「漂民駕船解船」(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4562).

38) 앞의 사료, 「漂民駕船傳聞流失之一件」.

39) 『分類紀事大綱』 10, 「寬政七乙卯年朝鮮人日本地江漂着之所先方ニ而取計方不埒之一件」(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4556) 및 「寬政六甲寅年冬朝鮮國咸鏡道之內德原之者五人乘ニ而長州湯玉浦江漂着之處最所ニ乘掛候處ニ取計候依往復書狀控」(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091).

1795년 일본의 長州 湯玉浦에 표착한 함경도 덕원인들은 그곳에 표착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곳의 포구에 배를 대려 했으나, 구제받지 못하고 바다로 내몰렸다. 그러다가 겨우 湯玉浦에 표착하게 되자 이를 대마번의 역인에게 호소했던 것이다. 이들이 바다로 다시 내쫓긴 이유를, 1784년 長州의 玉江浦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의 난폭한 행동이 표착지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⁴⁰⁾ 의사 불통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¹⁾

그러나 표착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선인 표류민을 구제하여 나가사키까지 호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표착지 영주의 부담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는 해당 포구의 주민이 짊어져야 했으므로, 주민들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흔하지는 않지만 조선인 표류민을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은 경우가 가끔 있었다.⁴²⁾ 더군다나 長州라고 하면 일본 내에서는 대마도 다음으로 조선인이 많이 표착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그들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외국인으로서의 조선인에 대한 호기심도 이미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다. 표류민들은 배의 침몰을 우려하여 실고 있던 물건을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표류민은 그 신분이 대개는 미천한 어민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타고 온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이란 선상생활에 필요한 보잘것 없는 생활필수품이거나 漁具로서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다. 대마번 사료에는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표선을 구제하려다 일본선이 침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⁴³⁾ 물론 위와 같은 상황도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나, 조선인 표류민을 그들의 영지 내에 두어 봤자 마찰의 실마리만 제공하는 부담의 대상으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던 듯하다.

대마번의 입장에서 볼 때 1795(정조 19)년의 ‘漕捨’는 다른 번에서 일어난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만큼 그 방법에 고심했던 것 같다.

그런데 1795(정조 19)년의 사고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조선인 표류민의 제멋대로의 방종한 행동이나 무리한 요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표착지 주민이 조선인이 타고 있던 표선을 구제하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로 내쫓아버린 ‘漕捨’가 그 원인이었다. 이것은 대마번도 일본의 접응 소홀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漕捨’건은 어떻게 수습되었을까?

나가사키로부터 조선의 표류민이 대마도에 도착하자, 대마번에서는 표류민들에 대한 경위를 다시 조사하였다. 그러나 나가사키에서 조사한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이 없자, 대마번에서는 막부와 조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먼저 막부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표류민을 구제하지 않은 지역의 영주는 중죄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漕捨’ 경위를 막부에 보고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가 관심사였다. 그리하여 일본측의 ‘漕捨’ 이유를 언어불통 및 일기 불순으로 구조선까지 침몰될 염려가 있었던 것에 비중을 두었다. 또 보고한다 하더라도 막부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표류민을 내몰았던 지역의 거리 및 방향을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조선에 대해서는 만약 이 사고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여 조선에 송환했을 때, 부산진이나 동래부에서 표류민을 인수하면서 표류 경위를 묻게 되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⁴⁴⁾ 즉 표류민을 구제하지 않고 바다로 다시 내쫓아 버린

40) 池内敏, 「天明四年長州惡黨漂民一件」 (『日本歴史』 545, 1993).

41) 木部和昭, 「朝鮮漂流民の救助・送還にみる日朝兩國の接觸」 (『史境』 26, 1993).

42) 岡田信子, 「近世異國漂着船について—特に唐・朝鮮沿の處遇—」 (『法政史學』 26, 1974).

43) 『寛政六甲寅年冬朝鮮國咸鏡道之内德原之者五人乗二而長州湯玉浦江漂慮之處最所二乗掛候處二取計候依往復書狀控』.

44) 『分類紀事大綱』 10, 「寛政七乙卯年朝鮮人日本地江漂着之所先方二而取計方不埒之一件」.

일이 동래부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됨으로써, 앞으로 일본인이 조선에 표착했을 때 조선으로 받을 박대, 나아가서는 이것이 조선과 막부간의 외교문제로 정식으로 제기되어 대마번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대마번은 조선인 표류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막부에 보고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⁵⁾ 1795(정조 19)년 막부의 老中(安藤對馬守)이 내린 법령에 의하면,

각 서

영지내의 포구에 조선의 어선 등이 표류해오는 일은 매번 있는 일이다. 그런데 포구의 어부 등이 잘못 생각하여 표류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서도 물리쳐 보호하지 않으며, 그 중에는 오히려 연안 육지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어떤 경우이건 표류 선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정성을 들여 구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영주에게 호소하는 일을 어렵게 여겨 도리에 어긋나고 자비롭지 못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다. 특히 [표착은] 異國에 대한 일이라서 더욱 어떨까 생각하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무례한 일을 듣게 되면 [표선을 구제하지 않은 곳의] 영주에게는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여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후하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규슈(九州)·쥬고쿠(中國) 지방 연안 포구의 영주에게 분부하므로 주지해야 할 것이다.

위의 奉書를 ‘半切 종이에 작성하여 대마번주에게’⁴⁶⁾

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조선인들의 표착이 빈번한 규슈(九州) 및 쥬고쿠(中國) 지방의 영주에게 표류민에 대한 구제조치 및 접응이 불충분할 경우, 막부가 이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규슈와 쥬고쿠 지방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곳의 영주들을 대상으로 표류민에 대한 구제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응분의 처벌이 막부령으로 정해진 것은 단지 구제 의무만을 규정했던 종래의 조치에 본다면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는 대마번의 요구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漕捨’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여 대마번이 더 이상의 곤경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취해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표류민이 버림받은 사실을 먼저 알고 대마번을 추궁해 오기 전에, 대마번이 먼저 왜관에 사자를 보내 양역(훈도 및 별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마번이 조선의 표류민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를 동래부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⁴⁷⁾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마번은 조선 표류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들을 더욱 극진히 대우함으로써, 표류민들로부터는 귀국한 후에 일본에서 그들이 당했던 일을 동래부의 조사에서 절대 말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다.⁴⁸⁾

45) 『寛政六甲寅年冬朝鮮國咸鏡道之内徳原之者五人乗二而長州湯玉浦江漂着之處最所ニ乗掛候處ニ取計候依往復書狀控』(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3091).

46) 원문은 다음과 같다.

書付

領分之浦方江朝鮮之漁船など漂流之儀毎度之事候、然處浦方之獵師ともなと心得違、右漂流之危難を見懸候而も放(散?)而差構も不致、中ニ者却而地方江不近寄様ニ取計候儀ホも有之哉ニ候、都而漂船難儀之様子見請候ハハ、懇切ニ救可申儀勿論ニ候處、領主江訴候儀など事六ヶ數様ニ存候而、不法無慈悲成ル取計ホ有之候而者以之外成事ニ而、殊ニ異國江對候儀ニ候得者尙更如何數次第ニ候條、右之趣ニ無之様可申付候、以來不束之筋相聞候ハハ、其領主ハ不念之事ニ付嚴重之御沙汰可有之候間、精精厚く可被念入候、右之通九州・中國筋浦方有之領主江相觸候間、可被得其意候、右大奉書半切ニ御認宗對馬守江と有之
(『寛政六甲寅年冬朝鮮國咸鏡道之内徳原之者五人乗二而長州湯玉浦江漂着之處、最所ニ乗掛候處ニ取計候依往復書狀控』)

47) 『分類紀事大綱』 10, 「寛政七乙卯年朝鮮人日本地江漂着之所先方ニ而取計方不埒之一件」.

48) 앞의 사료, 1795년 3월 4일 관수 도다 다노모(戸田頼母)가 대마번(府中)에 보낸 서한.

조선의 표류민들은 대마번의 통사(通詞)를 통해 말하기를, “일본의 포구에서 ‘漕捨’당한 건에 대해서는 귀국한 후에도 결코 말하지 않겠으며, 입밖에 냈다가 동래부에서 조사가 있게 되면 고향에 돌아갔다고 해도 다시 한성에 올라오도록 할 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을 작정이며 표류민 전원이 그렇게 합의하였다”라고 하였다.⁴⁹⁾ 그러나 대마번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만일을 위해 표류민들이 부산 왜관에 도착한 후에도 부산과 동래부의 조사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도록 양역을 통해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그 결과 동래부에서는 양역의 보고만을 듣고, 표선의 ‘漕捨’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마번에 표류민 송환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도리에 어긋난 요구에 대해 사과한다는 서한까지 써주었다.⁵⁰⁾ 그 결과 조선의 예조참의(朴宗甲)가 대마번주에게 보내는 정식 외교문서인 서계에도, “표민을 구제하여 호송해온 隣誼에 감사한다”는 내용만이 아주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⁵¹⁾

대마번은 조선인 표류민의 ‘漕捨’건에 대해, 통상적인 표류민 송환 수준의 예조참의 답서를 받아냄으로써 별 시비없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동래부의 양역(훈도 및 별차)이 여러 가지로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대마번이 조선과 교섭하는데 있어서 조선 역관에게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되었건 대마번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문제, 즉 조선인 표류민의 ‘漕捨’건이 조정에 알려짐으로써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사태는 동래부 양역과의 선에서 무사히 해결되었던 것이다. 즉 대마번으로서는 대막부 교섭 및 조선 역관과의 은밀한 교섭을 통해 조선 표류민의 송환 독점이라는 기득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맺음말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은 표착해서부터 송환될 때까지 1년 안팎의 장기간에 걸친 외국생활과 항해로 인해 지쳐있었다. 이에 언어 불통, 표착지에서의 접응 문제 내지는 귀국을 재촉하다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 표착지에서의 접응은 해당 영주의 호의 여하에 달린 것이기도 했는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대마도를 비롯하여 표착다발지역에 속하는 長州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조선인 표착이란 가끔씩 경험할 수 있는 일로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었다. 대마도에서는 1824~1872년까지 111건에 이르는 조선인 표착이 있었으므로 1년에 2번 이상은 조선인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長州에서는 31건이 있었다.⁵²⁾ 이러한 지역에서는 조선인 표류민의 구호나 호송은 표착지 주민에게 있어서 정신적·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흥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취급은 자연히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조선인 표류민들은 대부분이 어민들이었기 때문에 나가사키나 대마번에서는 이들을 ‘下下之者’ 또는 ‘下賤之者’라 하여 멸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분도 있었다.⁵³⁾

49) 앞의 사료, 1795년 2월 13일 端書.

50) 앞의 사료, 1795년 3월 4일 關水 戶田賴母의 書狀.

51) 예조참의(朴宗甲) 서계(1795.4, 乙卯長州湯玉浦漂人禮曹答書)(국편 소장 서계, No.6232)

52) 池內敏, 「天明四年長州惡黨漂民一件」의 <표 2> 참조.

53) 池內敏씨는 조선인의 표착이 아주 드문 지역에서는 조선인 표류민들이 오히려 우대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표착지에서 漢詩·漢文 내지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조선의 관인층 내지는 지배계층에게 보인 호의 때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日本 臨川書店, 1998)의 제5장, 「17世紀 蝦夷地に漂着した朝鮮人」).

어찌보면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환사고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7년 및 1795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송환 자체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대마번의 입장에서는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이 막부로부터 부여받은 대조선통교 업무를 독점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자, 통신사외교와 더불어 조일간의 성신 교린을 실천할 수 있는 중심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마번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선인 표류민 송환이라는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송환사고를 축소 왜곡하는 대조선 및 대막부 교섭술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717년 나가사키 직소 사건에서는, 17세기 말울릉도쟁계 이후 강경해진 조선의 교섭 태도로 볼 때 격노한 반응을 우려하여,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일본내 표착지 및 나가사키에서의 식량 부족 사실은 은폐하는 대신, '직소'라는 통교 절차만을 부각시켜 사실의 은폐 및 왜곡 축소를 하는 교섭술을 발휘하였다.

또 1795년 사례에서는 외교일선에 있는 조선측 말단 관리들과의 유착관계에 의지하여 송환사고를 임기응변적으로 해결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그 결과 표류민 송환 만큼은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현안으로는 비화되지 않은 채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811년 통신사의 일본(대마도) 파견을 마지막으로 조일 간 외교가 단절된 이후는 물론, 19세기 후반 메이지 신정부의 수립으로 일본 내 정권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표착 조선인의 송환 만은 계속되었는데, 갈등의 계기는 내재되어 있었지만, 대마번이 조선과 막부를 상대로 벌이는 필사적인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이상)

일본 표착 조선인의 마찰과 수습을 통해서 본 조일 교린의 실태

유채연(전북대학교)

본 발표는 18세기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들이 송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과 그것을 대마도가 수습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조일 교린관계의 실상을 고찰한 연구입니다. 표류민에 관한 기존 연구가 표류 실태, 송환체제와 같은 제도사, 표류기를 통한 사례 분석, 표류민과 표착지역 주민 간의 접촉과 교류, 인식 등에 주목하였다면, 본 발표는 그동안 발표자가 진행해 왔던 표류민 연구를 바탕으로 17세기 말, 18세기 초 조일관계의 변화 속에서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사고에 대한 대마도의 대응 양상을 통해 조일관계의 실상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7세기 말~18세기 초 조선의 대일외교 전환에 대응하는 대마도의 현실 인식과 조선과 막부를 상대로 논리를 구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해당 시기의 조일관계의 전체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최근 연구 경향과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표류민 연구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 발표문의 논지를 따르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는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환사고가 조일관계에서 외교적 이슈로 부상할 것을 염려한 대마도가 적극적인 프레임 전환과 특유의 교섭술로써 전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1717년 나가사키 직소 사건과 1795년 漕捨 사고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대마도의 기민한 대응이 17세기 후반 조선의 대일교섭 태도 변화로 인해, 구체적으로는 1696년 안용복의 ‘막부 직소’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를 학습한 결과에서 나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환사고에 대한 대마도의 임기응변적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일 간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고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조선인 표류민 송환을 완수함으로써 19세기 중반까지 조일 간의 성신 교린을 실천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하였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시기 ‘성신 교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1717년, 1795년 송환 사건을 처리하는 대마도의 대응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로써 조선을 기만하는 태도는 오히려 ‘성신 교린’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발표문 9쪽 『죽도기사』에서 조선의 교섭태도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대마번이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밀어부침으로써 당시 조일관계에서 추구하던 외교이념 내지는 명분인 “성신”이 훼손될 경우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아메노모리 호슈도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접응 부족이 교린, 성신의 길에 어긋남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앞에 내세우는 성신, 교린과 현실에서 송환사고를 처리하는 대마도의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조선후기 조일관계가 성신 교린/선린 우호로 정리되고 있지만, 현실은 명분(관념)과 실리 사이를 오고가는 치열한 현장이라는 것을 발표자도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발표문에서는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마찰 사례로 <표 1>을 제시하였는데, 시기적으로 1704년 ~ 1847년까지 20건으로 정리됩니다. 1640년대 조일 간의 표류민 송환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18세기

에 들어와 송환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 원인이 있을까요? 사료의 제한에서인지, 혹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18세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본 발표문에서는 송환사고에 대해 대마도가 조선과 막부에 선제적으로 교섭술을 발휘한 결과 조선인 표류민의 직소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그 결과로 막부 차원에서의 표류민 접응과 관련된 개선책이 없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대마도가 송환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부의 개입으로 대마도의 대조선 통교 독점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전개에서 막부의 입장과 역할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1795년 사례에서는 대마도의 보고와 요청으로 막부에서는 표류민 구제조치 및 접응이 불충분할 경우 막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법령을 내림으로써 강력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마도가 막부를 상대로 어떠한 교섭을 했는지, 막부의 조선인 표류민 정책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4. 대마도가 송환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방관적이고, 무기력한 입장을 취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기에 동래부의 역관뿐만 아니라 동래부사까지도 설득해 버리는 대마도의 외교술은 매우 뛰어나게 보입니다. 당초 대마도는 조선의 중앙 조정에서부터 동래부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한 대처가 매우 능란해졌고, 조선 정부가 표류민 박대에 격노할 것이라고 염려한 것에 비해 조선의 송환 사고에 대한 입장은 소극적으로 비춰집니다. 조선에서는 국교 재개가 된 이래 표류민에 대한 문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마도의 교묘한 외교 계략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조선 정부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배경으로 조선 역관과의 은밀한 교섭과 유착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관에 대한 시각은 1811년 통신사 파견 교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역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외교 현장에서의 역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동래부와 왜관을 왕복한 실무 문서에 대한 밀도있는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외교 현장에서의 역관의 실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발표]

근대 성립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비교

발표: 서경순 (부경대학교)

토론: 현명철(전 학회 회장)

근대 성립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¹⁾의 비교

서경순 (부경대학교)

1. 머리말

근대는 해양의 유용성을 극대화한 시기였다. 생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농산물보다 수산물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구미의 일련의 체제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구미 각국에서 시행하는 행사 등에 국가가 앞장섰다.

근대 유럽에서는 만국박람회를 개최하여 각국에서 공업, 기계, 미술품 등 출품 전시하여 자국의 선진 기술력 등을 과시하였다.

메이지 정부가 유럽의 만국박람회에 공식적으로 출품한 것은 1873년 오스트리아 빈 만국박람회이며, 이 후부터 지속적인 출품을 하였다. 박람회 참가단은 각계의 관료급 국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유력 상공업인들로 구성되었다. 수산분야에서는 최초 다나카 요시오와 세키자와 아케키요가 참가하였다. 두 사람은 에도시대를 이어서 메이지시대에 걸쳐서 당시 수산계를 대표하는 관료급 국가공무원들이었다.

최초 유럽의 만국박람회를 시찰했던 일본 대표단들은 전시 산업 기계와 그 기술력에 대하여 상당한 문화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 수산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첫 번째는, 편망기계이다, 당시 동양권에서는 찰이나 벧단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영성하게 그물을 짜서 사용하였는데 편망기계는 면사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촘촘하게 그리고 단시간에 짤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인공부화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단들이 박람회 시찰을 통하여 수산물의 가치가 국가재원의 큰 분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이후 수산진흥사업은 메이지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되었다.

우선 1881년에 식산흥업을 주관하는 중앙관청인 농상무성(農商務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농상무성 산하에 수산과를 두고 근대 학문을 익힌 수산 지식인을 임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수산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도 국가의 수산진흥에 관심이 모여져 나가이 요시노스케(永井佳之輔)²⁾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과 농상무성의 수산관료들이 뜻을 함께 하여 1882년 2월 대일본수산회라는 일본 최초의 수산단체가 결성되었다.

농상무성에서 실시한 첫 번째 수산진흥사업은 1883년 개최된 제1회 내국수산박람회이다. 박람회를 통하여 일본 전역에서 출품된 어선, 어구, 어법, 수산물제조법, 양식법이 한자리에서 모여 전시되었으며 출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내국수산박람회는 일본의 전통 어구, 제조법, 양식법 등에 대한 우수한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상무성은 수산박람회를 마친 후 일본 해역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역을 5개로 나누고 각 해역에 근대학문을 익힌 수산기사를 파견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학리에 근거한 수산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1순위는 수출품에 있다는 사실에서 수출품확대를 계획하였다. 당시 일본 수산물 수출시장은 중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구미시장 개척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 이 글은 필자의 학회지 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한 글이다.

2) (生年: 生没年不詳), 明治13(1880)年 東京 水産社를 設立하고 편집장인 中尾直治와 民間 第1号(일본 최초 수산잡지) 『中外水産雜誌』를 同年 7月 創刊하였다, 1882년 결성된 大日本水産會의 발기인 중 1人이다.

구미시장은 우선 언어소통과 아울러 구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무역법과 국제무역 서류 서식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 이를 위한 수산교육기관 설립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대일본수산회에서 학교설립을 주도하였다. 1889년 1월 20일 일본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를 개소하였다. 이 교육기관은 농상공부(정부)와 대일본수산회(수산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 수산진흥사업에 앞장섰다.

또한 수산진흥사업에서 가장 근본은 무엇보다 수산관계자들이다. 이들에게 제공할 수산전문서적의 필요성에 의해 일본수산지 편찬사업을 실시하였다.

농상공부는 근대학문을 익힌 수산기사(기수)를 편찬담당원으로 구성하여 1886년 편찬 착수하여 거의 10년간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1895년 원고를 완성하였다. 당시 편찬담당원은 농상공부 관료이자 수산전습소의 교사 또는 대일본수산회의 임원 등을 겸임하고 있던 수산계를 대표하는 전문인들이었다.

일본수산지는 『일본수산포채지(日本水産捕採誌)』, 『일본수산제품지(日本水産製品誌)』, 『일본유용수산지(日本有用水産誌)』 3부작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수산지』가 편찬 간행되었다. 편찬사업은 일본정부가 주도하였다. 일본정부가 『한국수산지』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에 한국 내에 통감부를 설치(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하여 1906년 1월부터 본격적인 한국통계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수산분야의 경우는 1908년 『한국수산지』 편찬사업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수산지』 편찬은 통감부 수산과장 이하라 분이치가 총괄하였으며, 편찬 담당자는 한국인 1명을 제외하고 22명 모두 일본인들로 대부분 일본 최초의 수산교육기관인 수산전습소를 졸업한 일본정부의 공무원들이었다.

『한국수산지』 편찬 목적은 부국에 있으며, 이에 한국의 열악한 수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재원을 든든히 하겠다는 취지를 서문에서 밝혔다. 이 취지는 일본수산지의 서문에서도 밝혀져 있다. 그러나 두 수산지는 구성은 물론이고 기록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일본수산지는 근대 일본의 수산백과사전에 해당되는 반면에 『한국수산지』는 수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각 조사 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 수산 경제 등을 조사기록한 역사지리 수산경제 종합 정보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수산지』는 한국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한국에서 간행된 문헌이다. 그런데 왜 전체 내용이 일본어로 기술되어있을 까? 한국의 부국을 목표로 한국 수산진흥을 위해 편찬 간행된 『한국수산지』의 독자층은 과연 누구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수산진흥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수산정책이 한국 수산진흥정책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한국의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국수산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일본 수산진흥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2. 메이지시대의 수산진흥정책

1) 수산진흥정책의 발단

(1) 만국박람회(萬國博覽會) 참가

일본 정부가 구미 만국박람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한 것은 1873년 오스트리아 빈 만국박람회이다. 수산분야의 책임사무관은 다나카 요시오(田中芳男)³⁾와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⁴⁾이며 이들은 물고기 인공부

3) 田中芳男(1838~1916), 박물학자, 물산학자, 농학자, 원예학자, 男爵, 信濃國下伊那郡飯田中荒町(現,長野縣)에서 출생. 메이지시대 上野公園을 설계(2대 박물관장 역임)하였고, 동물원, 식물원을 구상하였다. 일본 박물학의 개척자이며, 「博物館」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 1873년 빈 만국박람회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 등에 참가하였다. 元老院議官、貴族院議員、대일본산림회 회장、일본원예회 부회장 역임 등 일본 식산흥업 지도 및 기초 박물학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일본수산지 3부작(1886~1895)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4) 關澤明清(1843~1897)는 幕末~明治期の 近代水産의 선구적 지도자, 加賀金澤藩 출신, 蘭學을 익혔으며, 藩命으로

화법에 대한 지식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유럽식 편망기계를 일본으로 들여왔다. 당시 일본대표단은 박람회 시찰에서 구미 선진 문화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후 만국박람회 출품은 계속 이어졌으며, 구미의 통조림 및 어유 제조법 등 선진 지식과 기술을 입수하는 한편, 통조림 기계를 비롯한 구미 선진 기계가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무라타 타모츠(村田保)⁵⁾는 법률 제정분야의 관료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유학 중에 만국박람회에 참가한 이후 수산가치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 귀국한 후에 대일본수산회를 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수산법률 제정, 수산강습소 설립, 수산박람회 개최 등 국가의 수산진흥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2) 농상무성(農商務省) 설치

1881년 4월 7일 메이지정부는 농업·임업·수산업·상공업 분야의 여러 행정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식산흥업을 주관하는 중앙관청인 농상무성을 설치하였다. 이 관청 산하의 농무국 내에 수산과(1885년 1월 수산국으로 명칭 변경)를 설치하여 수산 업무를 전담하였다.

일본 행정기관에서 수산(水産)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877년 내무성 권농국에 수산계가 설치된 것이 최초이다. 이후에 농무국 수산과(1881), 대일본수산회(1882), 수산박람회(1883), 수산전습소(1888) 등과 같이 일본에서 수산이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농상무성 수산과(이후 수산국)는 근대학문을 익힌 수산전문가를 채용하여 국가 수산진흥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3) 대일본수산회(大日本水産会) 결성

대일본농회(大日本農會, 1881.4.5.)·대일본산림회(大日本山林會, 1882.1.12.)·대일본수산회(大日本水産會, 1882.2.12.) 등 각각 단체가 결성되었다. 대일본수산회는 당시 농상무성의 대보(大輔, 차관)였던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⁶⁾가 초대 간사장을 맡았다. 대일본수산회는 최초 독일의 어업조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1880년 독일 수산박람회의 책임사무관으로 파견된 마츠바라 신노스케와 그곳을 방문한 무라타 다모츠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수산진흥사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수산단체의 발기인들을 살펴보면 1880년 도쿄에서 수산사(水産社)⁷⁾를 설립하고 같은 해 7월에 일본 최초의 수산잡지인, 『중외수산잡지(中外水産雜誌)』를 창간한 나가이 요시노스케(永井佳之輔)를 비롯한 그의 직장동료 나카오 나오히(中尾直治)·야마모토 요시카타(山本由方)·하치야 마사카츠(蜂谷昌勝)·시쿠토 하야타(宍戸隼太)·가와무라 유키오(河村幸雄)이다. 이 중 야마모토는 농상무성 관료이자 수산 기수로 1886년에 일본수산지 중 『일본수산제품지』의 편찬담당자 중 1인이다.

대일본수산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한 단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英国 留学, 귀국 후 메이지 정부의 水産官僚로 출사하였다. 農商務省의 1號 水産技師가 되어, 일본에서 최초 송어 인공부화에 성공하였으며, 미국식 巾着網에 의한 정어리(멸치) 어획법과 미국식 포경법을 시도·지도하였다. 駒場農学校長, 초대 水産傳習所長, 東京農林學校 教授 등을 역임하였다.

5) 村田 保(1842~1925), 메이지시대 法制官僚, 정치가, 元老院議員, 貴族院勅選議員, 수산전습소 2대 소장, 大日本水産會 副總裁, 大日本塩業協會 初代會長, 大日本缶詰業連合會 初代會長 역임하였다. 1871~1873년 영국 유학(형법), 1880~1881년 독일 유학(行政裁判法, 憲法, 自治, 刑法)을 하였으며 일본의 民法, 商法, 民事訴訟法 등 법률 제정에 힘썼으며, 독일 유학 당시 구나이스트와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국수산박람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수산진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2년 대일본수산회가 설립되었을 때 어업법률 학예위원으로 촉탁되었다. 1889년 수산전습소 소장, 1895년 水産調査會 會長, 1896년 제2회 수산박람회 심사관장, 1898년 罔業조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1912년 韓国併合記念章을 수여받았다.

6) 品川彌二郎(1843~1900), 정치가, 1870년 독일·영국 유학, 内務大書記官, 内務少輔, 農商務大輔, 駐獨公使, 宮内省御料局長, 樞密顧問官 등을 역임하였으며, 1884년 子爵이 되었다. 大日本水産會, 大日本農會, 大日本山林會의 3 단체의 초대 간사장이었다.

7) 1880년 東京 本郷春木町에서 설립되었다.

초대 회두(이후 총재로 개칭)가 고마츠노미야 아키히토(小松宮彰仁)⁸⁾ 친왕으로 왕족이다. 그리고 간사장은 앞에서 언급한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이며, 간사 및 의원은 농상무성의 기사·기수 및 지역 유지들이며, 회원은 전국의 수산업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대일본수산회는 왕족, 고위층 관료 및 수산 기사(기수) 등이 임원으로 구성된 반관반민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대일본수산회를 대표하는 간사장은 모두 고위층 관료 중에서 선출되었다.⁹⁾

<표 1> 대일본수산회 간사장(제1~7차)

구분	성명	경력	취임
1차초대 간사장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	농상무성 대보	1882년 2월
2차 간사장	요시다 키요나리(吉田清成) ¹⁰⁾	원로원 의관	1886년 4월
3차 간사장	야나기 나라요시(柳橋悦) ¹¹⁾	해군, 귀족원	1888년 4월
4차 간사장	무라타 타모츠(村田保)	法制官僚, 귀족원	1891년 1월
5차 간사장	다나카 요시오(田中芳男)	농상무성 대서기관	1896년 3월
6차 간사장	무라타 타모츠(村田保)	法制官僚, 귀족원	1900년 6월
7차 이사장(회장)	마키 나옴사(牧朴眞) ¹²⁾	농상무성수산국장	1909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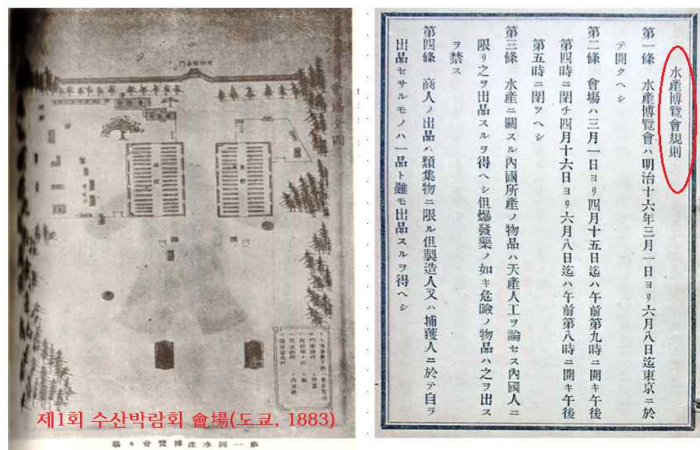
2) 수산진흥정책의 전개

(1) 내국수산박람회(內國水産博覽會) 개최

일본수산발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국수산박람회이다. 제1회는 1883년 도쿄 우에노공원에서, 제2회는 1897년 고베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주관부서는 모두 농상무성이다.

- 제1회 수산박람회

제1회 수산박람회는 도쿄 우에노공원에서 1883년 3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개최되었다. 출품을 통하여 일본 각지의 전통 어구 어법, 제조법, 양식법 등이 한자리에 집합 전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각 지역의 수산관계자들의 정보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다. 박람회는 일반인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당시 일반 입장권은 2전(錢)¹³⁾이었다.¹⁴⁾



<그림 1> 제1회 수산박람회 會場 및 수산박람회 규칙

8) 小松宮彰仁(1846~1903), 왕족, 1890년 육군대장 승진, 국제친선을 목적으로 1886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 방문, 1902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메이지 천황의 대리자격으로 참석, 일본 적십자사, 대일본수산회, 대일본산림회、大日本武徳會、高野山興隆會 등 각 단체의 총재를 역임하였다.

9)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여촌 형성』, 『도서출판 보고사』, 2002, 76쪽.; 片山房吉, 『大日本水産史』, 有名書房, 1983, 1031~1032쪽.; 大日本水産會, 『大日本水産會百年史』前編, 1982, 34~35쪽, 503쪽(1차, 4차의 취임된 月의 기록이 달라서 본고에서는 『大日本水産史』의 기록을 기준으로 했다.

10) 吉田清成(1845~1891), 幕末 薩摩藩士, 메이지시대, 外交官·農商務官僚, 1865년 영국·미국 유학하여 航海學을 배웠지만 이후 政治學、經濟學을 수학했다. 1887년 子爵을 수여받은 후 같은 해 元老院議員이 되었으며, 다음해(1888) 추밀원 고문관이 되었지만 병으로 사망(47세), 현재 「吉田清成文書」는 京都大学 日本史研究室에 보관되어 있다.

11) 柳 橋悦(1832.10.8~1891.1.15), 일본 해군(최종계급 : 海軍少將), 和算家(일본 전통 수학자), 정치가, 측량학자이다. 1855년 長崎해군전습소에서 네덜란드식 항해술과 西洋 數學에 기초한 측량술을 익혔으며, 1870년 해군, 1876년 수로국장, 1878년 구미 시찰, 1882년 대일본수산회 명예회원, 1888년 元老院議員, 1890년 貴族院議員 등을 역임하였다. 明治時代 영국 해군과 공동으로 해양을 측량하여 일본 해양측량의 제1인자로 불렸다. 일본의 측량체제 정비 및, 일본 각 연안의 해도를 작성하였다. 현재 「일본 수로 측량의 아버지」로 불린다.;

<https://ja.wikipedia.org/wiki/%E6%9F%B3%E6%A5%A2%E6%82%A6>(검색일:2020.11.18).

12) 牧 朴眞(1854.4.26~1934.4.29), 일본 관료, 정치가, 실업가, 県知事, 衆議院議員, 1898년 11월 農商務省 수산국장, 大日本水産會 理事長, 日本缶詰協會長, 大日本水産工芸協會長, 大日本水産會 副總裁 등 역임하면서 메이지 정부의 수산진흥정책에 주력했다.

수산박람회를 개최한 목적은 일본 각 지역에 남아있는 어구와 어법 그리고 수산물의 제조법과 양식법 등에 대한 실물을 확인하여 우수한 것을 발굴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우수한 것을 좀 더 보완해서 다소 뒤 떨어진 지역에 보급하는 등 종래 어업의 결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수산 개량을 목표로 삼았다.

제1회 수산박람회 출품은 어업 6,009건, 제조 7,817건, 양식 260건, 도서 495건으로 총 14,581건이었다. 이 중에서 1등 2건, 2등 15건, 3등 76건, 4등 168건, 포상 847건으로 모두 1,108건을 선정하였다.

포상수여식에 메이지천황이 직접 행차하여 격려하였을 정도로 당시 수산진흥사업은 메이지 정부의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1회 내국수산박람회 개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일본 전역에 남아있는 전통 어구 및 어법 그리고 수산 제법 등에서 우수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수산박람회의 출품에 대한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이에 구미의 선진 지식 정보를 보충하여 일본의 수산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일본수산지 편찬사업을 기획하게 된 토대가 마련되었다.

- 제2회 수산박람회

제2회 수산박람회는 1896년 4월 20일 내 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농상무대신 에노모토 타케아키(榎木武揚)에 의해 칙령 제149호를 공포하여 1897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효고현 고베시에서 개최하였다. 출품 전시장의 위치는 당시 고베시 구 스노키쵸 7쵸메(神戸市 楠町 7丁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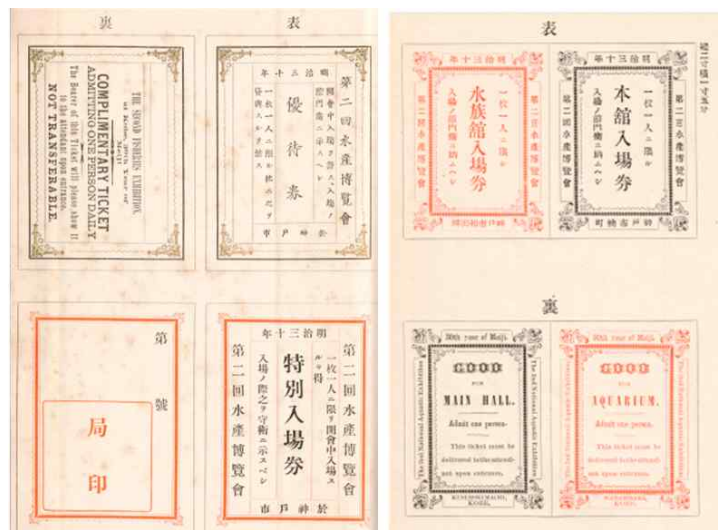
제2회 수산박람회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은 고베시 효고 와다미사키(神戸市 兵庫 和田岬)에 대형수족관을 설치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 수산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¹⁵⁾

제2회 수산박람회 관람자는 총 39,555명이며, 하루 평균 4,292명이 왕래하였다. 관람자들은 대부분이 통상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하였다. 왕족 및 귀빈·관료 계층·학교장 그리고 외국의 공사관(영사관)의 관계자 등 내빈들을 위한 우대권과 특별입장권과 군인·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입장권도 발행하였다. 학생들은 수산강습소(수산전습소)를 비롯하여 상선학교, 제국대학, 상업·공업·의학·약학·농학 등 다양한 학교에서 참관하였다.

제2회 수산박람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포상을 수여한 출품 8,702건 중에 대만총독부 출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청일전쟁(1894~1895)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1895년에 대만을 할양받은 후 식민지 통치를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산조사 시행

농상무성은 1883년 제1회 수산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전국의 수산 현황을 파악한 이후 수산물 수출품 확



<그림 2> 제2회 수산박람회 입장권

13) 1880년 쌀 1되 가격이 평균 10.5錢(현재는 약 10,000원)이다. 입장료는 쌀 1되 가격의 1/5에 해당된다<참고: <http://sirakawa.b.la9.jp/Coin/J077.htm>-明治~平成 値段史>.

14) 片山房吉, 『大日本水産史』, 有名書房, 1983, 494~495쪽, 500쪽.; 大日本水産会, 『大日本水産会百年史』 前編, 1982, 46쪽.; <水産博覽會規則> 제1조·제2조의 내용이다.

15) 農商務省 水産局, 『第二回水産博覽會事務報告』, 1898, 緒言, 3쪽.; 神戸市 楠町 7丁目에는 1897년 제6회 關西府縣聯合會共進會를 개최한 會場의 부지 12,192평과 건물에 대하여 兵庫縣道知事와 제2회 수산박람회사무국 사이에 1897년 6월 20일부터 1898년 3월 31일까지 무료 차용 계약을 체결한 후 출품진열 장소와 사무국을 보완, 증축하였다(『第二回水産博覽會事務報告』, 70~71쪽).

대를 위하여 일본의 최고의 수출시장인 중국 현지에 수산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산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중국 수출품 산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구미 수출시장 개척 또한 계획한 후 1888년 4월 15일 구미 각국에서 시행되는 수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참고해서 학리(學理)에 근거한 수산조사 계획을 세웠다. 조사방법은 예찰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였다.

수산예찰조사는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일본 해역을 5해구(海區)로 나누어서 각 해역에 담당원을 파견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해안의 지세, 해저의 지형, 지질, 조류(潮流), 어획물의 종류, 생태, 어장, 어획방법 등 각 해역 생물의 종류 및 성질, 효용, 발육 시기, 이동, 난자(卵子), 치어(魚兒), 질병, 어구, 어법 등 수산물 및 어업 상황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찰조사가 마무리되자, 1893년에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농상무대신 고토 쇼지로의 칙령에 의해 농상무성 내에 수산조사소를 설치한 후 수산예찰조사 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실시하였다.

수산예찰조사 및 수산조사소에서 실시한 조사·시험 성과는 일본의 수산물 개량을 한층 견인하였다. 또한 수산조사 시험 및 분석에 대한 결과물들은 일본수산지(1886~1895) 3부작의 근간이 되었다.

(3) 수산교육기관 설립

메이지 초기에는 수산물 수출은 대부분 중국에 한정되어 있었다. 구미의 해외수출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구미 수출을 위한 무역통용 용어, 즉 언어의 장벽부터 해결해야 했고, 또한 무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 수출품 포장 규격, 구미에서 사용하는 수산물 명칭과 국제 해양법 등에 대한 사전 지식 정보가 요구되면서 근대수산교육기관의 설립의 시급성이 주창되었다. 대일본수산회는 1888년 11월 29일 농상무성으로부터 수산전습소의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이듬해(1889) 1월 20일 농상무성 관할의 고비키쵸후생관(木挽町厚生館)¹⁶⁾ 내에 설치된 수산전습소를 임시 교장(敎場)으로 하여 수산전습소 개소식을 거행하였다.¹⁷⁾

당시 농상무성 소속의 수산 기사(기수)들 대부분은 대일본수산회에서 의원 및 학예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수산전습소가 설립되자 이곳의 교사까지 겸임하였다. 수산전습소는 정부기관인 농상무성과 최신 수산 지식 정보의 홍보 단체인 대일본수산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산진흥사업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 수산전습소(水産傳習所)

수산전습소의 초대소장은 농상무성 수산국장인, 세키자와 아케키요가 겸임하였다. 교사진은 농상무성 기사(기수)를 비롯하여 대일본수산회의 학예위원¹⁸⁾ 및 그리고 농학·법학·농예화학·의학·공학·약학 분야의 박사 및 농학사로 근대학문을 익힌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수산전습소의 최초 교육과정은 1년 과정이었으며, 예과(3개월)와 본과(9개월)로 구분하였다. 예과에 해당하는 제1기의 교과목은 수산물의 구별, 제조, 번식(양식), 어로 대한 기초 학문과 물리학, 화학, 지문학(地文學)¹⁹⁾, 기상학, 경제학 등이며, 본과에 해당하는 제2기~제4기의 교과목은 제조과, 번식(양식)과, 어로과,

16) 최초의 명칭은 明治會堂(1881)이며, 福澤諭吉 및 慶應義塾(現, 慶應義塾大学)의 정치결사그룹에 의해 건축된 政談演說公會堂이다. 1884년에 厚生館으로 명칭이 개칭되었는데 木挽町에 있었던 것에서 木挽町厚生館이라고 불렸다.

17) 서경순, 「『일본수산지』의 편찬 배경과정에 대하여」, 『수산경영론집』 51-2, 한국수산경영학회, 2020, 33~34쪽.; 서경순, 「『日本水産誌』의 편찬 목적과 내용」, 『동북아시아문화연구』 6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303쪽.; 이근우, 「수산전습소의 설립과 수산교육」 인문사회과학연구, 11-2, 2010, 110~112쪽.; 片山房吉, 『大日本水産史』, 有名書房, 1983, 628~629쪽.; 加藤正誼, 『大日本水産會水産伝習所沿革』, 大日本水産會水産傳習所, 1892, 1쪽, 3쪽, 6쪽, 15쪽(『大日本水産會水産傳習所事務規定』 제1조에는 수산전습소는 대일본수산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있다).

18) 대일본수산회 학예위원은 대부분 농상무성의 技師와 技手 중에서 겸임하였다.

19) 1888년 간행된 地文学講本 上卷(제무스 몬티스 저, 横山彦次郎 역)의 목차에는 제1장 天體論, 제2장 地球皮殼論, 제3장 陸地論, 제4장 山嶽組成論, 제5장 島嶼論, 제6장 磁針論, 제7장 火山論, 제8장 地震論, 제9장 氣中水論, 제10장 湖泉論, 제11장 河川論, 제12장 氷雪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제무스 몬티스(ゼームス・モンティス)는 미국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상지문(氣像地文), 어업경제 등으로 나누었고 보충과목은 영어·수학·부기·예체능이 있다.²⁰⁾ 1893년에는 수학 기간을 3년으로 늘렸는데 3학년은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산전습소의 졸업생들 대부분은 수산 자영업(또는 회사원)·농상무성·수산조합·수산시험장 등 수산 분야로 진출하여 국가의 수산진흥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통감부와 조선해수산조합에 소속되어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1회 졸업생인 이하라 분이치(庵原文一)로 1906년 통감부의 수산과장으로 임명되어 와서 1908년 『한국수산지』 편찬사업의 총괄책임을 맡았다. 이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수산강습소(水産講習所)

1897년 3월 수산전습소가 폐소되어 이를 계승한 수산강습소가 설치되었다. 수산강습소는 농상무성의 수산조사소에 부설되었으며, 수산전습소의 교사진과 학생들은 수산강습소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국가기관으로 거듭난 수산강습소의 교육범위는 크게 확장되었다. 수산전습소에서 실시했던 어로과·제조과·양식과의 교육과정을 본과로 하고, 원양어업과, 연구과, 수산과 교원 양성과, 제염기술원 양성과 등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교육과정은 원양어업진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일본의 수산·해양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들은 수산전습소(이후 수산강습소)가 기본바탕이 되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 대표적인 곳이 동경해양대학(東京海洋大學)²¹⁾이다. 이 학교는 수산전습소의 후신으로 도서관에는 수산전습소 또는 수산강습소에서 사용한 교안 및 많은 자료 등이 현재 소장되어 있는 점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편찬

농상무성에서 실시했던 내국수산박람회 개최, 국내외 수산조사, 수산교육기관 설립, 수산 계몽을 위한 각 부현 순회강연 그리고 대일본수산회 결성 등 일련의 수산진흥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산진흥사업에서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관계자들에게 일본의 전통의 어법 및 수산제조법과 구미의 수산 지식 정보를 반영한 서적을 편찬 간행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수산지는 1886년 편찬에 착수하여 1895년에 원고를 마감하였다. 편찬감독은 농상무성의 대서기관이었던 다나카 요시오였다. 다나카는, 농상무성 소속의 기사(기수) 중에서도 학문과 경험이 뛰어난 인재 가운데 7명을 편찬담당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당시 농상무성의 수산진흥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수산계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일본수산지는 이들의 경력에서 비롯된 지식을 총 정리한 문헌으로 일본의 근대 수산대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근대수산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기록물이다.

일본수산지는 『일본수산포채지(日本水産捕採誌)』·『일본수산제품지(日本水産製品誌)』·『일본유용수산지(日本有用水産誌)』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전문가에 의해 10여 년에 걸쳐서 조사·정리하여 원고가 완성되었지만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보관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포채지』를 시작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수산지 3부작의 편찬담당원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일본수산지의 구성 및 편찬 담당원

일본수산지	편찬담당원	경력/직책
총괄 감독	다나카 요시오(田中芳男)	농상무대서기관
『일본수산포채지』	가네다 키이츠(金田歸逸)	농상무성 技師

20) 이근우, 「수산전습소의 설립과 수산교육」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 115쪽.; 片山房吉, 『大日本水産史』, 有名書房, 1983, 643~644쪽.; 加藤正誼, 『大日本水産會水産伝習所沿革』, 大日本水産會水産傳習所, 1892, 3~13쪽.

21) 1888년 11월 대일본수산회 소속 水産傳習所 설립→ 1897년 3월 농상무성 水産講習所 개설→ 1947년 4월 농림성 第一水産講習所 개칭→ 1949년 5월 東京水産大學→ 2003년 10월 1일 東京商船大學과 東京水産大學 통합하여 東京海洋大學 설치→ 2004년 국립대학법인東京海洋大學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케나카 쿠니카(竹中邦香)	故 수산전습소 이사
	나카무라 리키치(中村利吉)	수산전습소 기사
『일본수산제품지』	야마모토 요시카타(山本由方)	故 농상무성 技手
	가와라다 모리미(河原田盛美) ²²⁾	농상무성 技手
『일본유용수산지』	가토 마사요시(加藤正誼) ²³⁾	농상무성 技師
	가시와라 츠키치(柏原忠吉)	농상무성 技手

(5) 수산진흥정책 성과

메이지 정부의 수산진흥정책의 최종 목표는 수산물 해외수출 극대화였으며, 그 결과 통조림, 정어리유 추출법, 요오드, 간유, 어유랍, 어교, 글리세린 등 수산 제품의 혁신을 가져왔다. 통조림은 당시 냉장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보관은 기본이고 적당한 맛, 위생, 휴대 간편 등 여러 장점을 골고루 갖춘 점에서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제품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된 것은 옥도정기(沃度丁幾)²⁴⁾이다. 옥도정기의 주원료는 해조류이며 그중 다시마가 으뜸이다. 옥도정기는 정부의 ‘수출진흥상품개발장려사업’에 의해 1873년에 일본 사회에 출현한 약품으로 당시 일본의 각 가정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상비약 중 하나였다. 특히 전시기에는 군사 의료용으로 많은량을 공급하였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정어리의 유용성을 들 수 있다. 정어리유는 당시 전기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에 가정 등화용으로 활용되는 등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다. 더욱이 어민들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과 생활의 편리함을 동시에 주었던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었다. 정어리는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또한 비료로 활용된 부가가치가 높았다.

이 3가지는 당시 일본의 중요 해외수출품목이다. 메이지 원년(1868)의 수출고는 약 57만원, 그리고 농상무성이 설치된 이후 1887년은 약 324만원이었으며 1910년에는 수출고가 약 1,535만원이다. 메이지원년에 비하면 약 27배, 1887년에 비하면 4.7배 상승하여 비약적인 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수산물 수출 통계에서 순수 일본산 수산물만 있었는지 이에 대한 것은 다음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메이지 정부의 수산진흥정책과 한국의 수산업 변화

1883년 조일통상장의 체결은 한국 바다의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한국의 함경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연해와 일본의 히젠·치쿠젠·이와미·나가토·이즈모·쓰시마 연해에서 한일 양국 어부들의 통어가 합법적화 되었다.²⁵⁾ 양국 간 상호 통어라고 해도 한국 어부는 연안 도처에 수산물이 매우 풍부하여 연안

22) 가와라다 모리하루 또는 가와라다 모리요시라고도 한다. 이글에서는 동경해양대학교 도서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가와라다 모리미로 하였다.

23) 『日本水産捕採誌』에는 加藤正誼로, 『日本水産製品誌』에는 加藤正韻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官報(1898年04月15日, 1898年11月08日, 1908年06月30日)에서 加藤正誼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 『제품지』에 기록된 加藤正韻은 옳기로 보인다.

24) 원래 독일어 Jodtinktur를 일본 음으로 옮기면서 沃度は ‘요오드’, 丁幾는 ‘친키’라고 불렸다. 특유의 냄새가 나며 소독, 소염, 진통효과가 있다.

25) 김문기, 「海權과 漁權: 韓淸通漁協定 논의와 어업분쟁」, 『大丘史學』 第126輯, 2017, 257~258쪽, 260~262쪽.; 박구병, 『韓國水産業史』, 太和出版社, 1966, 269~270쪽.; 장수호, 「조선왕조말기 일본인에 허용한 입어와 어업합병」, 『수산연구』 21호, 2004, 56쪽, 58쪽.; 서경순·이근우,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9, 128쪽.; 한임선,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해 通漁논리와 어업침탈」, 부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4~5쪽.; 요시다 케이이치 저, 박호원·김수희 역,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2019, 23~24쪽.

조업만으로도 수요를 충족하였으므로 먼 원양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 어부의 사정은 달랐다. 연안이 남획으로 인하여 고갈되자 원양어업으로의 전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마련한 한국 연해 출어장려정책에 의해 어부들은 출어선단을 조직하여 한국의 바다로 대거 진출하였다. 또한 1889년 한일통어장정이 체결되었던 그 해에 부산에 부산수산물회사(이후 부산수산물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일본 출어자는 이 회사에서 설치한 어시장에 어획물을 납품하면 판매 유통 일체를 대행해 주었으므로 어획에만 주력하면 되었다.

1897년에는 일본 정부가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하여 원양어업에 적합한 설비 기능을 갖춘 선박은 물론이고 원양선원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다. 원양어업 범위는 일본 외해도 포함되었지만 무엇보다 수산물의 보고인 한국 연해가 주 무대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한국 연해에서 활동하는 출어선이 대폭 증가하자 자국민에 대한 보호 및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1902년에는 외국영해수산물조합법을 공포한 후 각 부현마다 조선해통어조합(이후 조선해수산물조합)을 설치하게 하여 외국연안에 출어하는 어부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독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1905년 3월에는 1897년 공포했던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하여 한국 내에 일본인의 이주지 확장을 추진하였다. 이 업무는 부산 조선해수산물조합본부에 파견된 일본 수산기사(기수)들이 앞장섰으며, 이후 한국 연안지역 곳곳에 일본인들의 근거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근거지에는 일본의 어법 및 어구가 자연스럽게 성행하였으며, 또 한편에서는 일본인 소유의 수산물 가공 제조 공장 등이 세워져 일본 수산물 제조법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 근대의 한국 어업과 일본 어업

『한국수산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당시 한국 연해에서 행해졌던 한국어업과 일본어업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한국 어업은 연안의 지세와 조류를 이용한 어장(漁帳)·어살(漁箭) 주목(駐木) 방림(防簾)등을 설치하였으며, 중선(中船)·궁선(弓船)·망선(網船)·지에망(地曳網)·자망(刺網)·설망(設網)·정망(碇網)·사수망(四手網)·주낙(延繩)·낙시·굵개 등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아래의 표는 한국 전통어업을 정리한 것이다.²⁶⁾

<표 3> 한국 전통어업

어획 방법		어획 장소	어획 어종
漁帳	줄살[釣矢]	경상도 연해, 특히 거제도과 가덕도 부근	대구·청어
	막대살[杖矢]	경상도 연안	대구·청어
	덤장[擧網]	함경·강원·경상도 연안	작은 대구(함경도)·청어(강원도)·숭어(경상도)
漁前	방림(防簾)	함경·강원·경상도 연안	대구·청어
	건방림(乾防簾)	조선남부 연해	학꽂치·전어·새우·잡어
	살[箭]	서해·서남해 연안	조기·새우·갈치·오징어·달강어·방어·가자미·광어·서대·가오리 등 → 조수 간만 이용
	석방림(石防簾)	경상도·전라도 연안	정어리·고도리·새우·전어, 小잡어
魚船	떼배[筏船]		제주도 및 남부 앞바다에서 주로 사용, 재료는 소나무를 주로 사용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의 구상나무 사용.
	하천어선	낙시배[釣船]	소형 어선으로 유어(遊魚)어업에 사용.
		주낙배[繩船]	돛을 설치하지 않고 노를 저어 연승 어로에 사용.
		회리배[網船]	돛의 설비가 있고 대부분 예망어업에 사용.

※ 출처 :『韓國水産誌』1卷.;『한국수산지』1-2

26) 농상공부 수산국, 이근우 외 역, 『한국수산지』 1-2, 새미, 2010, 183~239쪽.; 서경순·이근우,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9, 140~1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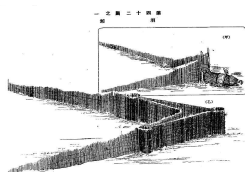
다음은 한국연해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의 어구 및 어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 출어자들이 형성한 근거지 연안에는 지세와 조류를 이용한 일본 전통어량인 우레(羽瀨) 등을 설치하였다. 어구는 잠수기(潛水器)·연승(延繩)·안강망(鰵鰵網)·지예망(地曳網)·수조망(手繰網)·타뢰망(打瀨網)·유망(流網)·호망(壺網)·입량(鰐築)·형망(桁網) 등을 사용하였다. 당시 흥미로운 사실은 활주선(活洲船)인데, 활주선은 수조장치를 한 선박으로 어획물을 산채로 일본으로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음 표는 일본 어부들이 한국의 연해에서 사용한 어구와 어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일본 전통어업

어획방법		어획 장소	어획 어종
우뢰 (羽瀨) 27)	석우뢰 (瀉羽瀨)	연안 갯벌에 설치(조수 간만 이용).	잡어
	책권우뢰 (簀卷羽瀨)	연안 간석지의 얇은 물길에 설치하며 석우뢰보다 앞바다에 설치하며 다소 규모가 큼(조수 이용).	
	만상낭부우뢰 (滿上囊付羽瀨)	설치장소가 책권우뢰 또는 낭부우뢰와 같지만 장치는 N자형을 이룸.	
	낭부우뢰 (囊付羽瀨)	앞바다 깊은 곳에 설치(간석지의 물길 중 간조 때 물살이 급한 곳), 일명 충우뢰(沖羽瀨)라고 함.	
호망 (壺網)	장출망(張出網)	內海 항만의 갑각(岬角) 등 조류가 완만한 곳에 설치.	농어·오징어·조기·뽕바리·감성돔·전어·고등어·전갱이·정어리(멸치) 등 기타 잡어
	위망(圍網)		
	낭망(囊網)		
	수망(受網)		
안강망(鰵鰵網) ²⁸⁾		일본 출어자가 많이 사용하는 어구이며 조류 이용 → 조기 성어기 때 서남해 일대에서 어획.	조기·갈치·달강어·새우·민어·성대·준치·오징어 등
새 우 타 뢰 망[鰕打瀨網] ²⁹⁾		오카야마·히로시마현에서 출어하여 하동만·여수만·득량만·나로도·지오도·시산도 근해에서 어획.	새우·넙치·가자미·서대·갯장어·가오리
삼치유망[鰯流網]		가가와현 출어자가 사용한 어업이며 도미 주낙어업에 버금가는 중요어업.	
상어연승		오이타·야마구치·나가사키현 출어자들의 주요 어업이며 욱지도·추자도·거문도·제주도·어청도·대청도·초도 연해에 조업하는 어선이 당시 100척 이상에 달했다고 함.	
도미주낙[鰯延繩]		도미주낙은 일본 통어의 시초 , 야마구치·가가와·히로시마·구마모토·에히메·후쿠오카·오카야마·사가·시마네·가고시마·도쿠시마·오이타 등 출어선이 당시 500여 척이 넘었음. 농어·민어·감성돔을 어획할 때도 사용.	
가오리민낙시[鰻空釣繩]		입량류(鰐築類) 예망주낙 등으로 어획하며 후쿠오카현 야나가와[柳川]에서 출어.	
고등어 외줄낙시[鯖一本釣]		가고시마·구마모토·야마구치·나가사키·오카야마·아이치·오이타·사가·후쿠이 등에서 온 출어자로 경상도·전라도의 남부 앞바다에서 어획.	
대합 형망(蛤桁網) ³⁰⁾		수심 15길 내외의 앞바다로 나가 닻을 내리고 닻줄을 끌면서 패류 등 채취.	
활주선(活洲船)		히로시마·오카야마·가가와·야마구치·효고 등 각지에서 온 출어자의 활어선을 위한 가두리, 주요어장은 국도·창포·적금도·치도·욕지도·안도 등이며, 활주선은 일본인에 의해 행해졌음.	

※ 출처 :『韓國水産誌』1卷; 『한국수산지』1-2.

27) 『韓國水産誌』. 第1輯 第42圖<그림의 위는 석우뢰(石羽瀨), 아래는 책권우뢰(簀卷羽瀨)이다>.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권, 399쪽. 『韓國水産誌』의 편찬담당원 중에 正林英雄이 1900년 일본 규슈의 아리아케해[有明海]에서 안강망을 시험하여 좋은 성과가 있는 후 일본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리아케해는 일본

앞의 표를 통하여 한일 양국의 어업을 비교해 보면 한눈에 일본 어업이 훨씬 진보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수산진흥정책에 의해 어법, 어구(어선)의 개량과 아울러 구미의 잠수기, 포경기 등 선진 어로장비를 구비한 선박이 증가한 까닭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업 격차가 생겼다.

2)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의 편찬과 한국의 수산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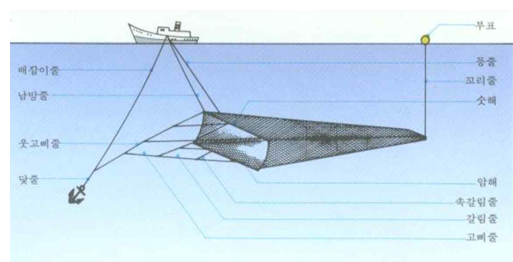
(1) 『한국수산지』의 편찬

1908년 『한국수산지』 편찬사업을 착수하였다. 한일 양국의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을사늑약과 정미조약 이후 실시된 사업이었으므로 전적으로 메이지 정부가 주관한 것이다.

『한국수산지』 편찬담당자는 총 23명이며, 전체 총괄은 수산과장 이하라 분이치(庵原文一)가 담당하였다. 조사방법은 한국연안을 14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 각 구역별 담당조사자를 파견하여 해안부(연안)·내륙부(하천)·염업 등의 현장조사와 아울러 편집사무원 4명에 의해 신속하게 편찬간행되었다. 편찬담당자 중에서 엄태영(嚴台永)³¹⁾은 유일한 한국인으로, 당시 농상공부 서기관으로 한강 유역을 담당하였다. 그 외 22명은 모두 일본인 수산기사(또는 수산기사)들임, 수산전습소(또는 수산강습소)의 졸업생과 이들을 가르친 교사 2명이 있다. 교사 중 쓰카모토 도엔(塚本道遠)은 농상공부 염무과장(염전기서)으로 발령받아 와서 염업시험장의 장장(場長)을 겸임하고 있다. 1907년 한국에서 소금사업 개량사업을 실시하면서 1908년 염전시험장을 설치하였는데 동남해 연안에 설치한 전오식(煎熬式) 시험염전을 용호출장소로, 서해 연안의 천일염 시험염전을 주안출장소라고 명명하였다.³²⁾ 천일염은 종래 한국에서는 없던 것으로 주안천일염이 최초이다. 그리고 교사 중 오카다 노부토시(岡田信利)는 당시 일본의 동물 분류학의 최고 권위자이다. 『한국수산지』 낙동강 유역 조사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직책이 농상공부 사무촉탁이었던 점에서 『한국수산지』의 편술에 많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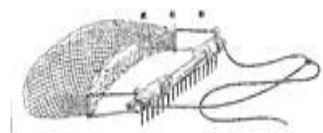
『한국수산지』를 주관한 부서는 농상공부이다.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 차관 기우치 주시로(木内重四郎), 농상공부 수산국장 정진홍(鄭鎭弘)은 『한국수산지』의 서문에서 하나같이 한국 연안에 수산물에 매우 풍부함에도 수산물에 대한 생산소득이 매우 낮아서 이에 통감부 및 조선해수산조합의 협조를 받는 한편, 일본의 어법 및 어구, 제조 양식법 등을 수용하여 국가 재원을 마련해서 부국하자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수산지』를 편찬하여 한국 수산진흥을 위한 수산관계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밝혔다.

최대의 갯벌이 있는 곳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곳이다. 안강망 어업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주로 어획한다. 鰵鰵이란 한자는 일본에서 아귀라는 물고기를 말하는데 안강망의 형태가 아귀가 입을 벌린 모습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한국 연해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곳은 갯벌이 넓은 서해안이다. 이곳으로 출어했던 일본 어부들이 주로 조기, 새우 등을 잡을 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어구보다 효율적이어서 한국 어부들도 점차 사용하였다고 한다. 안강망 어업은 특히 서해안의 연평도·칠산탄 일대의 조기 어업에 널리 사용했다고 한다.



29) 풍력이나 조류를 이용하여 끌어올리는 그물이며, 이후 手操網으로 발전된다.

30) 『韓國水産誌』, 第1輯 第51圖. 형망은 패류 채취 어구로 빗살모양을 한 갈퀴로 바닥을 긁으면 빗살에 패류(어채물)가 걸리면서 빗살 양쪽 끝에 끈으로 매어놓은 자루그물 속에 들어간다.



31) 嚴台永은 1875년(고종 12)~1912년 조선말기 관료, 별칭은 嚴台泳이다. 1894년 農商衙門主事로 출사하여 農商工部主事·量地衙門書記·地契衙門主事 등을 지냈고 1905년 농상공부 참서관이 되었다가 1906년 농상공부에서 서기관이 되었다. 1910년 10월부터 1912년 사망할 때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中樞院副贊議)에 선임되었으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32) 농상공부 수산국, 이근우 외 역, 『한국수산지』 1-1, 새미, 2010, 52~55쪽(당시 용호출장소는 동래부 석남면 용호리에, 주안출장소는 경기도 인천부 주안면 십정리(十井里)에 있었다고 한다).

일본수산지에는 일본 전역의 수산에 관한 조사를 망라한 수산백과사전에 해당하지만 『한국수산지』는 조사 지역에 대한 연혁·지리·경계·교통 등에 대한 여러 정보를 먼저 조사 기술한 다음에 수산관한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 더욱이 조사지역에 일본인이 근거할 경우에는 일본인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선단 명, 어선, 어구, 어법, 어기, 어획량·판매유통 경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조사 지역에 따라서는 해도를 첨부한 곳이 있다. 해도는 조사지역에 대한 위치 및 경계(주변 지역 명칭, 산의 높이 및 등고선), 방위, 항로, 정박지, 등대, 암초, 조류, 수심, 저질(底質), 간석지 등에 대한 어업자들의 지리적 이해 및 안전항로에 도움을 준다. 이와같이 『한국수산지』의 기술형식은 일본수산지와는 완전 다르며, 한국 연해로 출어한 일본 어부 및 수산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지리 경제수산등의 종합 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산지』는 1908년부터 1911년까지 모두 4권을 간행하였다.

<표 5>

순서	구 성	편찬기관	발행일자
제1집	제1편 지리, 제2편 수산일반	통감부	융희 2년(1908년) 12월 25일
제2집	제1장 함경도, 제2장 강원도, 제3장 경상도	농상공부	융희 4년(1910년) 5월 5일
제3집	제4장 전라도, 제5장 충청도	조선총독부	명치 43년(1910년) 10월 30일
제4집	제6장 경기도, 제7장 황해도, 제8장 평안도	농상공부	명치 44년(1911년) 5월 15일

앞의 표를 살펴보면 제1집과 제2집의 편찬기관은 통감부 농상공부, 발행일자는 조선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제3집과 제4집의 경우에는 편찬기관은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발행일자에 일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한일병합의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수산지』는 대부분 일본인 편찬담당자에 의해 조사 기록되어 한국의 지명을 비롯하여 어류명·통계자료 등의 여러 곳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2) 한국산 수산물의 이동

한국 연해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은 전복·해삼·상어·고래 등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수출 품목들을 한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일본으로 운송하였다. 그런데 한국산 수산물의 전량이 일본에서 소비되지 않았다. 아래 표에 제시된 수산물은 『한국수산지』 제2권에서 발췌한 것으로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수산물 내역이다.³³⁾

<표 6> 일본으로 수송된 수산물(1901~1908)

연도	말린 전복	海蔘	生乾鹽魚 및 비료	해조류	상어 지느러미	고래 및 고래기름
1901년	14,405	36,881	117,881	86,212	10,944	6,303
1902년	5,534	28,072	62,505	87,200	8,396	1,499
1903년	5,151	34,739	145,103	90,715	13,319	3,646
1904년	3,064	31,111	196,870	51,149	10,193	791
1905년	5,415	47,612	134,037	89,495	8,271	2,114
1906년	6,842	51,527	164,935	94,217	11,601	1,439
1907년	8,467	44,661	292,943	115,488	13,961	793
1908년	6,335	26,747	356,710	47,657	12,749	810

※ 출처 : 『韓國水産誌』 제2권, 561쪽

위의 표에 제시한 한국산 수산물은 일본인 조사원에 의해 조사된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산물은 일본에서 전

33)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 제2권, 1910, 561~562쪽.

량 소비하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중국 상인과 거래되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이 사실은 일본 조사원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① 고래

포경(捕鯨)은 모두 각 회사의 기지에서 해체해서 고래기름·고래수염·고래힘줄·고래뼈 등 거의 전부를 일본으로 수송한다.

② 전복

일본인은 잠수기로 채취하여 근거지에서 건제하거나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부산·원산·목포 등의 개항장으로 수송한 후 나가사키·고베로 운반하면 해당 지역에 거류하는 중국(淸國) 상인의 손에 의해서 중국으로 수출된다.

③ 해삼

남제(藍製)는 일단 일본 나가사키 또는 고베에 수출한 다음 그 지역의 일본 상인이 중국 상인의 손으로 넘겨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와 부산항에서 곧바로 중국에 수출한다.

④ 굴

굴(한국산을 중국수출용으로 제조한 것)은 나가사키·고베에 수송하여 그 지역의 일본 상인을 거쳐서 중국 화상의 손에 넘겨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일본인 조사원은 ②~④에서 한국산 수산물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실을 자세하게 밝혀 놓았다. 그리고 ①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언급은 없지만 당시 고래는 고가의 수출품이었던 점에서 중국 외에 구미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러하게 일본인 조사원의 기록은 당시 일본 수산물수출통계는 일본산 수산물 외에 외국산 특히 한국산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한국 연해에서 활동하는 일본 어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다. 수출 품목은 일반 품목에 비하여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한국수산지』의 편찬은 일본 어부와 일본 수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어만으로 기록된 점은 더욱 이 사실을 반영해 준다.

서문에서 한국의 수산진흥과 부국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일본정부의 재원마련을 위한 편찬사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3) 『한국수산지』의 특징

『한국수산지』는 1883년 이후 수산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한국연해조사보고서 및 조선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근대 수산교육을 받은 수산전문가들에 의해 조사 편찬된 한국 최초의 근대 수산서적으로 종래 한국의 어보(魚譜)와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수산지』에는 한국연안 각 지역별 연혁·지리(경계, 위치, 면적)·호구(인구)·지세(향로, 향만, 도서, 반도, 도서, 등대, 표지물) 및 기상, 해류(조석), 수심(저질), 수온, 수색 등에 대한 일별 월별 연별 통계표와 해운, 통신, 수산일반 등을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그리고 『한국수산지』 제2집의 말미에 각 군별 「어사일람표(漁事一覽表)」를 첨부하여 군 면 리에 대한 명칭, 총 호구, 어업자 호구, 망의 종류 및 수, 어살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다. 연안 마을의 총호구 및 어업 호구에 대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최초 조사 작성된 것이다.

“『한국수산지』는 다음과 같이 근대적인 기법과 다양한 새로운 요소를 담고 있는 서적이다.”

- 사진자료의 활용

『한국수산지』의 권두에 사진을 첨부하였다. 사진은 조사구역과 다소 떨어진 언덕 또는 일본의 순라선(巡邏船) 선상에서 촬영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현지조사가 과정에서 조사원과 지역민의 마찰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정박지·항만·등대·염전 등의 사진은 조사지역에서 일본 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촬영하였다.³⁴⁾

『한국수산지』의 사진 중 처음 배치한 사진은 ‘조선해수산조합본부(朝鮮海水産組合本部)’이다. 이 단체는 조선에 진출한 일본 어업자들의 통제 감독기관으로 반관반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국 연해로 진출한 일본 어부들과 수산관계자들에게 낯선 한국에서 자신들의 신변과 권익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두 번째 사진은 ‘어청도 정박지[於靑島 錨地]’이다. 어청도는 육지와 제법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식수가 풍부하며 수심이 깊고 U자형의 깊고 넓은 만이 형성되어 있어 선박의 피항지로 최적지이다. 또한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러시아 조차지였던 중국 대련(大連)을 접수하면서 오사카 ⇄ 대련 간의 정기항로가 생겼는데 이 항로에서 어청도는 기항지가 되었다. 더욱이 어청도는 군사물자 보급지로, 그리고 서해의 방어기지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세 번째 주목되는 사진은 중국 안동현의 ‘압록강변 안동현에 중국 선박이 정박한 모습[鴨綠江畔安東縣支那船碇繫之圖]’과 ‘안동현 중국인 어물점[安東縣淸國人魚店一班]’의 사진이다. 당시 일본산 수산물의 최고 해외 고객은 중국이었다. 이 사진을 첨부한 것은 안동현을 통한 한국수산물 수출을 계획하였을까?

그리고 한국의 동해·남해·서해에 설치한 등대·등간·입표패 등의 많은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것은 어업자의 안전 항해 및 어업자의 항로표지(標識) 역할을 하였다.

사진은 근대적인 정보전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근대기에 사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는 드물다.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많은 사진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 연안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곳을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지도(해도)의 활용

『한국수산지』의 중요한 특징은 수산 정보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 지리 정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書名이 수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지리지 수산지 경제지를 결합한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많은 지도(해도)를 삽입하여 조선 연안의 지리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리정보는 일본인이 조선 연안을 항해하거나 어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해도)는 일본 해군의 해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본 해군의 해도와 비교하면 매우 간단하게 그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군사기밀은 생략하고 어로에 필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것이다.

- 근대적인 분류

『한국수산지』 제1집에서 수산물 분류형식을 보면 1889년 간행된 「일본유용수산분류표」를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수서 생물에 관한 전문서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1803), 『자산어보(玆山魚譜)』(1814),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1820) 등은 우리나라의 전문 생물학 문헌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

34) 『韓國水産誌』3집에 별첨된 권두사진에 기록된 것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 ① 光陽灣内の松島：松島は (중략) 熊本縣の出漁船は曾て本島に根據して(이하 생략).
- ② 光陽灣内の勒島：勒島は (중략) 熊本縣の出漁者岡崎組の根據地にして(이하 생략).
- ③ 麗水邑：麗水邑は (중략) 此地日本商人の居住者少なからず (이하 생략).
- ④ 安島(雁島)北側の泊地：雁島の俗稱なり.(중략)本島は日本漁船の重要な根據地にして(이하 생략).
- ⑤ 松汝子島に於ける干鰯製造の圖：汝子灣内に浮へる一小島なり.(중략)圖は岡山縣人森谷組の干鰯製造所にして(이하 생략)

등의 기록에서 일본인 어업 근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³⁵⁾ 그러나 근대적인 분류방법에 의거한 문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산어보』를 예를 들면 기술된 분류방법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본초강목』 등의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근대의 분류방법은 변형(진화) 과정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어보』에서 인류(鱗類)·무린류(無鱗類)·개류(介類)·잡류(雜類)로 수서생물을 분류하고 있으나, 개류로 분류된 조개와 게는 근대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연체동물과 절지동물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이다. 전통적인 분류에서 고래와 상어가 같은 무린류에 속하지만, 고래는 척추동물 중 포유류이고, 상어는 척추동물 중 연골어류이다. 즉 전통적인 분류는 형태적인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인 분류방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 『한국수산지』에서는 고래를 해수류로 일반적인 수서생물과는 전혀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수산지』는 근대적 분류법에 의거하여 수산물을 분류한 한국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 지명색인(地名索引)

색인은 전통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인득(引得)이라고 하며 영어의 index의 번역어로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기에 발간된 문헌 중에 색인이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수산지』가 매우 방대한 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색인은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수산물의 유통정보

그리고 각종 어획 수산물의 조업 상황 및 판로 등을 면밀하게 조사 정리하였다. 조선 어선의 어획물 전량은 조선 내륙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 어획물의 독점권(전매권)을 가진 객주 및 어장 유권자가 중개하여 도소매상인에게 매도하여 각 시장으로 유통되는 구조였다.

한편 일본어선의 경우에는 어획물은 남해안에서는 대부분은 부산수산회사(이후 부산수산주식회사)에서 매수하여 부산시장 또는 일본으로 수송하였고, 서해안(인천 중심)에서 매수한 어획물은 주로 인천과 군산시장에 운송하였으며, 일본으로 운송한 것은 극히 적었다.

당시 어시장은 거의 일본인이 운영하였는데, 부산과 인천 어시장이 가장 번성하였다. 판매기관은 부산수산주식회사·인천수산주식회사·군산수산주식회사·마산수산주식회사 등이다.

이와 같은 기록에서 실제 조선 연안에서 어떤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수산물을 조업하였고, 또 조업한 해역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운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메이지시대의 수산진흥정책은 국가가 주도하였다. 농상공부(정부)와 대일본수산회(민간), 그리고 수산전습소(이후 수산강습소, 교육기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 수산진흥을 견인한 결과 일본은 수산업의 발전과 해외수출 극대화에 성공하면서 수산진흥정책은 실제 국가 재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메이지정부의 수산진흥정책은 국내에서만 실시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일본 연안은 남획으로 인하여 실업어부들이 넘쳐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한국연해출어시책을 마련하여 한국연해 출어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것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 연이어 체결한 장정에 의해 한국연해에서 일본 어부들이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점차 자국민에 대하여 한국해 출어 장려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일본인 이주지 즉 이식지를 확장하여 한국 어장을 확보 장악하였다.

35) 정종우, 『『자산어보』: 현대적 형식을 갖춘 생물분류 문헌』, 『지식의 지평』21, 2016. 1-11면.

근대 한국 수산업 평가는 메이지 정부가 실시한 수산진흥정책의 악영향에 대한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 메이지 정부의 수산진흥정책이 한국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한국의 수산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것에 대하여 『한국수산지』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수산지』는 한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메이지 정부가 주도하였고, 편찬담당자들도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근대학문을 익힌 일본인 수산전문가들이었다. 게다가 일본어로만 기록한 점에서 한국인을 위한 한국 수산진흥을 위한 서적이 아니라 일본인을 독자층으로 하여 일본 정부 재원마련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수산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어부와 수산관계자들의 한국연안에 대한 지리 및 수산일반에 대한 정보지로 제공하기 위한 서적이었다.

『한국수산지』가 비록 일본 정부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편찬되었지만 근대 한국의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의 기상, 해류, 조석(潮汐), 수온, 水色 등은 과학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수산조사서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내에 일본인들의 이식지 즉 이주어촌이 형성된 시기와 『한국수산지』의 편찬사업이 실시되었던 시기가 맞물려 있었던 점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내륙을 식민지하기 전에 바다를 먼저 장악하여 식민지화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발판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는 근대한일수산사 연구에서 수탈과 침탈의 측면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연구자들이 근대 일본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당시 한국수산사의 한계와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한일 양국학계의 연구자들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오류를 벗어던지고 보다 넓은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한일수산사를 조망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근대 성립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비교

현명철(전 학회 회장)

◎ 본 발표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수산정책(2장), 메이지 정부의 수산진흥정책과 한국의 수산업 변화(3장)를 차분히 설명한 좋은 발표이다. 일본 수산진흥정책의 발단, 수산진흥정책의 전개, 근대의 한국어업과 일본어업,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한국의 수산업 변화를 무리없이 살핀 좋은 발표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수산지』와 『일본수산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는 되지 않았다.

◎ 질의

메이지 정부의 수산정책을 설명하고 조선 내 일본인 어민들의 수산업 확대를 위해 『한국수산지』를 편찬하게 되었다는 발표자의 의도는 매우 이해하기 쉽고 타당한 견해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둘째는 『한국수산지』에 대한 평가가 일본수산지와 비교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1.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다. 『일본수산지』에 대한 사항이 2-2)-(4)에 15행 정도 기술되어 있을 뿐 내용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근대 성립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비교」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참고로, 『한국수산지』에 관한 사항도 3-2)에 5쪽 정도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 『일본수산지』는 「일본수산포채지」, 「일본수산제품지」, 「일본유용수산지」 3부작으로 1895년 원고가 완성되어, 「일본수산포채지」는 1911년, 「일본수산제품지」는 1913-1916년에 순차적으로 간행되었다. 반면 『한국수산지』는 융희2(1908)년에 대한제국 농상공부 수산국이 일한인쇄주식회사에서 간행하였다.

2. 『한국수산지』에 관련된 기술 3-2)-(3) 한국 수산지의 특징에 “『한국수산지』는 다음과 같이 근대적인 기법과 다양한 새로운 요소를 담고 있는 서적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이것이 『일본수산지』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표현은 아닐 것이다. 제목에서 유추하면 독자는 당연히 일본 수산지와 비교를 생각하게 되어 오해하기 쉽다. 무엇과 비교하여 근대적인 기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히 기술하여 독자들의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수산지』의 특징으로 든 것은 기존의 수산관련 서적과 비교한 것으로 책 소개 혹은 발행자의 책 선전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라 보이며 발표문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한다.

3. 기타

1) 제목 : 근대 성립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¹⁾의 비교

→ 근대 성립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비교¹⁾
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요.

2) 『한국수산지』의 설명에서 ‘메이지 정부’라는 표현 대신 ‘통감부’라는 표현이 적합한 경우가 보입니다. (예: 13쪽 1908년 『한국수산지』편찬 사업 주관) 대한제국 정부에서 통감부가 주도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할 필요.

3) 결론 마지막 부분

‘ 이 글을 통하여 한일 양국학계의 연구자들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오류를 벗어던지

고 보다 넓은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한일수산사를 조망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무슨 의미인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본 연구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고 오만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런 지적이나 비판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총평

이 발표는 발표자의 학위논문 「메이지 시대의 수산정책과 『일본수산지』의 편찬에 대한 연구」(2021)와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20-1, 2019)를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발표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혀서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2쪽 “일본 수산지는 근대 일본의 수산백과사전에 해당되는 반면에 「한국수산지」는 수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각 조사지역의 역사, 지리, 수산 경제 등을 조사 기록한 역사지리 수산경제 종합정보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만일 필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조목 조목 제시하여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또한 이러한 비교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는 내용이 논문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매우 유익한 논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3부 종합토론>

좌장: 김동철(부경역사연구소)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교류와 갈등

발표자 전원

(송종호 한성일 이수열 이 훈 서경순)

토론자 전원

(한문종 김강식 신동규 유채연 현명철)

코멘터이터: 심민정(부경대)

< 메모 1 >

< 메모 2 >

< 메모 3 >

< 메모 4 >